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157-0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

- 일시: 2009년 4월 10일(금) 14:00~17:3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부산

- 일시: 2009년 4월 15일(수) 14:00~17:30
- 장소: 국민연금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

광주

- 일시: 2009년 4월 14일(화) 14:00~18:00
- 장소: 5·18기념회관 대동홀

대구

-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14:00~17:00
- 장소: 노보텔 대구시티센터 지하2층 대강당

국가인권위원회



EM026099

www.humanrights.go.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 기념 토론회-

● 초대 의 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0일(금) 보건복지가족부 및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편의제공을 통해 제도적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애차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한 단계 성숙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가 시정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산재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식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꾸준한 노력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토론회는 지난 1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상황을 조망하고, 그동안의 장애차별시정 활동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여, 앞으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항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장추련 상임공동대표 장명숙입니다.

지금 대지엔 봄의 기운이 만발합니다.

그리고 그 봄길 따라 다시 온 4월 하늘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원년을 지나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년’을 맞이하여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함께 준비하면서 오늘을 맞이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에 사회를 맡아 주신 분과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지정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은 이 자리를 더욱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자료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관련부처 공무원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단체 업무 종사자들과 함께 그 동안 장애차별 시정 활동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재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민관 공동의 노력의 장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21% 조직축소 안이 차관회의(3월26일)와 국무회의(3월30일)를 차례로 통과된 지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축소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여러 인권단체에서 많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보이지 않는 타국에서 국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도 감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든 인간이 그것을 위해 실천하고 함께해야 하는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세상이 함께 하는 것이고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과 같은 토론회도 개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한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꿈'을 이루어 가는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가슴 저리게 저리게 끌어안아 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장 명 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서울] 일시 : 2009. 4. 10.(금) 14:00-17: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구분 | 시간 | 내용 |
|-----------------------------------------------------------|------------------|------------------------------------------------------------|
| 인사말씀 | 14:05~14:10(5')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 14:10~14:15(5') |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
| | 14:15~14:20(5') | 장명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 좌 장 | |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제1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 |
| 발제 1 | 14:20~14:45(25')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정부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 |
| 발제 2 | 14:40~15:05(25')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
| 발제 3 | 15:05~15:30(25') | 장차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향후 전망 및 과제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부위원장) |
| | 15:30~15:45(15') | 휴 식 |
| <제2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 | |
| 지정토론 | 15:45~16:00(15') | 고용 분야 박자경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 |
| | 16:00~16:15(15') | 교육 분야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 | 16:15~16:30(15') | 시설물, 이동·교통수단 분야 배용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 | 16:30~16:45(15') | 공공기관 분야(사법 행정절차 포함)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
| <제3부 : 종 합 토 론> | | |
| 자유토론 | 16:45~17:15(30') |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 전원 토론 |
| 폐회 | 17:15~17:20(5') | 폐회사 |

[광주] 일시 : 2009. 4. 14.(화) 14:00-18:00 장소 : 5·18기념회관 대강홀

<1부 토론회>

| 구분 | 시간 | 내용 |
|-----------------------------------------------------------|------------------|-------------------------------------------------------------|
| 인사말 | 14:00~14:10(10') |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좌 장 | | 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제1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 |
| 발제 1 | 14:10~14:30(20')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진수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사무관) |
| 발제 2 | 14:30~14:50(20')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자체 평가 및 추진방향 노희용 (광주시 사회복지과 과장) |
| 발제 3 | 14:50~15:10(20')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평가 및 요구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 | 15:10~15:30(20') | 휴식 |
| <제2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 | |
| 지정토론 | 15:30~15:40(10') | 교육 분야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
| | 15:40~15:50(10') | 시설물, 이동·교통수단 분야 김동효 (한마음자립생활센터 소장) |
| | 15:50~16:00(10') | 공공기관 분야(사법 행정절차 포함) 김상훈 (법무법인 빛고을 변호사) |
| 자유토론 | 16:00~16:40(40') |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 전원 토론 |
| 폐회 | 16:40~ | 정리 |
| | 16:40~17:00(20') | 휴식 및 실내정리 |

<2부 교육공연>

17:00~17:10(10') 시각장애인 풍물패 공연

17:10~18:00(50') 마당놀이 “푸른고래의 꿈”(장애비장애통합교육연극)

※ 행사장 주변에 홍보 및 참여를 위한 부스 운영 및 컨텐츠 전시

[부산] 일시 : 2009. 4. 15.(수) 14:00-16:30 장소 : 국민연금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

| 구분 | 시간 | 내용 |
|-----------------------------------------------------------|------------------|--------------------------------------------------------------------|
| 인사말씀 | 14:00~14:10(10') |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 14:10~14:20(10') |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
| 좌 장 | | 이경혜 (부산점자도서관 관장) |
| <제1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 |
| 발제 1 | 14:20~14:40(20')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
| 발제 2 | 14:40~15:00(20')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및 추진방향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15:00~15:10(10') | 휴 식 |
| <제2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 | |
| 지정토론 | 15:10~15:25(15') | 고용 분야 홍정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리) |
| | 15:25~15:40(15') | 교육 분야 박용민 (부산장애인부모회 팀장) |
| | 15:40~15:55(15') | 시설물, 이동·교통수단 분야 변경택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
| | 15:55~16:10(15') | 공공기관 분야(사법 행정절차 포함) 노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 |
| <제3부 : 종 합 토 론> | | |
| 자유토론 | 16:10~16:30(20') |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 전원 토론 |
| 폐회 | 16:30~16:35(5') | 폐회사 |

[대구] 일시 : 2009. 4. 16.(목) 14:00-17:00 장소 : 노보텔 대구시티센터 지하2층 대강당

| 구 분 | 시 간 | 내 용 |
|------------------------------------------------------------|------------------|--------------------------------------------------------------|
| 인사말 | 14:00-14:10(10') | 인사말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격려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
| 좌 장 | | 김영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제1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 | |
| 발제1 | 14:10-14:30(20')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성과 및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
| 발제2 | 14:30-14:50(20')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평가 및 요구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 휴 식 | 14:50-15:10(20') | 휴 식 |
| < 제2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 | |
| 지정토론 | 15:10-15:25(15') | 고용분야 정혜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구지사 고용촉진팀 차장) |
| | 15:25-15:40(15') | 교육분야 정병화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
| | 15:40-15:55(15') | 백선기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과장) |
| | 15:55-16:10(15') |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 < 제3부 : 종 합 토 론 > | | |
| 종합토론 | 16:10-16:40(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 폐회 | 16:40-17:00(20') | 정리 |

◆ 목 차 ◆

서 울

❖ 발제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1년 정부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인 정 숙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 3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13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향후 전망 및 과제
김 광 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부위원장) 41

❖ 지정토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
박 자 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61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교육부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69
- 시설과 이동의 차별금지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와 향후 과제
배 응 호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77
- 공공기관 분야 토론
염 형 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83

광 주

❖ 발제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진 수 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사무관) 13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행을 위한 지자체 평가 및 추진방향
노 희 용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91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평가 및 요구
김 용 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05

❖ 지정토론

-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교육분야
김 영 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23
- 이동권 언제나 현실화될런지
김 동 효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129
- 공공기관 분야 지정 토론문
김 상 훈 (법무법인 빛고을 변호사) 137

부 산

❖ 발제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 형 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1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추진방향
남 찬 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 151

❖ 지정토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고용분야)
홍 정 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 185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부산지역 장애인 교육권 현황과 과제
박 용 민 (부산장애인부모회 정책팀장) 189
- 실효성 있는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차별금지를 위한 활동 방향
변 경 택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207
- 지정토론
노 성 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 215

대 구

❖ 발제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 형 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1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장애인계의 평가와 요구
노 금 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 219

❖ 지정토론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정 혜 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고용촉진팀 차장) 237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 현황과 제언
정 병 화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243
- 지정토론
백 선 기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과장) 247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권 순 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255



< 서 울 >

제 1 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정부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 / 3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 13
- 장차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향후 전망 및 과제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부위원장) / 4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1년
정부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인 정 속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

1 발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1년 정부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인 정 속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의 및 주요 내용

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지의 여부는 그 사회의 경제규모 등 경제력의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과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과 정책적 배려, 그리고 인권보장의 수준도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이고도 충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름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사회적 진전이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제도적 투자가기 때문이다.

장애계를 중심으로 2001년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후 1년 동안 정부와 장애계는 힘을 모아 법령의 구체적 시행 방향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오랜 노력이 장애인의 권리규범으로 성문화된 것과 차별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된 것은 동 법령의 큰 의의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 간접차별 뿐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거부도 차별의 한 부분이 되어 향후 단계적 시행에 의해 교육, 고용, 문화 등 관련 사항이 정비되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을 차별행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차별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설정하여 규정하였다.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시정기구는 일원화되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은 이원화하였다.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체조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를 실효성 있게 행하기 위해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간 주요 사건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달력을 넘겨보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살펴보자.

첫째로,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날을 전후해 모든 공중파방송 및 각종 신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루었으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관련하여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둘째로, 2008년 4월 23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등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10일간의 진정사건’(약 160건)을 모아 ‘장애인차별진정인단’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하였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이날 진정하신 분 중 관련 진정의 효과로 임용고사에 합격하신 분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셋째로,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된다.

넷째로, 2008년 7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가입의 장애인차별 사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첫 번째 권고를 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행정서비스, 버스의 전자문자 안내판, ATM 사용, 입학, 참정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권고가 나오고 있다.

다섯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3항(방송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2008년 7월 28일 장애계 및 방송사업자, 출판사업자, 영상물사업자, 영화제작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2008년 7월 30일 저녁에는 출판물의 장애인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이익섭 교수님, 남형두 교수님,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님, 출판계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비공식간담회를 가졌다. 2008년 11월 12일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3항의 일부개정법률안¹⁾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3월 3일 작지만 큰 사건이 발생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제반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하였는데 「도서관법」²⁾과 「저작권법」³⁾이 개정된 것이다.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의 출판물 관련 규정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9년 3월 17일 박은수의원실, 정하균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여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여섯째로, 2008년 8월 6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고, 복지·교육·경제·사회참여 등 4개 분야 총 58개 과제로 구성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발표되었다.

일곱째로, 2008년 11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및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자 선정을 위해 7월부터 공고를 하였으나 첫 번째 공고에는 1개의 연구팀만이 지원을 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재차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연구계약은 늦어졌다. 동 연구는 2009년 5월에 마칠 예정이다.

여덟째로, 2008년 12월 2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동 협약의 비준서를 UN 사무처에 송부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2009년 1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2)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9.3.3 개정> * 부칙에 의해 6개월 뒤 시행
- 3) 「저작권법」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2009.3.3 개정> * 부칙에 의해 6개월 뒤 시행

월 10일부터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발효 되었다. 2009년 3월 현재 50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3. 그간 정부의 노력

첫째로, 2008년 한 해 동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와 교육에 주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무원, 복지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동부와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서 사업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법령설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밖에도 공공기관에 「장애인식교육」을 독려하였으며 직장교육 시간에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포스터, 리플릿, 소책자 등을 발간하고 전국 배포하여 법령의 내용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계와 공동으로 법령을 쉽게 풀어 쓴 해설서, 만화책, 녹음테이프를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을 위한 교육용 자료 (ppt 형태)를 제작·배포하였다.

셋째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08.6~)을 통해 각 분야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일원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상 15개 부처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 분야별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각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넷째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널리 알리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및 시행령을 영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에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체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4. 향후 추진 방향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합동대책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2009년에는 동 법령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의의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와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장애계의 오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동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계, 정부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분야별 의무대상자에게 동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알려 해당 분야의 장애인차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9년 3월과 4월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기관, 문화·예술·체육 시설, 공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이벤트와 버스 광고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우수 시행 사례 공모전’을 통해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내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둘째로, 금년 하반기에는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관별, 분야별 법령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이

를 위해 2008년 11월부터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전반의 장애인차별개선 실태 파악을 위한 평가도구 및 분야별 장애인차별개선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가 마무리되는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하여 동 체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이 실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성과가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향후 과제가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

셋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2009년 3월 3일 관련 15개 부처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은 소관부처의 검토 및 장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넷째로, 공무원,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 의무부담 주체별,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실효성 확보의 곤란이 지적되어 왔다. 물론 고용, 웹접근성 등의 분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분야도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 사법, 행정(민원, 참정권), 의료,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 등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안은 장애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고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2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1. 차별사건 접수 현황

가. 전국 등록 장애인 및 장애유형별 현황

2005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4.59%이며 다른 나라인 독일, 미국, 영국의 장애인 출현율과 비교하여 약 25%~50% 수준의 낮은 출현율이지만 일본과는 비슷한 장애인 출현율¹⁾을 보이고 있음. 통계청 기준으로 2008년도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48,60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4.59% 출현율을 적용할 때, 약 2,231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실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 12. 31.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등록장애인수는 2,104천명에 이룸.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등록 장애인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52.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각장애인 10.3%, 뇌병변 장애인 10.2%, 청각장애인 9.6%, 지적·발달장애인 7.3% 순으로 되어있음.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편의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2급과 3급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917천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43.6%를 차지함.

1) 국가별 출현율 = 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 일본 4.7%, 독일 10.2%, 미국 19.3%, 영국 19.7%

<표 1> 전국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및 등급별 현황 (2007. 12. 31현재, 보건복지가족부)

| 구 분 | 계 | 지체 | 시각 | 뇌병변 | 청각 | 지적장애 발달장애 | 내부기관 | 정신 | 언어 안면 |
|--------|-----------|-----------|---------|---------|---------|--------------|---------|--------|----------|
| 합 계(명) | 2,104,889 | 1,114,094 | 216,881 | 214,751 | 203,324 | 154,463 | 102,384 | 81,961 | 17,031 |
| 구성비(%) | 100 | 52.9 | 10.3 | 10.2 | 9.6 | 7.3 | 4.9 | 3.9 | 0.9 |
| 1~2급 | 549,561 | 124,083 | 39,611 | 119,033 | 51,915 | 107,403 | 53,036 | 52,772 | 1,708 |
| 3급 | 368,035 | 159,697 | 11,976 | 51,859 | 36,996 | 47,060 | 23,828 | 29,189 | 7,430 |
| 4~6급 | 1,187,293 | 830,314 | 165,294 | 43,859 | 114,413 | | 25,520 | | 7,893 |

※ 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증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단 뇌병변, 시각, 지적, 발달, 정신, 심장장애,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장애인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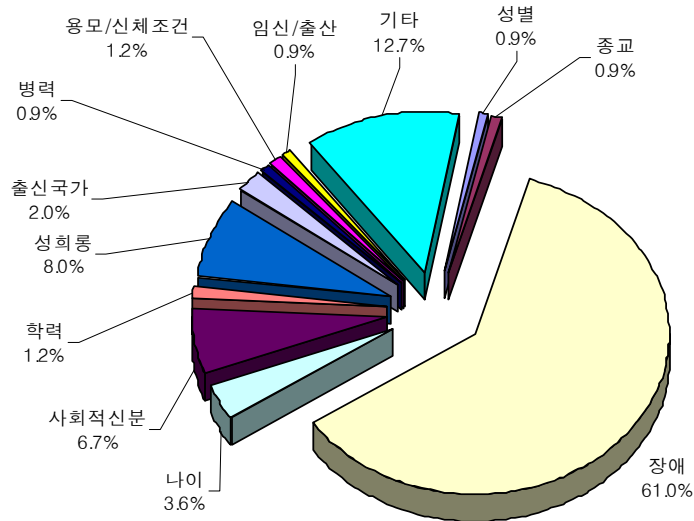
나. 위원회 전체 차별 진정사건 대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위원회는 2001. 11. 25 설립 이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14%인 630건이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61%인 645건에 이르고 있음.

<표 2> 위원회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

| 구 분 | | 차 별 사 유 | | |
|--------------------------------------------|-------|---------|---------------------|------|
| | | 계 | 성별, 신분, 나이, 인종 등 | 장애 |
| 장차법 시행이전 (2001. 11. 25~ 2008. 4. 10) | 진정건수 | 4,508 | 3,878 | 630 |
| | 비율(%) | 100 | 86.0 | 14.0 |
| 장차법시행이후 (2008. 4. 11~ 2008. 12. 31) | 진정건수 | 1,058 | 413 | 645 |
| | 비율(%) | 100 | 39.0 | 61.0 |

<그림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위원회 차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현황



다.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진정사건 8.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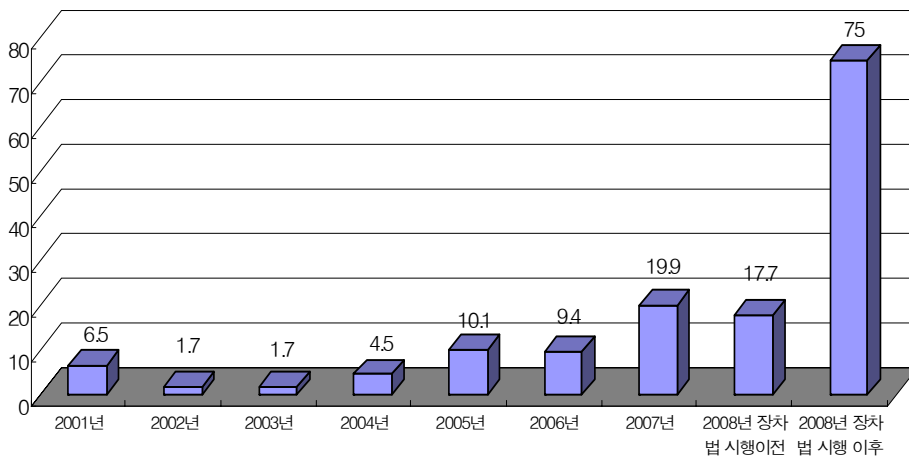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1. 11. 25~2008. 4. 10. 까지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총 630건 접수되었으나 법 시행이후인 2008. 4. 11~2008. 12. 31 사이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645건에 달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 동안 접수된 사건이 2001년 위원회 설립 이후 6년여 동안 접수된 사건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이전 월평균 진정사건 9건에 비하여 법 시행 이후에는 월 평균 75건으로 8.3배가 증가하였음.

<표 3>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연 도 | 합계 | 2001년 (11~12월)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 | | | | | | | | | | 시행이전 (1.1~4.10) | 시행이후 (4.11~12월) |
| 장애 | 진정건수 | 1,276 | 13 | 20 | 20 | 54 | 121 | 113 | 239 | 50 | 645 |
| | 월평균 건수 | | 6.5 | 1.7 | 1.7 | 4.5 | 10.1 | 9.4 | 19.9 | 17.7 | 75 |

<그림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과 시행이후의 월평균 진정건수 증가 현황



라.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이 전국 장애유형별 인구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정사건을 많이 제기함.

장애인중 진정사건을 가장 많이 제기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314건(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 110건(17.1%), 뇌병변장애인 75건(11.6%), 청각장애인 59건 (9.1%) 그리고 지적·발달장애인이 53건(8.2%)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전국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율로 비교하여 볼 때, 시각장애인 접수사건은 6.8%, 뇌병변장애인은 1.4%, 지적·발달장애인은 0.9%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이 장애 유형대비 가장 많은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계 | 지체 | 시각 | 뇌병변 | 청각 | 지적장애 발달장애 | 정신 | 기타 |
|-----------------|-----|------|------|------|-----|--------------|-----|-----|
| 건 수 | 645 | 314 | 110 | 75 | 59 | 53 | 24 | 10 |
| 비율(%) | 100 | 48.7 | 17.1 | 11.6 | 9.1 | 8.2 | 3.7 | 1.6 |
| 등록장애인 구성비(%) | 100 | 52.9 | 10.3 | 10.2 | 9.6 | 7.3 | 3.9 | 4.9 |

마.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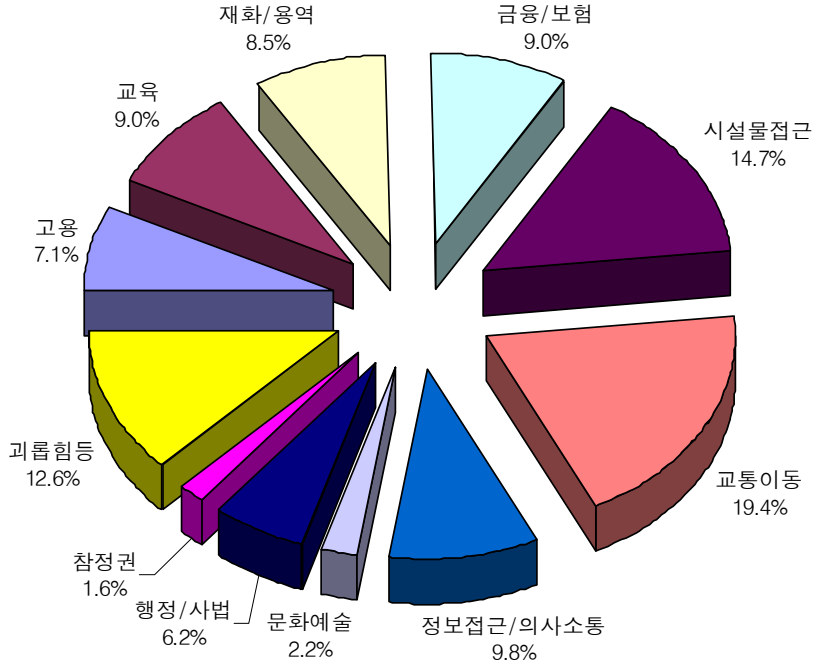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의 접수된 진정사건을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동 및 교통 수단과 관련된 진정이 125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19.4%를 차지하며, 시설물의 접근과 관련된 진정이 95건으로 14.7%, 장애인에 대한 비하·모욕과 관련된 진정이 81건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음.

<표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합계 | 고용 | 교육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 | | | | | | 사법 행정 참정권 | 괴롭힘 등 |
|-------------|-----|-----|-----|----------------|----------|-----------|------|----------|----------------------|----------------|-----------------|----------|
| | | | | 소계 | 재화 용역 | 금융 서비스 | 시설물 | 이동 교통 | 정보 접근 의사 소통 | 문화 예술 체육 | | |
| 진정접수 (A) | 645 | 46 | 58 | 410 | 55 | 58 | 95 | 125 | 63 | 14 | 50 | 81 |
| 비율(%) | 100 | 7.1 | 9.0 | 63.6 | 8.5 | 9.0 | 14.7 | 19.4 | 9.8 | 2.2 | 7.8 | 12.6 |

<그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차별영역별 진정사건의 증가추이를 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차별진정이 11.6배 증가한 반면에 고용 및 교육영역은 각각 2.4배, 3.8배 증가하는데 그쳤음. 괴롭힘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진정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표 6>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이전과 이후의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비교

(단위 : 건)

| 합 계 | | 2001. 11. 25. ~ 2008. 4. 10. | 2008. 4. 11. ~ 2008. 12. 31. | 증가율 |
|-------------------|-------|---------------------------------|---------------------------------|-------|
| 합계 | 전체 건수 | 630 | 645 | 8.6배 |
| | 월평균 | 8.3 | 71.7 | |
| 고용 | 전체 건수 | 158 | 46 | 2.4배 |
| | 월평균 | 2.1 | 5.1 | |
| 교육 | 전체 건수 | 126 | 58 | 3.8배 |
| | 월평균 | 1.7 | 6.4 | |
| 재화·용역 행정·사법·참정 | 전체 건수 | 331 | 460 | 11.6배 |
| | 월평균 | 4.4 | 51.1 | |
| 기타 (괴롭힘등) | 전체 건수 | 15 | 81 | 45배 |
| | 월평균 | 0.2 | 9.0 | |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시·청각장애인은 주로 정보통신·의사소통영역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은 교육 영역에서, 뇌병변장애 및 정신장애인은 재화·용역 영역에서, 지체장애인은 접근권 및 이동권 관련 차별진정이 많았음.

장애유형별로 진정이 제기된 차별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 및 교통수단 이용 영역에서 각각 78건(24.8%), 75건(23.9%)으로 가장 많은 진정을 제기 하였음.

시설물의 접근 및 교통수단의 이용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사법절차 참여, 참정권 행사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권리로서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다른 사회생활의 영위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것임.

그러나,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유형을 보면 고용이나 교육영역에서의 차별 진정보다 시설물 접근과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차별 진정이 훨씬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시각장애인은 교통수단 이용 영역에서 27건(24.5%),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에서 24건(21.8%)의 차별진정을 하였고,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에서 가장 많은 30건(52.6%)의 차별진정을 하였음. 시각장애인이 교통수단 이용 영역에서 제기한 진정내용의 상당 부분이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음성정보 제공에 관한 것을 감안할 때 시각 및 청각장애인 모두 정보통신·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차별진정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뇌병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재화·용역 영역에서 각각 25건(33.3%), 11건(45.8%)으로 가장 많은 차별진정을 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험가입거절, 상업서비스 이용 거절 또는 보호자 동의 요구 등이 많았음. 지적·발달장애인은 교육영역에서 가장 많은 17건(32%)의 진정을 하였으며 수업배제·방치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음.

<표 7>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현황정사건 접수 비교

| 사건유형 | 기타 장애 | 지체 장애 | 시각 장애 | 뇌병변 | 지적 발달 | 청각 장애 | 정신 장애 | 총합계 |
|-----------|-------|-------|-------|-----|-------|-------|-------|-----|
| 고용 | 2 | 19 | 10 | 5 | 4 | 3 | 3 | 46 |
| 교육 | 0 | 18 | 6 | 6 | 17 | 10 | 1 | 58 |
| 재화용역 | 2 | 43 | 16 | 25 | 10 | 6 | 11 | 113 |
| 시설물 접근 | 1 | 78 | 12 | 2 | 2 | 0 | 0 | 95 |
| 교통수단 이용 | 1 | 75 | 27 | 15 | 3 | 4 | 0 | 125 |
| 정보통신·의사소통 | 0 | 6 | 24 | 2 | 1 | 30 | 0 | 63 |
| 문화예술체육 | 0 | 4 | 5 | 1 | 3 | 1 | | 14 |
| 사법행정 | 1 | 22 | 1 | 6 | 6 | 1 | 3 | 40 |
| 참정권 | 0 | 5 | 4 | 1 | 0 | 0 | 0 | 10 |
| 괴롭힘 등 | 3 | 44 | 5 | 12 | 7 | 4 | 6 | 84 |
| 소계 | 10 | 314 | 110 | 75 | 53 | 59 | 24 | 645 |

사. 세부영역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고용영역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사건이 전체 46건중 26건으로 56.5%를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해고와 관련된 진정사건이 9건으로 19.6%를 차지하였음.

<표 8>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단위 : 건)

| 구 분 | 고 용 영 역 | | | | | | | |
|--------|---------|----------|------------|-----|-----|-----|------|-----|
| | 합계 | 모집 채용 | 임금 복리후생 | 배치 | 승진 | 퇴직 | 해고 | 교육 |
| 합계 | 46 | 26 | 3 | 3 | 1 | 2 | 9 | 1 |
| 구성비(%) | 100 | 56.5 | 6.5 | 6.5 | 2.2 | 4.3 | 19.6 | 2.2 |
| 공공부문 | 26 | 16 | 1 | 1 | 1 | 2 | 4 | 1 |
| 교육기관 | 2 | 1 | - | - | - | - | 1 | - |
| 민간부문 | 18 | 9 | 3 | 2 | - | - | 4 | - |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진정사건은 주로 채용 또는 자격증 시험에서의 편의 미제공, 면접 후 채용거부, 그밖에 공공근로 및 의무고용과 관련된 차별진정 사례가 대표적이었음.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진정이 많다는 것은 고용관계를 발생시키는 첫 관문에서 장애인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면접등에 있어 시험편의 제공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적절한 평가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함.

< 주요 진정 사례 >

- ○ ○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모집하는 전업주부 재취업과정에 전산세무과정 신청했으나, 모집정원이 다 차지 않았고, 취업 취약계층우대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을 됨. (합의종결)

- 점자나 확대문제지나 답안지만으로 시험에 접근할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임. 2007년도 중등교육임용고사에서 시각장애인으로써 적절히 인지 가능한 컴퓨터 음성프로그램으로 활용한 텍스트 파일을 제공받지 못하였음.(조사중 해결)
-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 150%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나, 시각장애인들은 모든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일괄적으로 두 번 들려주는 문제를 듣고, 점자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이 때문에 한 번 듣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두 번 들어야 하고, 두 번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다시 들을 수 없음. 수험생이 자유롭게 문제를 읽을 수 있도록 컴퓨터 이용, 수험생 1명당 낭독자 1명 배치, 답안 대필자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 (조사중 해결)

□ 교육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교육 영역에서 발생한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시험평가에서의 편의제공(34.5%), 시설물 접근 및 이용(27.6%), 수업등 교내활동의 배제(18.9%)의 순서대로 많았음.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제기는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 구별 없이 모두 발생하고는 있으나, 특히 국·공립학교에서는 주로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9건 중 10건(34.5%)을 차지하였는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시험평가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총 29건중 14건(48.3%)을 차지하였음.

<표 9>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단위 : 건)

| 구 분 | 교 육 영 역 | | | | | | |
|--------|---------|-------------|-------------------|--------------|-------------------|------------|-------------|
| | 합계 | 전입학 거부제한 | 시설물 접근 및 이용 | 시험평가 편의제공 | 수업등 교내활동 배제 | 특수학급 설치 | 기타 (괴롭힘) |
| 합계 | 58 | 3 | 16 | 20 | 11 | 4 | 4 |
| 구성비(%) | 100 | 5.2 | 27.6 | 34.5 | 18.9 | 6.9 | 6.9 |
| 공공부문 | 29 | 2 | 7 | 6 | 10 | 1 | 3 |
| 민간부문 | 29 | 1 | 9 | 14 | 1 | 3 | 1 |

< 주요 진정 사례 >

-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00대학교 00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 응시하였음. 그러나 지금까지 00대 대학원 면접은 형식적이었고 불합격자는 한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후 박사논문 작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음. (권고)
- 피해자는 A예술중학교로부터 발달장애가 있으며 특수학급 출신이라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 및 입학에 거부당하였음. 이 문제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수차례 문제제기 하자 교육청에서는 현재 피해자가 다니는 B중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여름방학전일까지 임시적으로 피해자를 A예술중학교에 다니도록 하되 기간이 종료하면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에 최종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학생이 학교적응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조사중 해결)
-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임. 장애아란 이유로 학교시험, 현장학습에서 배제되고 있음. (조사중 해결)
- 학교측에서는 다른 교양과목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형태의 점자파일로 된 교재 유인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학교의 웹사이트에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움. (조사중 해결)

□ 재화·용역 서비스 영역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사건이 285건 (61.9%)으로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진정사건 보다는 많이 접수되었음. 전체 진정사건 중에서 특히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분야가 가장 많은 125건 (27.1%)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제공하여야 할 이동 편의시설과 관련이 있음. 그 다음으로 시설물 접근 (20.7%)과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13.7%)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반면에 금융서비스 분야 (12.6%)와 재화·용역 서비스 제공 (11.9%)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로 민간부문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표 10>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과 사법행정 등 관련 진정사건 유형

(단위 : 건)

| 구 분 | 합계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 | | | | | 사법행정등 | |
|--------|-----|----------------|------|--------------|-----------|----------|------------|-------|-----|
| | | 이동 및 교통수단 | 시설물 | 정보접근 의사소통 | 금융 서비스 | 재화 용역 | 문화예술 체육 | 사법행정 | 참정권 |
| 합계 | 460 | 125 | 95 | 63 | 58 | 55 | 14 | 40 | 10 |
| 구성비(%) | 100 | 27.1 | 20.7 | 13.7 | 12.6 | 11.9 | 3.0 | 8.7 | 2.2 |
| 공공부문 | 285 | 107 | 48 | 38 | 17 | 17 | 7 | 40 | 10 |
| 민간부문 | 175 | 18 | 47 | 25 | 40 | 38 | 7 | | |

< 주요 진정 사례 >

- 시각장애인이 버스 승강장과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음성 및 촉각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가 없는 것은 차별행위임.(권고)
- 횡단보도 및 보도상에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바닥색과 같은 색상으로 제작되어 있음. (조사중 해결)
- 00동 주민센터는 경사로 구조가 급경사인 관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도우미의 도움으로도 접근이 쉽지 않으며, 장애인이 00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없음. (조사중 해결)
-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만 인식 가능함.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공고문이 집으로 송달되었는데 보상공고문이 일반 활자로 기록되어 있음.(권고)
- 진정인은 2급 청각장애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00구 00동사무소를 방문했음. 담당직원과 대화에서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도 불편을 겪음. (조사중 해결)
- 현금인출기에 음성안내가 되지 않아 전맹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음.(권고)
-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이유로 우체국보험 재해안심보험 만기 재가입 갱신이 거부됨.(권고)
- 특수학교로 교실을 증축을 하고자 해당 교육청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환경부 고시내용은 특수학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복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등 특수학교를 비장애인 학교와 달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임.(권고)
-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00동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진정인은 투표소

에 접근할 수 없었음. 결국 4명의 선거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들러 올라가서 투표를 하였음.(권고)

□ 괴롭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 행위로 새롭게 규정된 것이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며, 총 81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음. 이중에서 장애인이 모욕 및 비하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총 61건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특히 개인에 의한 모욕 및 비하가 많이 발생하였음. 또한, 장애인이 폭행 및 학대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이 총 14건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가족이나 개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진정하는 경우가 10건을 차지하고 있음.

<표 11>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진정사건 유형

(단위 : 건)

| 구 분 |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 | | | | | | |
|--------|-----------------|-----|------|-----|----------|-----------|-------------|-----|
| | 합계 | 따돌림 | 유기방치 | 성폭행 | 폭행 학대 | 금전적 착취 | 장애인 모욕비하 | 기타 |
| 합계 | 81 | 1 | 1 | 1 | 14 | 2 | 61 | 1 |
| 구성비(%) | 100 | 1.2 | 1.2 | 1.2 | 17.3 | 2.5 | 75.4 | 1.2 |
| 공공부문 | 29 | | | | 4 | | 24 | 1 |
| 민간부문 | 52 | 1 | 1 | 1 | 10 | 2 | 37 | |

< 주요 진정 사례 >

- 피해자는 장애아동으로 00재단이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에 다니는데 00 강사가 공을 발로 차서 피해자 가슴을 맞거나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머리와 뺨을 교대로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함. (조사중 해결)
- 피해자는 목에 화상을 입은 장애인으로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는 평소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자주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였으며 직장을 옮겼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음 (조사중 해결)

2.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조사대상 진정사건중 62.6%가 권리구제 되었고, 권리구제된 사건중에서 81.3%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으로 조사중 해결됨.

2008년도 위원회에서 진정접수한 695건 중 처리된 진정사건은 502건임.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281건으로 전체사건의 56%였으며,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은 218건으로 43.4%였음. (나머지 3건은 조사중지)

조사대상인 281건중에서 62.6%인 176건이 권고, 조정, 합의, 조사중해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37.4%는 사실이 아니거나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되었음.

권리구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결된 176건의 사건중 18.7%인 33건이 권고결정, 조정, 합의종결로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나머지 81.3%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진정을 수용하여 조사중 해결되었음.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합의종결이나 조사중 해결사건이 많은 이유는 장애인 차별 사건의 특성상 진정인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정도 그리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장애 또는 차별에 대한 상호 이해 그리고 정당한 편의에 대한 개념과 편의제공 수단과 제공의 수준에 대한 상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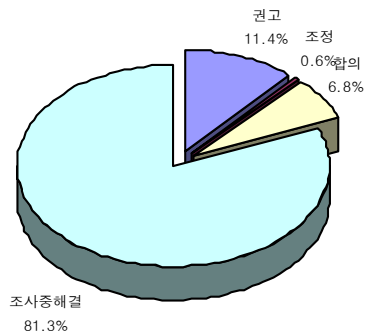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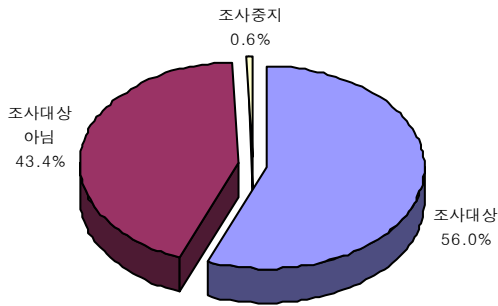
따라서, 장애차별 사건의 사전적 예방과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와 자율적 해결의 확대를 위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피진정기관으로 예상되는 기관과 장애인 단체에 실제 차별 사건에 대한 사례중심으로 쉽게 알리고 특히 정당한 편의와 제공수단이나 제공방법에 대한 상호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12>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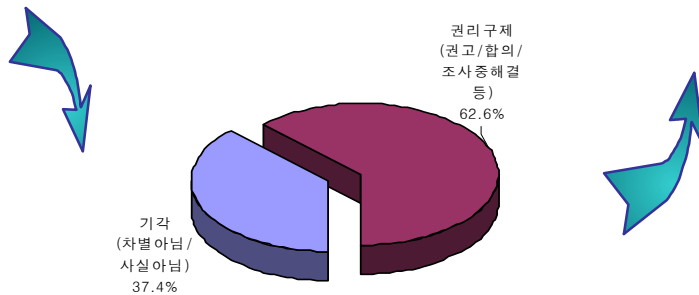
| 처 리 건 수 | | 조사대상 | | | | | | | | 조사 대상 아님 | 조사 중지 |
|---------|-----|------|---------|---------|--------|---------|-----------|----------------|-----|----------|-------|
| | | 합계 | 권리구제 대상 | | | | | 권리구제 비대상 | | | |
| | | | 소계 | 인용 (권고) | 조정 성립* | 합의 종결** | 조사중 해결*** |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 | | |
| 건수 | 502 | 281 | 176 | 20 | 1 | 12 | 65 | 78 | 105 | 218 | 3 |
| 구성비 (%) | 100 | 100 | 100 | 11.4 | 0.6 | 6.8 | 81.3 | | 100 | 100 | |
| | | 62.6 | | | | | 37.4 | | | | |
| | | 56.0 | | | | | | | | 43.4 | 0.6 |

- * 조정성립 : 장애인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진정의 원인이 원만히 해결되어 진정인이 사건을 취하하여 각하 처리한 경우와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기각 처리한 경우를 모두 조사중 해결로 구분함.



<그림 4> 접수된 전체사건 처리현황

<그림 6> 권리구제 유형별 현황



<그림 5> 조사대상 사건중 권리구제 현황

나. 영역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해결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는 차별이 아니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가 각각 43.5%, 60%로 가장 높았음.

2008년도 진정사건의 처리현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전체 진정사건의 권리구제대상 비율이 평균 62.6%임에 비하여 교육 영역에서는 권리구제대상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괴롭힘 등의 영역은 56.5%로 가장 낮았음.

접수된 진정사건중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괴롭힘 등의 영역 60.0%, 고용영역 55.2% 순으로 높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님을 사유로 기각된 사건은 괴롭힘 등의 영역이 43.5%, 재화·용역·사법행정·참정권 영역이 39.3% 순으로 높았음. 전체적으로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 진정된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차별이 아니어서 권리구제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음.

권리구제된 사건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나 조사중해결이 아닌 위원회의 권고로 권리구제가 된 경우는 재화·용역·사법행정·참정권 영역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13> 2008년도 진정사건의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합계 | 조사대상 | | | | | | 조사대상 아님 | 조사 중지 | |
|-----|-------|------------|-----------|------------|--------|-------------|----------------------|------------|----------|------|
| | | 권리구제 대상 | | | | 권리구제 비대상 | | | | |
| | | 인용 (권고) | 조정 성립* | 합의 종결** | 조사중 해결 | |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 | | |
| 취하 | 기각 | | | | | | | | | |
| 합계 | 건수 | 502 | 20 | 1 | 12 | 65 | 78 | 105 | 218 | 3 |
| | 비율(%) | 100 | 62.6 | | | | 37.4 | | 43.4 | |
| | | | 56.0 | | | | | | | |
| 고용 | 건수 | 58 | 1 | 1 | 1 | 9 | 4 | 10 | 32 | 55.2 |
| | 비율(%) | 100 | 61.5 | | | | 35.5 | | | |
| | | | 44.8 | | | | | | | |

<표 13> 2008년도 진정사건의 처리유형별 현황(계속)

| 구 분 | 합계 | 조사대상 | | | | | | | 조사 대상 아님 | 조사 중지 |
|-----------------------|-------|------------|-----------|------------|--------|----|----------------------|------|----------------|----------|
| | | 권리구제 대상 | | | | | 권리구제 비대상 | | | |
| | | 인용 (권고) | 조정 성립* | 합의 종결** | 조사중 해결 | |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 | | |
| | | | | | 취하 | 기각 | | | | |
| 교육 | 건수 | 53 | 4 | | 6 | 11 | 17 | 8 | 17 | |
| | 비율(%) | 100 | 82.6 | | | | | 17.4 | 32.1 | |
| | | | 67.9 | | | | | | | |
|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 건수 | 331 | 15 | | 4 | 36 | 64 | 77 | 133 | 2 |
| | 비율(%) | 100 | 60.7 | | | | | 39.3 | 40.2 | |
| | | | 59.2 | | | | | | | |
| 괴롭힘 등 | 건수 | 60 | | | 1 | 9 | 3 | 10 | 36 | 1 |
| | 비율(%) | 100 | 56.5 | | | | | 43.5 | 60.0 | |
| | | | 40.0 | | | | | | | |

* 조정성립 :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진정의 원인이 원만히 해결되어 진정인이 사건을 취하하여 각하 처리한 경우와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기각 처리한 경우를 모두 조사중 해결로 구분함.

다.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한 권고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법무부 통보건수 전체 권고권수중 14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권고한 사건은 총 20건임. 이중 4건은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이전에 접수된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하였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권고한 16건 중에서 2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하였고, 14건은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권고하였음.

<표 14> 적용 법률에 따른 인용권고 사건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 계 | 고용 | 교육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 사법행정 참정권 | 괴롭힘 등 |
|--------------|---------|-------|-------|------------------|-------------|-------|
| 권고사건수 (권고건수) | 20 (16) | 1 (1) | 4 (2) | 11 (9) | 4 (4) | |
| 국가인권위원회법 | 7 (6) | 1 (1) | 2 (1) | 4 (3) | | |
| 장애인차별금지법 | 13 (10) | | 2 (1) | 7 (6) | 4 (4) | |

※ 괄호안의 숫자는 접수된 진정사건 중 유사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사건수이며, 법무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고통보 건수는 10건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에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건 총 20건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통보된 사건은 13건이고, 일부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사건은 3건임. 전체 권고이행율은 현재 검토중인 것을 제외한 전체 피진정인으로 부터 이행여부 회신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85.3%임. 특히 국가기관등 공공기관의 권고이행율 95.8%로 높은 편이며, 교육 영역에서 권고이행율은 60%로 나타남.

<표 15> 각 부문별 권고이행율 비교

| 구 분 | 총계 (사건수) | 권 고 이 행 상 황 | | | | 권고이행율 (%) | |
|-----|-------------|-------------|------|-----|-----|--------------|------|
| | | 이행 | 일부이행 | 미이행 | 검토중 | | |
| 합계 | 합계 | 20 | 13 | 3 | 1 | 3 | 85.3 |
| | 공공부문 | 14 | 11 | 1 | | 2 | 95.8 |
| | 교육부문 | 5 | 2 | 2 | 1 | | 60.0 |
| | 민간부문 | 1 | | | | 1 | |

※ 권고이행률 산정식 = {이행+(일부이행×0.5) / (전체권고건수-검토중)} × 100

※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교육부문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민간부문은 주식회사 등 법인 및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함.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고

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은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론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은 간접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차별로 인정됨.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간접차별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그 이후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간접차별이 의제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차별로 판단함.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간접차별 금지를 총론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차별영역에서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정당한 편의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접차별 이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어 간접차별 금지 조항을 사문화된 조항 혹은 선언적 조항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차별판단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나. 권리구제의 한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와 이에 대한 불이행시 법무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에 따른 권리구제에 있어서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공익적 영향, 정당한 사유, 피해자가 다수, 반복적 불이행, 고의적 불이행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제32조의 장애인 개인에 대한 비하·모욕 금지와 같은 조항은 사문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법원의 경우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사건을 제외하고 차별을 한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내용 및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악의적 차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다만 입증책임의 배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차별판단을 받기에 유리하며,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음.

다.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차별뿐만이 아니라 침해부분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침해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장차법 제30조 가족,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제37조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침해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조항이며 지적장애인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의 차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영역에서의 통합교육부분과, 재화와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부분이 위원회의 진정사건으로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며, 교육영역과 재화의 이용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이나 고용과 민법상의 계약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적인 것이 사실임

결국 지적장애와 관련되어서는 지적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함.

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 차별 조사 범위의 확장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실질적인(결과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히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세부 영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9개 세부영역(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보다 훨씬 넓은 24개 세부 영역으로 규정하여 향후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음.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미인가 시설에 확대함으로써 그동

안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장애인차별 시정 정책에 대한 적극적 검토 요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 시정 관련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의 집중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예,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또한 각 영역별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장애인정책과 이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검토 분야에서 제외되어 온 부분(모·부성권, 가족·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거나 보완·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제도의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권고 또한 필요할 것임.

□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각종 기관 및 시설, 기업 등 각 사회분야에서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임.

[붙임1]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사건 권고 목록

(2008. 1. 1. ~ 2007. 12. 31)

□ 고용 영역 (1건)

| 연번 | 조치 구분 | 사건명 (사건번호) | 조치 내용 | 의결일자 | 대상기관 | 이행현황 |
|----|-------|-----------------------------|---------------------------------------------------|-------------|-----------|------|
| 56 | 권고 |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계약 차별 (07진차647) | 피진정인과 관련 보직교수에게 장애인 차별 관련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국가인권위원회법) | 2008. 8. 18 | ○○문화산업대학장 | 불수용 |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15건)

- 정당한 편의제공 (3건)

| 연번 | 조치 구분 | 사건명 (사건번호) | 조치 내용 | 의결일자 | 대상기관 | 이행현황 |
|-------|----------|-----------------------------------------|---------------------------------------------------------------------------------------------------------|--------------|--------------|------|
| 55 | 권고 (장차법) |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 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 2008. 8. 8 |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 | 수용 |
| 61-62 | 권고 (장차법) |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416, 08진차486)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 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마다 최소1대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 | 2008. 12. 3. | 농협중앙회 | 검토중 |

- 행정 및 각종 서비스 이용 차별 (5건)

| 연번 | 조치 구분 | 사건명 (사건번호) | 조치 내용 | 의결일자 | 대상기관 | 이행현황 |
|-------|----------|-------------------------------------|----------------------------------------------------------|-------------------------|---------|------|
| 53 | 권고 |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08진차838) | 중증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 | 2008. 7. 23. | 보건복지부장관 | 수용 |
| 57-58 | 권고 (장차법) |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426, 08진차454)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 | 2008. 8. 27. | 국토해양부장관 | 수용 |
| 60 | 권고 | 주민등록증 점자 미표기 차별 (08진차834) | 중증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 | 2008. 12. 3 | 행정안전부장관 | 검토중 |
| 69 | 권고 (장차법) | 정부고시에 규정에 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에 포함시킬 것 | 2008.12.2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환경부 장관 | 수용 |

- 민간보험 가입 차별(1건)

| 연번 | 조치 구분 | 사건명 (사건번호) | 조치 내용 | 의결일자 | 대상기관 | 이행현황 |
|----|----------|-----------------------------|-------------------------------------------------------------------------------------------------------------|--------------|--------|------|
| 54 | 권고 (장차법)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까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 2008. 7. 23. | 우정사업본부 | 일부수용 |

- 교통수단(2건)

| 연번 | 조치 구분 | 사건명 (사건번호) | 조치 내용 | 의결일자 | 대상기관 | 이행현황 |
|----|-------|----------------------------------------|----------------------------------------------------------------------------|--------------|------------------------|------|
| 59 | 권고 | 시각장애이용 음성총각정보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 | 2008. 10. 1 | 광주광역시 | 검토중 |
| 70 | 권고 | 장애인의 이동권 차별 (07진차1084) |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접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 2008. 12. 26 | 대전광역시시장 (사)중앙로1가 운영위원회 | 수용 |

□ 장애인 참정권 영역 (4건)

| 연번 | 조치구분 | 사건명 (사건번호) | 조치내용 | 의결일자 | 대상기관 | 이행현황 |
|----|-------------|----------------------------------|-------------------------------------------------------------------------------------------------------------------------------------------------------------------------------------------|--------------|--------------------------------------|------|
| 63 | 권고 (장차법) |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917)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 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줄 것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후 지침 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 2008.12. 3. | 자양1동선거 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등 | 수용 |
| 64 | 권고 (장차법) |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919)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 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줄 것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후 지침 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 2008. 12. 3 | 가양1동선거 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등 | 수용 |
| 65 | 권고 (장차법) |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 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줄 것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후 지침 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 2008. 12. 3. | 명륜3가동 선 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등 | 수용 |
| 66 | 권고 (장차법) | 시각장애인에 대 한 편의미제공 (08진차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 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 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 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2008. 12. 3 | 하계2동 선거 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등 | 수용 |

□ 교육시설 이용 영역 (4건)

| 연번 | 조치 구분 | 사건명 (사건번호) | 조치 내용 | 의결일자 | 대상기관 | 이행현황 |
|-------|-------------|--------------------------------------------|------------------------------------------------------------------------------------------------------------------|---------------------------|--------|------|
| 51-52 | 권고 | 특수학급 설치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 (08진차116, 08진차117) |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 -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 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 2008.5. 2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고등학교 | 일부수용 |
| 67-68 | 권고 (장차법) |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623, 08진차648) |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 심사 할 것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 | 2008.12.22 (전원위원회) | ○○대학교 | 수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향후 전망 및 과제

김 광 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부위원장)

3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¹⁾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향후 전망 및 과제

김 광 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부위원장)

I. 들어가는 말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해이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원년이다. 현재는 어떠한 변화보다는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담보하는데 관련된 사안들을 고비고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는 크게 세가지 활동에 집중해왔다. 하나는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접근하여 두 차례의 집단 진정 및 진정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홍보의 중요성을 실천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규제일몰제 등의 법,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 단체들의 자발적인 성명서 발표와 결속이 많았던 시기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규제일몰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과 모든 사람의 인권이 한 국가제도 안에서 별도의 가치를 가지고 대상별로 따로 존재하고 돌아갈 수 없다는 자각이 확대되는 과정이었고, 이에 대한 연대의 토대가 다져지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진정사건이 해결되어 관행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차별받은 장애인이 스스로 입증할 수 없거나 해결기간의 장기화 등의 한계에 불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권이 바뀐 것에 맞물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력화될 수 있는 큰 위기를 겪어왔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이 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지난 7년의 투쟁을 기억하면서, 지난 1년의 활동과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하여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평가

1. 집단 진정을 통한 관행 개선과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시작과 맞추어서 2008년 4월 23일 156건의 1차 집단진정을 한 이후, 7월 30일 225건의 집단진정, 9월에 서울시 교육감 투표권 차별 5건의 집단진정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고, 심각성이 생활전반에 걸쳐 있음을 사회에 알려왔다. 한편 집단진정의 양과 내용을 부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진정 사건을 통하여 일부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 자체로 그동안의 관행이나 편견이 개선되거나,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교육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 시각장애인에게 음성텍스트파일이 제공되지 않아서 차별진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험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대책을 발표하여 2009년 교육임용고시에 합격.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고입검정고시 시험장에 계단과 장애인화장실 미비로 인해 접근하지 못해 시험을 치루지 못하고 진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하여 시정권고.
- 장애여성이 임신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간 산부인과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진료 거부 후 찾아간 인근의 여성병원에서도 접수대에서 장애여성에게 “애기를 어떻게 낳겠냐! 애기를 지우는 게 더 낫다”고 하여, 또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역시 거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후 산부인과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및 교육을 받기로 하고 합의 종결.

- 장애여성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관할인 강동구보건소에 찾았으나, 배우자에게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과도한 질문의 대답까지 요구하는 등으로 언어장애를 이유로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진정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후 보건소장과 의사, 직원 등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재발방지과 인권교육을 받기로 약속하고 합의종결.
- 동부화재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 거절을 하여 진정을 하고, 보험사의 국장과 담당 과정 등이 찾아와 사과하고 다시 계약하기로 하여 종결.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장 접근권과 시각장애인의 비밀투표를 위한 편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참정권 차별로 진정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하여 시정권고.

집단진정 자체로 끝나지 않고 1,2차 집단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장애인 단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2008.12.22.). 장추련은 이 토론회에서 진정처리기간의 장기화,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기각 및 각하 비율이 높은 것, 각하와 기각의 사유를 분류하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²⁾ 등이 지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책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³⁾

장추련 사무국과 각 단체는 장애인차별상담을 하여 개인을 지원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내용을 축적하고 있다.

2. 장차법 시행,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나? /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2008년 7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각 정부부처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듣고, 2009년 2월에는 이명박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⁴⁾를 개최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기각의 사유에는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각각 나열하고 있다. 위 두 경우는 상당히 다른 평가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이다.

3) 인권위 최종 결정통계자료만 제공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장차법 시행에 따른 각 부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자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악,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규제일몰제 적용 등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내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환기시키는 시의적절한 토론회였다.

3. 교육 및 홍보 활동

장추련은 법제위원회와 그 과정에 함께했던 활동가들이 모여 7년간의 투쟁을 모으는 백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였다. 장추련 외에도 각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과 교육 안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와 연계하여 각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교육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를 하였다. 장애인 단체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이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교육하였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악 대응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에서 시설물과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서 편의증진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맞추어 개정하기로 약속하고⁵⁾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

4)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공동주최

5) 시행령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당시에(2007년 5월)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 및 범위는 편의증진법의 편의를 포함하여 도구, 인적 서비스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설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

에 대해 장추련은 수차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당한 편의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도록 편의증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이 되도록 편의증진법이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개정되지 않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발의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6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의 출판업자와 영상사업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규정으로 개악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야당 의원들을 통하여 장추련 의사를 반영한 개정안을 의원입법발의하였다. 제21조 3항을 다시 강제조항으로 하고,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적용을 하도록 제안하고,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 규정으로서 제정과정에서 삭제된 장애인지를 확인토록하는 의무조항을 다시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정부에서 장추련이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현실적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차별금지법에 차별을 용인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출판물이나 영상사업자가 영세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비용과 그 효과, 법의 목적을 간과한 태도였다. 한편 현재 일부 장애인인 여당의원이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복지부 의견만을 받아서 21조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데 동의하여 어떻게 개정될지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위기상태이다.

5.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정립 활동

2008년 1월 16일에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장추련으로 모여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독립문 앞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농성 투쟁에 연대했다. 결국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로의 전환 계획을 철회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남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2월에는 야간집회에 대하여 경찰 공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속을 하고 법률 내용이 중복되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증진법 상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넣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감사원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있는 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30% 인원감축과 지역사무소 폐쇄 계획을 밝히고, 3월 20일에는 21% 축소와 지역사무소 1년 시험운영으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추련과 인권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집회, 농성, 성명서 발표, UN에 호소하는 등으로 한결같이 현 정부의 인권의식 부재와 축소안의 부당함을 외쳤으나 이 최종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장추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축소 반대에 적극 나선 이유는 인권은 근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코 어떠한 정부이든 정권에서 다를 수 없고, 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 정부, 장애인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법을 다룰 기관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던 데에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량과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60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2007년 10월 31일 당시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장애차별시정1팀의 신설과 인력 20명 증원을 승인하였었다. 그러나 작년 1월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증원계획을 없었던 일로 해버리더니, 급기야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인력축소는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6. 규제일몰제6) 적용 철회

2009년1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에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의결하였다. 규제일몰제란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한다는 원칙을 만들고 2008년 규제해제를 요구하는 민간의 건의 사

6) 규제일몰제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규제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에 대하여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결과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제일몰제 대상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3항7)을 민간 규제 201개 사항에 포함시켜서 5년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부칙에 “개선조치”한다는 명분의 규정(안)을 신설하였다. 앞으로 5년 안에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인권협회를 중심으로 규제일몰제적용철회를 위한 공대위를 꾸리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⁸⁾ 2009년 3월 12일에 규제일몰제를 주관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며칠 후인 3월 18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협의를 통해서 규제일몰제 적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한다고 발표하여 규제일몰제 대상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시킨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7.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 활동

정부의 정부기구 축소 계획으로 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위기를 맞았던 사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08년 4월 만들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구체적인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고 그 해결과정에 개입하는 기구이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주무부서로서 각 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중심 기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려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7)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③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장애인의 현실은 2008년 7월 한 달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상파방송사의 자막방송 비율은 90.7%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화통역방송은 3.8%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통역방송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지상파의 경우 5.3%에 불과하며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드라마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방송에 한해 제한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방송을 통한 정보접근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두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의 “규제개혁 및 불필요한 일 줄이기 차원에서 유사중복 부서를 통·폐합”한다는 계획 속에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된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를 포함시킨 것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불필요하게 보고 장애인차별을 가볍게 간과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장추련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면담 진행 등으로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정책방향을 규탄하고,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를 끌어내었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전망 및 과제

1.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

(1) 규제일몰제 적용 철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 발표

다행히 1차 규제일몰제 적용 법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한다는 발표 이후인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2012년 디지털 전환시까지 총435억 원을 투입하여 방송 소외계층의 대폭적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고, 저소득층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난청노인용수신기를 50%수준까지 확대 보급하고, 시·청각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EBS 수능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 방송으로 재제작해 DVD와 웹 방식으로 확대 보급하면서 장애인용 미디어교육 교재도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방송제작자에 대하여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2년까지 자막방송 100%, 수화방송 5%, 화면해설방송 10% 편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디지털TV 생산시에 자막방송 수신기능 내장 의무화를 추진해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한다.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케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IPTV)들도

자막, 수화, 화면해설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케이블방송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풍부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IPTV도 다양한 성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과 교육 등 정보접근권을 보장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규제일몰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에 적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적용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면담시에 담당자는 5년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개선조치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극구 납득을 요구했다. 이러한 계획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작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에도 지원이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 민간 및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편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실효성 확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장추련에 대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 뜻에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모범적 사례가 될 만한 환경개선, 각 급 학교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편의제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평가에 이행여부 포함하고, 일정비율 편의제공을 위한 환경구축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 대한 평가와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노동현장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만들어서 근로할 수 있는 장애인이 근로현장 밖으로 내몰리거나 불합리한 처우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문화, 사법, 참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자기 의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편협하거나 일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거시적 안목을 갖고 교육과 제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시정 기구들의 인권의식에 입각한 자기준비와 실행

(1)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인력 확충의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이 만들어진 배경과 하는 일이 다르다. 전자는 행정가들의 청렴과 행정 절차에서의 국민구제에 목적이 있다면, 후자는 보다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구제와 차별시정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두 위원회에 진정되는 사안은 일부 같다고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용자들의 비율과 내용도 다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진정건수에 비해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는 46.1%에 이른다.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530여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처리율은 48%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에 접수되는 진정 및 상담 건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무소는 인권취약계층을 위하여 그 역할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오히려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¹⁰⁾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정보입수와 이동이 보다 수월하지 않고, 지방은 대도시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욱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과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지역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과 감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가 활성화 되어야만 가능하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의 자질부족과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공고하게 독립성을 갖고 존재해야하기 위한 연대를 통한 인권지킴이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을 찾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판단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의과 조사 및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간과하지 않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인식하여서 문제점에 대응하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¹¹⁾ 즉 실질적인 명분을 스스로 만드는 인권수

9) 한겨레신문, 2009.2.13.

10) 2007년 7월 2일~2008년 11월 30일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총 6만 9,535건 중 3개 지역사무소가 22.6%인 1만 5,709건을 처리.

11) 본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진정을 하였으나 시험일이 되도록 진정결과를 내지 않아서 1년을 허비했다면서 인권위의 진정사안을 접하는 태도에 대한 유감, 산부인과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고 상담

호기구가 되어야만 한다.

(2) 법무부 시정명령심의위원회 활성화 요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하는 시정명령 심의위원회가 2008년 5월에 법무부 산하에 구성되었다.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있는 이후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상임기구가 아니더라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항이 없었는지, 위원회 소집을 할 명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단 한건이라도 만나고 심의하고, 사안이 없더라도 시정명령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자리매김 되도록 할 의무가 위원장인 법무부의 차관에게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후 불이행된 사안이 통보받았어도 법무부 내에서 시정명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을 무시하고 허수아비위원회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25조 제3항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고 하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시행령 자체가 법무부 차관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의위원 7명 중 당연직 3명이 법무부에 속하고 있어서 의결구조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1차 회의 시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세칙을 만들었다. 비록 운영세칙이라 하여도 심의위원들과의 신의를 만들어나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며, 법무부 인권정책국의 인권에 대한 무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시정명령심의위원들의 역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단 한건이라도 시정권고 불이행된 사안이 있으면 심의위원들에게 통보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법무부 내 장애인차별 사안을 다루는 내용들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산부인과에서는 처방전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했으나 진정인은 입증할만한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면서 거부당한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느냐고 인권위에 대한 불쾌감을 상담 받은 바가 있다.

(3) 보건복지가족부 내 관련 부처 담당자들의 신념과 견인차 역할 요구

장추련의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 활동과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견제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노력으로 장애인권익증진과는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장추련은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여러 차례 실망을 겪어야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사든 아니든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환경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인식이 부족하고 원칙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대해서 출판사업자 및 영상사업자와 장추련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게 하는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낮은 인권의식에 직접 부딪히게 하는 오류가 있었다. 차별적인 그들의 인식을 확인하고도 제21조 제3항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다. 나아가서 규제일몰제를 피해갈 수 없다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득하기 보다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정보접근권 조항을 규제일몰제 대상 법률조항으로 그들에게 제시했다.

장추련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안에 반대하고 대응했던 이유는 장애인권익증진과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룰 정부 내의 전담부서가 있어야만 각 행정부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인권”이라는 객관적 원칙을 가지고 장애인계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편중되지 않고 사안에 따른 파트너쉽 형성,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에 대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나타내고, 장애인차별에 대해 실질적인 방침과 소신 있는 공무자세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각 부처에서 관할행정 영역에 장애인차별금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검토와 대안을 찾고 요구하는 데 꼼꼼하고 전략적인 연구자세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개정

(1) 편의증진법의 조속한 개정과 정당한 편의제공 수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된 후에 시행령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 당시에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 내용이 대동소이 할 것이므로 편의증진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

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증진법에 없는 인적 서비스와 설비 및 도구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에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대상시설과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약속하고, 조속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장추련의 요구안을 채우지 못했고, 개정도 미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속한대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편의증진법 상에 담아서 하루빨리 개정하고, 대상시설의 편의제공 시행시기도 편의증진법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가 가능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하여야 한다.¹²⁾

(2) 상충 법률 개정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그 이유의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관련 법률들이 빨리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련 법률들은 조속하게 개정하여 장애인들이 개별 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충법률 조사에 의하면¹³⁾ 상충규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는 정치·행정분야에 해당하는 ‘헌법/국회/선거·정당/행정일반/국가 공무원 분야’로서 전체 상충법령 건수의 27.9%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10.9%), ‘교육·학술/문화·공보/과학·기술 분야’(10.1%), ‘법원/법무 분야’(8.5%) 순으로 나타났다. 상충규정은 20개의 주무부처에 두루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충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각 개별 법률들과의 관계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신법이며 특별법이 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그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정부의 개약은 저작권법과 방송법의 개정이 있는 후에 나왔다. 제21조 제3항의 효과가

12) 상세한 내용은 배용호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의 토론에서 발표될 것이다.

13) 우주형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8.

없어질 경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저작권법과 방송법의 개정으로 위 조항도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나온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를 거스르는 임의규정화였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사업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 정권의 인권의 가치를 배제하고 일관성도 균형성도 없는 마인드에 맞추려가려는 소시민적 순종일 뿐이다. 과거 경제성장을 제일의 가치로 삼아 독심으로 밀고가면 되던 시대가 아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상충법률의 조속한 개정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찾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사회전반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반목과 추가적 소모를 줄이는 진정한 실용이 될 것이다.

4.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모니터링 규정이 없다. 모니터링 규정이 있어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모니터링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¹⁴⁾

장추련과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 적절하게 지표 마련을 위해 내용을 수집해야 한다. 또한 토론회와 면담, 통계조사, 진정결과 취합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대상에는 차별의 실태와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및 정부의 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용인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획 진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장애차별을 바꿔내는 성과를 남기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지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진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성공의 경험을 함으로써 향후 장애차별에 대응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하여 장추련은 통일된 전화라인을 만들어서 상담을 담당할 단체를 구성하고, 법제위원회를 법률지원단으로 개편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사례개입과정과 법률

14) 배용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과제(미국 장애인법의 운용사례 중심으로) 토론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2008.11.12. 참조

지원과정은 공유하여서 보다 많은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장애인차별개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인권활동의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적극적 연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보장한 독립기관임에도 정치 편향적 판결로 그다지 국민의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해왔다. 그럼에도 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해당되지 않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력축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지키고 정치적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하여 보장하는 판결을 해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이유가 결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립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은 사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획일적인 모습일 수 없는 사람의 가치와 위상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사에서, 세계인권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중요한 의미로 기록될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의 인권은 그 중심에 놓여있다. 적극적으로 연대하여서 지금, 인권이 존중되려면 사회의 매커니즘이 이에 맞도록 구조화 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음 세대의 숨이 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권력 앞에서는 법치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준 지난 일 년이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더불어 지난 1년 장애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 인권과 다른 이들의 인권이 분리되어 실현될 수 없다는 보여주고 활발하게 연대한 한 해였다.

그 과정에는 긴장과 공조의 불가분 관계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다. 일방적이지 않은 관계, 함께 호흡해야 각자의 삶이 연동되어 자리매김될

수 있음과, 직면과 설득과 연대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지난 1년은 앞으로 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시작일 뿐이다. 이제 사람이 사는 일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경제인 중심의 정책을 중심에 놓고, 빈곤층을 살린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양산과 선심성 사회복지예산 증액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했으면 한다. 빈곤층, 상대적 약자라는 사람들이 경제인의 뿌리라는 것, 이들이 죽으면 경제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 일류국가는 단순히 1인당 소득이 얼마나 하는 것보다 ‘모든 분야에서’ 선진 일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잘 사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¹⁵⁾ 하였다. 실용이 과하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러한 견제와 저항은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역사의 교훈이다.

15) 노컷뉴스. 2009.03.23.



< 서 울 >

제 2 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지정토론

- 고용 분야
박자경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 / 61
- 교육 분야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69
- 시설물, 이동·교통수단 분야
배웅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77
- 공공기관 분야(사법 행정절차 포함)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 8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

박 자 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일년이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일부 성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일 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자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차별 현황 파악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들은 고용상의 장애 차별이 어떤 형태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용영역에서의 장애 차별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그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년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진정사건은 62건으로, 이는 2001~2007년까지 접수된 142건의 43.6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영역 역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진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을 다른 영역과 비교해보면, 2008년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은 2008년 전체 진정사건의 9.5%에 해당된다. 2001~2007년까지 고용영역의 진정사건이 24.5%

를 차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것이지만 이는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접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진정접수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진정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70% 이상의 진정사건이 모집·채용, 해고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도 나타나던 현상으로,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애인들이 부당해고와 같은 위험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다른 영역의 진정접수가 급증한 것에 비해 고용영역의 진정접수 증가폭이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영역의 장애차별이 다른 영역에 비해 심각성이 덜한 것인가, 아니면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라는 특성 때문인가? 또한 진정사건이 입직이나 해고단계에 집중된다면 임금, 승진 등 입직 이후 장애인의 위치는 장애차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가? 실제 장애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불이익을 염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은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현상만으로는 답을 찾기에 어려움이 크다. 물론 법 시행 일년 만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에 대한 진단은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면에서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차별의 현황과 심각성,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2.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당사자,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용영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명회나 교육을 통해 법의 인지도를 높이고 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공동으로 3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장애인 고용차별 예방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만으로는 고용상 장애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특히 고용상 장애차별은 다른 영역과 달리 적용대상이 경제활동인구로 한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모든 기관이 고용상 장애차별의 문제에 관여하기보다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만 이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차별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상 장애차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정된 자원으로 고용상 장애차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지속적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이 장애인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연구¹⁾가 일부 보고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사업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담감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사업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고용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기보다 막연한 부담감이나 우려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 사업체는 조사업체의 30.9%에 불과하며, 법의 시행을 알고 있더라도 법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업체는 44.5%에 불과했다²⁾.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체들이 장

1) Bell, D. & Heitmueller, A.(2006),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the UK: Helping or Hindering Employment Amongst the Disabled?, The EALE 2006 Conference.

DeLeire, T.(2000), The Wage and Employment Effect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5(4), pp. 693-715.

2) 2008년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실수를 계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고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사업체의 막연한 우려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는 차별금지 내용,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그리고 이러한 편의제공이 항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개선해나가는 근본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장애인식개선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기업의 경우 입직, 배치, 편의제공 등 여러 부분에서 장애인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역시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4.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지원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진입 뿐 아니라 임금, 승진 등 여러 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해왔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우선과제임에 분명하지만 장애인고용 여건, 즉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연착을 유도하여 장애인고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체의 욕구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체의 인식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인 동시에 사업체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포되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미발간자료

이다.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63.8%의 사업체가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업체는 13.9%, 그 외 항목은 응답율이 8% 미만으로 높지 않았다⁴⁾. 즉 조사대상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체가 시설이나 장비 등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물론 정당한 편의제공은 사용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에 틀림없지만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우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장비의 설치나 개조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이 제도들을 일정기간까지 확대, 유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2008년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실수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포되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별첨 > 고용상 장애차별 사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접수는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차별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승진상의 차별

【사례1】 장애·장애의 영향에 대한 고정관념식 추측을 이유로 한 차별

한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관련직의 후보자 명단(면접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고용주는 시각장애인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 시각장애인의 개별상황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고용주는 의뢰인을 후보자 명단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비장애인의 경우라면 이러한 방식의 추측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⁵⁾

【사례2】 간질을 이유로 한 고용제한 철회

의뢰인은 행정직을 지원하여 면접을 보았다. 면접 중 의뢰인은 이전의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면접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출근일이 정해진 직후 의뢰인은 건강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린시절부터 발작성 간질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6년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발작성 간질 증상이 없어졌고 더 이상 약물치료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며칠 후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사업 축소로 인해 더 이상 채용이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의뢰인은 장애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해당 회사가 의뢰인에게 4,000파운드를 지급함으로써 소송이 취하되었다.⁶⁾

【사례3】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 차별

어느 편의점에 고용된 보조 매니저는 얼굴에 눈에 띄는 흉터가 있다. 이 사람은 편의점 매니저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고용주는 손님들과 공급업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매니저로 승진시켰다. 고용주는 이 사람이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그에 따라 처우하였으므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⁷⁾

5) Disability Rights Commission(2004), Code of Practice, Employment and Occupation

6) 조한진·강민희·최복천(2006), 차별 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장애 및 병력)에서 재인용

7) EEOC(1992), A Technical Assistance Manual on the Employment Provisions(Title 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사례4】 시험 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미이행

의뢰인은 장애로 인한 손목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워드 작업을 하는데 속도가 느리다. 인터뷰에서 의뢰인은 타이핑테스트가 채용심사의 한 과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후에 있을 테스트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특수키보드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테스트 당일 고용주는 특수키보드를 준비하지 않아 의뢰인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었고 결국 고용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비록 의뢰인에 대한 직접차별을 행하지는 않았으나(미채용 사유가 장애가 아닌 테스트 결과)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로 간주되었다.

【사례5】 면접 시 편의제공의무 미이행

청각장애인 의뢰인은 A회사에 취업 지원을 하였다. 의뢰인이 작성한 지원서 양식에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종류나 면접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없었다. 의뢰인은 면접 제의를 받았지만 A회사가 수화통역인을 제공하지 못해서 면접이 취소되었다. 고용주는 면접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의뢰인의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업상의 긴급함을 이유로 재조정된 면접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지원자 한명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뢰인은 A사를 상대로 장애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소송사건에 대한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 A회사가 2,500파운드를 지급하고 소송이 취하되었다.

【사례6】 직무조정 등 합리적인 조정의무 미이행

의뢰인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이다. 의뢰인은 의료기록원직에 취업신청을 하고 면접을 가졌는데 장애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직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설명해 놓은 15개 항목 중 단 1개 항목만이 전화응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적절한 조정을 시행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관과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 내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없었다. 이 사건은 장애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적절한 조정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되었고 의뢰인은 7,436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⁸⁾

【사례7】 훈련참여 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미이행

A사는 인사부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조정·중재기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한 직원이 점자자료를 요청했으나 B사는 점자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A사는 점자자료의 제공 및 그 비용부담은 B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사와 B사 모두 점자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B사가 점자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A사가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근로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계약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장애 때문에 접근 가능한 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외부교육훈련이 그러한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계속)

【사례8】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제공된 휴가로 인한 불이익(해고)

어떤 외판원이 합리적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5개월의 휴가를 사용했다. 회사는 1년 단위로 모든 외판원의 판매실적을 비교 평가한다. 평가 결과 평균 판매실적과 개인 실적 간에 25% 이상 실적 미달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고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외판원을 해고하였고, 실적 미달의 원인이 5개월 간의 휴가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고용주는 그 외판원이 일을 했던 기간의 생산성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해당 외판원에게 해고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과 같다.⁹⁾

【사례9】 편의제공 거부와 해고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30년 이상 일해 왔다. 그는 허리부상과 이전의 건강문제로 이동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의 병가 후 복직하려 할 시기에 고용주는 의뢰인에게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건물 때문에 의뢰인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의뢰인이 해고결정에 항의하자 고용주는 건물변경의 가능성만을 검토한 후 곧장 고용계약 파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접근성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센터의 상담사는 의뢰인이 작업수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용주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용주는 건물주와 건물 변경에 대한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근무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의뢰인과의 고용파기를 고집하였다. 이 사건은 고용법원의 심리가 열리기 전 해당 고용주가 100,000파운드를 지급함으로써 소송이 취하되었다.¹⁰⁾

8) 사례4, 5, 6은 조한진 등(2006), 차별 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장애 및 병력)에서 재인용

9) 사례7,8은 EEOC(2002), EEOC Enforcement Guidance on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Undue Hardship Under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0) 사례9는 조한진 등(2006), 차별 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장애 및 병력)에서 재인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교육부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국립특수교육원(2001)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요구아동(장애학생) 출현율은 2.71%로 만 6세~11세의 초등학교 학령 아동만을 놓고 보더라도 110,639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추정해 보면 약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유치원 과정까지를 합쳐도 71,484명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주로(67.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중증·중복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은 3,837명이다.

1. 차별 시정 진정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도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08. 1. 1.~12. 31.)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진정 접수된 건수는 총 696건이며, 이 중 교육 차별 시정에 관련된 진정 건수는 67건으로 9.0%를 차지하여 재할·용역(69.5%)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이 기간에 조사 완료된 502건 가운데 교육은 53건이며, 그 가운데 28건이 권리구제 대상 사건으로 판단되어 전체 진정건수 중 52.8%의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이것은 전체 완료 건수 대비 권리구제 대상 비율 35.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권리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진정 건수 중 합의 종결되거나 조사 중 각하 또는 기각으로 해결된 24건 외에 조사 완료 후 피진정인에게 차별 시정 권고를 한 것은 4건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율은 60%에 머물러 전체 권고 이행률 85.3%, 공공부문 이행률 95.8%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2. 진정 내용에 나타난 차별 유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내용은 <표 00>과 같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시험평가와 편의 제공에 관한 진정이 34.5%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이 27.6%, 수업 등 교내 활동 배제가 18.9%로 두드러진다. 그러나 전입학 거부(5.2%)나 기타(괴롭힘, 특수학급 설치 각각 6.9%) 진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진정사건의 유형

(단위 : 건)

| 진정유형 | 합계 | 전입학 거부제한 | 시설물 접근 및 이용 | 시험평가 편의제공 |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 특수학급 설치 | 기타 (괴롭힘) |
|--------|-----|-------------|----------------|--------------|-----------------|------------|-------------|
| 합 계 | 58 | 3 | 16 | 20 | 11 | 4 | 4 |
| 구성비(%) | 100 | 5.2 | 27.6 | 34.5 | 18.9 | 6.9 | 6.9 |
| 공공부문 | 29 | 2 | 7 | 6 | 10 | 1 | 3 |
| 민간부문 | 29 | 1 | 9 | 14 | 1 | 3 | 1 |

3. 유형별 진정사건의 해결

1) 불합리한 수업 지원과 평가

수업이나 시험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주로 시각이나 청각장애로 보통의 문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곤란을 갖고 있다. 또는 심한 운동기능 마비로 언어장애를 갖고 있거나 필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교육 차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개인별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를 파악하여 다음 중 하나 또는 다수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수업 시작 전까지) 점자로 된 수업자료 제공
-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제공
-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시각장애인용 정보단말기) 대여
- 확대된 수업 자료 제공
- 수업자료를 확대하여 볼 수 있는 디지털 혹은 광학기기 제공
-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
- 강의록 대필 서비스 제공
- 대체 평가 방식 제공(포트폴리오, 시간 연장, 구술, 파일제출, 개별문답, 평가내용의 사전 제시 등)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팔걸이가 있는 의자
- 그 밖의 수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학습보상기자재

이러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학교 혼자의 노력보다는 시청각장애인협회, 보조공학센터, 특수학교 등 지역사회의 관련 인프라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교내 이동과 접근 곤란

교내 시설은 모두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완전한 이동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교육시설들이 법률적 규정(1996년)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져 통합교육, 특별전형제도 등으로 늘어난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설적 미비에 따른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시설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지점을 선정하여 보완적 장치들을 설치함으로써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위해 시급히 이동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지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校舎, 개별건물) - 현관(주출입구), 복도(수평이동), 엘리베이터(수직이동)
- 교실(강의실) : 출입구(턱과 폭)
- 화장실 : 출입구, 지지대, 휠체어 회전 공간
- 교무실(학과사무실) : 출입구
- 도서실(도서관) : 출입구, 서가의 폭(혹은 도우미)
- 식당(학생회관) : 출입구
- 교정(운동장, 캠퍼스) : 교문↔현관(이동로-점자, 경사로 등)

예를 들면, 출입이 잦은 문(자기 학급, 특수학급 등)에는 탈부착이 용이한 자동 여닫이 장치를 단다거나, 자주 드나드는 건물 현관은 우선 경사로를 설치하되 그렇지 않은 곳의 출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 이동용 경사램프를 비치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3) 교육활동의 배제 또는 부분적 참여 허용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과 부모들이 가장 크게 차별을 겪으면서도 교육책임자나 교사 스스로도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수업이나 교육활동 기회에서의 배제 혹은 제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장애아라는 이유로 학교 시험이나 현장학습에서 배제되었다는 부모의 진정 내용도 있다. 그동안 장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에서 자주 배제되거나 부분적인 참여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수업 및 학급활동 참여(읽기, 앞에 나와 문제 풀기, 발표, 지명, 임원 등)
- 특별교실(과학실, 음악실, 가정실습실 등) 수업
- 체육수업
- 견학, 체험 등의 현장학습
- 수련회
- 수학여행 등

수업활동이나 학급활동, 특별교실 수업, 체육수업과 같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교사들의 자각과 인식변화로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견학이나 수학여행 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여전히 학교와 부모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는 부모에게 학생 보호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결석을 유도한다. 앞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간강사와 같이 지역 내 학교들의 장애학생 교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4) 입학 및 전학 거부

장애학생의 입학 및 전학 거부는 1994년부터 법률로 금지함으로써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이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저마다 입학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유치원 이하의 과정에서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지금도 종종 입학 거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보다는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학생을 배제하거나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면접이나 특별한 서류 등의 요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유치원 이하의 경우 장애아동의 입학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시키지 않음으로써(유치원 이하의 기관이 대부분 사립이라는 한계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직접적인 거부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례는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A예술중학교로부터 발달장애가 있으며 특수학급 출신이라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 및 입학을 거부당하였음. 이 문제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수차례 문제 제기 하자 교육청에서는 현재 피해자가 다니는 B중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여름방학전일까지 임시적으로 피해자를 A예술중학교에 다니도록 하되, 기간이 종료 되면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에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치를 취함.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학교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조사 중 해결)”

아동의 배경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동이 예술중학교를 지원한 것은 분명히 어떤

분야(특정 악기의 연주와 같은)에 두각을 보여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일단 한 학기 동안 A학교에 다니도록 한 교육청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진행 과정에 진정인과 학교, 교육청 사이의 불협화음이 길었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A예술중학교가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서 학생들의 입학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학교 측 입장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확대해 보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 중·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들이 설립 이념과 목적에 따라 저마다 학생들의 선발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들어 학교가 특정 장애인의 입학 불허할 경우 통상 차별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학교의 선발요건을 존중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입학요건에서 예외적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 분야나 특정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장애아동의 잠재능력을 일찍부터 충분히 관찰하고, 직전학교의 장이나 관련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차별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4. 특수교육 정책과 교육차별 시정 전망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결과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예상되는 차별행위를 예방한다는 사전적 조치 효과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과 때를 맞추어 발표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은 장애인 교육차별을 예방할 주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을 내실화 하며,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수교육 지원 강화는 차별시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책으로 정부는 우선 전국 180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비롯해 무려 아홉 가지에 이른다. 대부분의 기능이 장애아동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엮어서 교육청과 학교, 교사, 부모, 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력과 예산, 시설·설비 확충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한 분야이다.

두 번째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서비스란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는 동안 가족 지원이나 치료 지원, 수화통역사 등의 보조인력 지원, 확대 독서기 등의 보조공학 지원, 등하교 등의 통학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끝으로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교육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 지원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와 제14조의 교육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실현할 희망적인 조치들로 파악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방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 정책 당국자들은 모든 교직원의 직무 및 자격 연수 내용에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권리구제 사항을 포함하고, 교원 양성과 임용과정에도 포함시켜 나가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교육과학기술부(2008).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2001).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09).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2008. 4. 1.~2008. 12. 31.).

시설과 이동의 차별금지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와 향후 과제

배 용 호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및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차별 가운데 하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시설물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의 제한이나 접근의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았기에 이 영역의 차별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분석한 2008년도에 진정된 장애차별진정사건에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물과 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포함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고용(9.5%)이나 교육(9.0%)를 훨씬 뛰어넘어 484건으로서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정된 전체 진정사건 645건 가운데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410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시설물은 95건, 이동 및 교통은 125건으로서 역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절반에 달하는 차별은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그리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등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권고 목록만 보더라도 전체 24건 가운데, 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설물 및 교통수단 등에 있어서의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 얼마나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의 재화와 용역의 이용에 대한 시정권고와 조사중 해결 등 권리 구제 대상이 된 사건은 119건으로서 36.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진정사건의 1/3 정도가 권리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고용(27.6%)이나 괴롭힘(21.7%)보다는 높지만, 교육(52.8%)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진정처리 비율을 보더라도 시설물의 경우 52.6%, 이동 및 교통은 58.4%로서 처리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것은 차별의 영역 가운데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이 가장 심각한 차별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치며, 처리 기간은 다른 영역에 비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대한 진정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 된다는 것은 진정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일이다. 장기화되는 그 기간만큼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감수해야 하며, 장기화되는 기간 사이에 개선이 이루어져 기각이나 각하 사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36%에 달하는 구제비율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이 시행이 되면,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 진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8년도의 결과를 볼 때, 구제비율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가 매우 좁고,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역시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정사건이 대상 범위가 아니거나, 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이 아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한 차별 여부 판단으로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 보다 더 많은 차별진정이 예상됨에 따라 처리 기간의 장기화는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이 길어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정당한 편의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은 직접차별보다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로 인한 차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의 대상을 얼마나 확대하는가, 그리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얼마나 확대하는가가 결국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을 구제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가 좁을수록 차별을 당하는 영역은 넓어질 것이며,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적을수록 차별당하는 장애인은 늘어갈 것이다. 불행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정당한 편의의 내용도 축소함으로써 수많은 차별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버렸다.

문제점 및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대상은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로 제한되어 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교육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은 2009년 4월 11일 이전의 시설들이므로 대부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대상을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등을 한 시설물로 못 박은 이유는 시설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1998년 4월 10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한 시설물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편의증진법보다도 훨씬 대상이 줄어들었으며, 공공시설 등 정비대상시설의 경우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내에 무조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편의증진법보다도 훨씬 후퇴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현재처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경

우 시설물의 중요성이나 공공성과 관계없이 많은 시설물들이 누락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등을 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하면서, 시설물에 있어서만은 단계적 적용을 하지 않고 시행일시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에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둘째, 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해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별표에서 정한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시설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¹⁾에 대한 규정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²⁾ 따라서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을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모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다. 결국 정당한 편의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져 시설주와 교통사업자에게도 배포되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편의는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차별 여

1)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2) 정당한 편의의 개념에는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수단과 물적수단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며, 편의시설은 정당한 편의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당한 편의에 있어서의 차별 여부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장애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편의 자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정당한 편의는 차별이 아니라 복지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기에 더욱 차별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차별 여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권위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인권위에서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은 지속되며 반복된다. 시설물과 이동 및 교통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접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경우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회참여와 활동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건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차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권위의 인력과 조직 확대라는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를 결정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설물과 이동 및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차별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

공공기관 분야 토론

염 형 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행정안전부

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구(법무부 산하 시정명령 심의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할 창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가 정부의 다른 어떠한 부처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4명으로 21.2%인 44명이 감축되고,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되었고, 지역사무소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조직 진단을 거쳐 다시 존폐를 결정짓게 됐다. 행안부의 최종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의 5본부(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인권교육, 행정지원) 22팀을 1관(기획조정관), 2국(정책 교육국, 조사국) 11과로 바뀌어야 한다.

불과 작년 7월까지 20% 인력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던 행안부가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이 업무에 비해 과도한 인력이 편성돼 있다며 말을 바꾸더니, 결국 인권위 축소를 감행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축소의 규모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

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에 있다.

행안부는 장애차별법의 인력은 증원시켰다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문제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적인 대안마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민간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장애 차별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위 진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장애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무소는 폐지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나. 선거 참여 보장

우선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되는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투표소를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바, 선거방송 및 선거 홍보물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2. 국가인권위원회

가. 진정사건 처리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진정사건 처리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기준으로 총 처리사건 502건 중 기각 및 각하 사건은 466건에 이르러 92.8%에 이르고 있다. 기각·각하된 건 중에 조사 중 해결된 건이 143건에 이르러 전체 기각·각하 건 중에 1/4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각·각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 진정조사를 담당할 조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중요한 원인은 장애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애 차별 진정은 소송절차와 다르게 진정서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전제로 최대한 차별을 당한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장애차별조사를 담당할 조사관이 수시로 교체되고 장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조사관이 많지 않아 미흡한 조사와 그에 따른 형식적인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 방송에 의한 장애인 차별 진정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공공기관이 개인을 차별하거나 민간회사 또는 개인이 장애인 개인을 차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에 의하여도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차별 내지 비하, 장애인 전체에 대한 차별 내지 비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특정 장애유형이나 장애인 전체에 대해 사회 일반의 편견·차별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보다 훨씬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충분히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방송이나 신문기사에 적용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복지부

가.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현재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각각 장애 차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한 지침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깊은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생략된 채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을 얼마만큼 공공기관에서 지킬 것인지, 그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차법 적용의 한계

장차법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등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제하였을 때만 실현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람은 장차법상의 규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제 받기는 어려움이 크다.

장애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장차법 제5조의 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우리 사회는 정신적 장애인들의 의사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차법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의미있는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족쇄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각종 제한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4. 법무부

가. 보험가입 거부 문제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하면서 보험가입과 관련된 위 협약 제25조 e항의 ‘특별

히 각 당사국은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현행 상법 제73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명시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1991년 개정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위 협약상의 보험조항을 유보하는 것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위 협약 제25조 e항을 유보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추어 상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상법 규정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협약 제25조 e항에 대한 기준유보는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상법 제732조 개정안을 보면 제732조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심신상실·심신미약’이라는 개념이 추상적 개념이어서 이에 대한 해당여부가 보험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행해진 것임에도 ‘의사능력’이라는 또다른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여 그 해당여부를 보험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의사능력’이라는 개념 또한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는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보험가입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다. 따라서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 경찰·검찰 조사 문제

최근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참여한 한 지적장애인이 영등포구청역에서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다. 경찰이 보호자 등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고지하지 않아 아무도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을 받았고, 당사자의 부모는 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말을 할 줄 아니 그냥 조사했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현행 장차법 제26조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도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구술 혹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안 제26조제6항)한 것은 장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규정들이다. 그러나 사법절차상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구술 혹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의무화하는 장차법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광 주>

제 1 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진수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사무관) / 1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자체 평가 및 추진방향
노희용 (광주시 사회복지과 과장) / 91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평가 및 요구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105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행을 위한 지자체 평가 및 추진방향

노희용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2 발제문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행을 위한 지자체 평가 및 추진방향

노 희 용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I. 서 문

- 장차법이 지난 2007. 4. 10 제정되었고 공포후 1년이 지난 2008. 4.11부터 시행되었으나
- 각 차별금지 영역의 세부 시행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붙임 참고
- 장차법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선 공공기관에서 차별 해소를 위해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됨
- 장차법은 6개 영역, 즉
 - ① 고용 ② 교육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④ 사법적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 모·부성권, 성 등
 - ⑥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인 차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인권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럼에도 대다수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장차법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사업장에서 장차법 시행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법 시행으로 우리 市에서 하여야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함

II. 장애인 차별해소 계획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고용분야는 각 사업장에서,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서, 사법분야는 사법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맡겨두고 오늘은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할 사안을 언급하겠음

1. 장애인 의무 고용분야에서는

- 올해부터 정부부분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됨.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市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8년 말에 5개 구청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인원은 188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의 3.41%임
- 시청의 장애인 고용수는 83명으로 공무원 정원의 4.2%이며 의무 고용비율 3%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이는 16개 市·道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하위 市·道の 두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임
-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상위 장애인 고용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市가 장애인 의무고용 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채용에서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승진, 교육, 전보 등에서도 장애인이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무수행 장소, 사무기구의 적절성 등도 금명간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임

- 참고로 민간부분의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체 443개소중 132개소인 29.8%가 의무고용 비율 2%를 준수하고 있음
우리 市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관내의 많은 사업체가 의무 고용율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2.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의 차별금지

- 공공기관은 09. 4. 11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시설물에 적용되므로 건축부서에서 인·허가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내용을 확인하여 인·허가를 하도록 할 계획임

3.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2006년부터 시행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우리 市에서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는 이동 기본권 확보” 라는 정책 목표하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전체 시내버스 900대중 저상시내버스는 4.5%인 40대가 운행 중인데 2013년까지 30대를 확보할 계획이고 장애인 콜택시는 최근 4대를 증차해 12대가 운행 중이며 매년 10대씩 증차해 2015년까지 80대를 확보할 계획임
-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교통수단 확대 개선, 교통인프라 구축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3개 사업에 1,053억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4. 정보접근에서 차별금지

- 수화, 구화, 점자 등 의사 소통방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행사시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할 계획임

5.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2008년에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림화면에 음성 설명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 제공
시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 글자 확대 기능
각 사업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로 이동이 용이하게 바로가기 코너 설치 등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음
- 올해에도 오는 7월까지 수화, 문자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웹접근성을 보완할 계획이고 타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홈페이지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계획임

6.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2010년부터 적용대상이며 주로 공공시설의 출입구, 위생시설, 관람석, 무대단상의 설치 또는 개조와 보조인력 배치, 정보제공에 관한 것으로 예산확보 등 준비를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Ⅲ. 인식개선 교육강화

- 장애인들이 가장 큰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따라서,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인식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공무원들의 의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 市에서는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음
- 장차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 장애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장애인 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임
- 시에서는 4월중에 시청과 구청공무원들에 대한 집합교육과 장애인 시설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IV. 홍보 및 이행 평가

1. 다양한 홍보시책 마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장애인 차별이 예방될 것으로 보임
- 시청과 구청에 홈페이지에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내용을 안내하고 시보와 구보에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의 진정과 해결과정을 담은 사례를 정기적으로 다루어서 재발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장차법 시행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각 기관, 사업장 등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임

2. 모니터링제 시행

- 장애인 차별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일 것임
장애인 차별 개선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장애인 차별해소에 상충되는 기존의 제도나 새롭게 형성되는 정책들을 보완 수정할 계획임
- 모니터링은 장애인 인권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할 계획임

3. 추진사항 점검 평가단 운영

- 장애인 차별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행은 실제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모두 처리할 수는 없음
- 교통, 건축, 도로, 문화예술, 체육부서의 담당(사무관)급 10여명으로 실무반을 구성하여 법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9년 4월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1년 4월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3년 4월11일부터 적용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 2009년 4월11일부터 적용
 -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 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다. 「초·중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목의 시설 :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제1호 나목 이외의 「유아교육법」에 다른 국·공립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 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 1항 관련)

| 행위자 등 | 단계적 범위 |
|--------------------|-------------------------------------------------------------------------------------------------------------------------------------------|
|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7. 의료기관 등 |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계속)

| 행위자 등 | 단계적 범위 |
|------------------------------------------|---------------------------------------------|
|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
|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모집, 채용 등)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관계자 (노동가입과 조합원 권리)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 박물관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 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제16조 2항 관련)

I. 시설의 종류

| 구 분 | | 시설설치 내용 |
|----------|----------|------------------------------------------------------------------------------------------------------------------------------------------------------------------------------------------------------------------------------------------------------------------|
| 공통 필수 | 편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 | 수영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
| 실내 시설 | 실내체육관 |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 | 야외경기장 | - 경기장 진입 시설 |
| 실외 시설 | 야외경기장 | - 경기장 진입 시설 |
| | 생활체육공원 등 |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평가 및 요구

김 용 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3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평가 및 요구

김 용 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0%에서 30%로 그리고 21%로 하향조정된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이 차관회의(3월 26일), 국무회의(3월 30일)를 차례로 통과했다. 상당한 속도전이다. 이외에도 광주, 부산, 대구 지역의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폐쇄 방침은 1년 이후에 재검토 여지를 남겨두고,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가 아닌, 인권을 축소했고, 우리 사회의 인권을 사망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환호와 기대는 폐기처분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철폐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필자는 그렇게 잔인한 3월을 보내고, 무력감 속에서 더 잔인한 4월을 살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함에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인권공대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의 성명서, 토론문, 신문기사 등을 참조하였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자. 2007년 3월 6일 17:30경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7년의 투쟁과 각계의 논의를 거쳐서 만든 역사적 순간이었다.

1) 장애인 당사자가 법 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다.(당사자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작부터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도

하였다.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도입해 오고, 장애인들은 그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된 장애인 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요, 당사자 운동의 결실인 것이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국회 등과 협상하였다. 그로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정당한 주장, 사회 참여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농축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2)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다.(연대주의)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 때문에 몇몇 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처럼 범장애계(247개의 전국/지방 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던 단체들도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연대 조직이 있다. 한국장총이나 장총련과 같은 거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난 몇 년을 지탱해왔다. 장추련의 힘은 여기로부터 출발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 숙원이던 범장애계 연대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의 공통성과 보편성의 결과물이라 할 장애계 내부 단체들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하는 노동, 교육, 여성, 인권, 종교, 문화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장추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장추련과 결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평화 등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며 보다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전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다.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시혜의 대상

이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4) 장애인 인권 운동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인권 운동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기나긴 세월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외국인, 혼혈인, 성적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지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고 다수자들의 인식을 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차별금지법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권고까지 하였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법 제정 움직임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차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각론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의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

‘5본부 22팀’인 조직을 ‘1관 2국 11과’로 바꾸고, 인원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이 땅에 인권은 없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물론이고 조직이 축소되면 사실상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 것은 이 땅에서 인권을 소멸시키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국민의 인권‘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자본이나 효율의 잣대로 썰 수 없는 ‘인권’을 그들의 해괴망측한 논리로 인권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1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권말살 행위들을 겪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인권위 축소는 그것의 연장선일 뿐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진정,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출범 이듬해인 2002년 이후 진정 건수가 2배, 상담 건수는 약 4배, 민원 건수는 10배 가량이 늘었다.(표1참조)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접수 건수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전체차별진정 | 53 | 136 | 358 | 389 | 1081 | 824 | 1159 | 1380 |
| 장애인차별진정 | 13 | 20 | 20 | 54 | 121 | 113 | 239 | 636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들의 진정이나 상담이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60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2007년 10월 31일 당시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장애차별시정1팀의 신설과 인력 20명 증원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작년 1월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증원계획을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2008년의 경우 전체 진정건수에 비해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는 46%에 이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530여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처리율은 48%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에 접수되는 진정 및 상담 건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고, 지역 사무소는 인권취약계층을 위하여 그 역할은 오히려 더 키워져야 한다. 2007년 7월 2일~2008년 11월 30일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총 6만 9,535건 중 3개 지역사무소가 22.6%인 1만 5,709건을 처리했다.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정보입수와 이동이 보다 수월하지 않고, 지방은 대도시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욱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이 더욱 필요할 것이기에 지역사무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표 2> 최근 4년간 지역 사무소의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서울 | 3,183 건 | 2,577 건 | 2,752 건 | 1,976 건 |
| 부산 | 88 건 | 762 건 | 931 건 | 1,141 건 |
| 광주 | 112 건 | 621 건 | 863 건 | 1,028 건 |
| 대구 | | | 308 건 | 1,154 건 |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2009년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에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의결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하에 2008년 민간 건의 사항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결과를 발표하였다. 규제일몰제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규제를 지속해야 할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3항¹⁾도 포함되었다. 민간규제 201개에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의 경우, 재검토기한은 5년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5년 안에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된다.

1)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③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8년 7월 한달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상파방송사의 자막방송 비율은 90.7%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화통역방송은 3.8%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통역방송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지상파의 경우 5.3%에 불과하며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드라마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방송에 한해 제한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표 3 참고)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케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IPTV)들도 자막, 수화, 화면해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표 3> 지상파 방송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자료²⁾

| 방송사명 | | 월간 총방송시간량(분) | 월간자막방송 | | 월간수화방송 | | 월간화면해설방송 | |
|------|-----|-----------------|---------|-------|--------|-----|----------|-----|
| | | | 시간(분) | 비율(%) | 시간(분) | 비율 | 시간(분) | 비율 |
| KBS | 1TV | 37,170 | 33,280 | 89.5 | 3,370 | 9.0 | 2,385 | 6.4 |
| | 2TV | 36,455 | 36,455 | 100 | 680 | 2.0 | 2,160 | 5.9 |
| | 계 | 73,625 | 69,735 | 95 | 4,050 | 6.0 | 4,545 | 6.2 |
| MBC | | 36,225 | 33,700 | 93.0 | 1,225 | 3.4 | 2,070 | 5.7 |
| SBS | | 36,740 | 32,945 | 89.7 | 1,635 | 4.4 | 2,160 | 5.9 |
| EBS | | 35,605 | 28,860 | 81.0 | - | - | 910 | 2.6 |
| 계 | | 182,195 | 165,180 | 90.7 | 6,910 | 3.8 | 9,685 | 5.3 |

규제일몰제로 인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3항은 시행된 지 1년만에 기대효과를 보기도 전에 없어진다는 예고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의식이 많이 성장해 재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방송을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는 이명박 정부의 식견으로 모처럼 정보획득의 폭이 넓어질 것을 기대했던 장애인들의 일상과 미래를 향한 계획이 좌절될 것이 두렵다.

2) 2008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방송사들에게 취합한 자료

3)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권을 제약하는 개악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1년도 안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1조 3항을 시행대상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이유로 제21조 3항을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안 21조 4항)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하고, 시행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지 않았다<표 4참고>.

<표 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 비교표

| 현 행 | 정부 발의안 |
|-----------------------------------------------------------------------------------------------------------------------------------------------------------------------------------------------------------------------------------------------------------------------------------------------------------------------------------------------------------|--------------------------------------------------------------------------------------------------------------------------------------------------------------------------------------------------------------------------------------------------------------------------------------------------------------------------------------------------|
|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② (생략)</p> <p>③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는</p> <p>-----</p> <p>-----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p> <p>-----.</p> <p>④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읽기·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

이유는 출판물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높고, 영상물 대하여는 많은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마치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것같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와 조건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에 과연 시각 장애인들이 인쇄된 글을 볼 수 있겠는가? 시청각장애인들이 음성과 영상을 모두 인식해야 한 하는 영상물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법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현대에 와서 학교나 교육기관보다는 출판물과 영상물을 통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기술지원만 잘 된다면 장애인에게 과거보다는 더욱 유리한 시대이다. 반면 기술지원 없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원시사회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라면, 장애인이 겪어야 할 차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4)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 속에 공공영역에서 방치되는 차별

① 개정되지 않고 있는 편의증진법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된 후에 시행령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 때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증진법에 없는 인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를 온전히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보건복지가족부는 두 법률의 내용이 대동소이 할 것이므로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대상시설과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두는 것으로 하고,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때에 조속한 개정을 서두르기로 하였으나 정부는 시행 1년이 되어가도록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내놓을 뿐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편의증진법에 대해 4월에 복지부 안을 확정해서 8월에 법제처에 제출하면 11월경에 개정될 것이라 하였다. 편의증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되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이다.

②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차별 법규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련 법률들은 조속하게 개정하여 장애인들이 개별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 일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의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등의 관련 개별법률들이 빨리 개정되어야 함에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아예 개정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충법률 조사에 의하면³⁾ 상충규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는 정치·행정분야에 해당하는 ‘헌법/국회/선거·정당/행정일반/국가 공무원 분야’로서 전체 상충법령 건수의 27.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10.9%), ‘교육·학술/문화·공보/과학·기술 분야’(10.1%), ‘법원/법무 분야’(8.5%) 순으로 나타났다. 상충규정은 20개의 주무부처에 두루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에 관한 개별법률, 선거에 관한 개별 법률, 정보와 관련한 개별법률, 각 공공기관 및 민간조직의 임원 자격 등의 조직에 관한 법률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하고 빠르게 홍보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5) 방치되고 있는 시정명령과 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하는 시정명령 심의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구성되었다. 2008년 5월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있는 이후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상임기구가 아니더라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항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후 불이행된 사안이 통보되었어도 법무부 내에서 시정명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25조 제3항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고 하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시행령 자체가 법무부 차관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차 회의시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세칙을 만들었다. 비록 운영세칙이라 하여도 심

3) 우주형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8.

의위원들과의 신의를 만들어나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기도 하다.

3. 총평 및 제안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은 반드시 증원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축소와 인력감소는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진정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보지 못하는 사정이다.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보겠다고 어렵게 결심하고 진정을 하였어도 해결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경과한다면 심적 피해를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여도 오랜 기간이 거쳐야만 인식개선과 더불어 법 준수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시킬 기관의 첫 단추가 떨어져나간 것과 다름없음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사무소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더욱 필요로 한다. 현재의 지역사무소는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증원하고, 지역사무소도 늘려야 한다.

2) 차별금지를 규제하지 말고, 차별을 규제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일컬어 친기업 정부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실용정부라고 불렀다. 실용=친기업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실용이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교육받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관계를 맺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화, 점자, 자막, 음성,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면 현 정부는 역대 가장 반인권적이고 몰지각한 비실용적인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게다가 앞으로 5년 후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겨우 자리를 자리잡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 때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을 과거의 암울한 시대로 돌려놓고 정권의 끝을 맺겠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교육·문화의 핵심적 매체인 출판물과 영상물로부터의 정보접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서 임의규정을 둔다는 것은 차별이 발생해도 좋다는 것과 다르없다.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그 각각의 사정에 따라 시행시기를 유예하면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에 대한 정부개정안에는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다. 제21조 3항을 규제일몰제에 포함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으로 있다가 시행 4년 후에 아무런 사회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없어진다면 정부 스스로도 부끄러울 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종이 출판물에 대하여는 시각장애인단체가 중개기관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책을 서점에서 1권 내지 2권을 사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중개단체가 출판사에 파일을 요청하여 받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한다고 한다. 출판사에서는 책을 판매하고, 중개기관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구하려고 한 도서의 파일을 얻어서 점자프린터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불법 복제는 출판사나 중개기관이 보안을 걸어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영상물에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넣는다면 그 비용이 고려되어 유통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들어간 비용만큼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 된다. 추가되는 비용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년이면 50,000여 종의 출판물이 나온다 한다. 저작권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홍수 같은 정보와 지식들을 어떻게 기술지원을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장애인)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4) 조속히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편의제공 내용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상충법규들을 개정하여 개별법규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편의증진법 인용하도록 함에 따른 편의증진법 개정은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권리적 시각에서 해석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시설은 물론 설비, 도구, 서비스와 조치까지 포함이 된다.

5) 모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부과는 올해 4월 11일부터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과 해당교육기관⁴⁾부터 시행된다. 해당되는 사업장과 교육기관 등에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할 행정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한편 각 부처에서 소수자의 권리인식 교육을 통해 금전만능주의의 공무원으로 전근적인 국가로 퇴보하여 다시 복지국가나 인권국가로의 발돋움이나 선진국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보다 주력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공공부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년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두 부처의 역할과 사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애인에게는 절실하게 바뀌어만 할 현실이 적당히 한 두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시성 위주의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실용정부가 아닌 인의(人義)의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은 인재(人災)가 원인이라는 것도 이 정부가 인식 해주기를 바란다.

4) 국·공·사립특수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참고문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홈페이지(자료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박종운)
이명박 정부 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평가 및 제안(김광이)



< 광 주 >

제 2 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지정토론

- 교육 분야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 123
- 시설물, 이동교통수단 분야
김동호 (한마음자립생활센터 소장) / 129
- 공공기관 분야(사법 행정절차 포함)
김상훈 (법무법인 빛고을 변호사) / 137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교육분야

김 영 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 '장차법'의 교육분야 이행 평가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교육영역 진정사건은 전체 진정사건 696건 중 67건이었음.
- 차별 영역별 비중을 보면 교육영역은 2008년 9.6%로서 2001-2007년의 20.2%에 비하면 줄어들었음. 그러나 교육영역의 진정사건 수를 보면 2001-2007년 총 117건인데 비해, 2008년 한 해 동안 67건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임.
- 2008년도 진정사건의 처리 현황에 있어서 교육영역의 경우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용, 합의 또는 조사중 해결로 처리되는 건수가 28건으로 전체 처리사건 53건 중 52.8%였음. 이는 2008년에 처리된 전체 502건 중 인용, 합의 또는 조사중 해결사건 총 176건 즉 35.1%에 비하면 높은 편임.
-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교육영역의 진정사건이 인용, 합의 또는 조사중 해결 형태로 처리된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이 의무교육으로서 국가주도 공교육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봄.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2007년에 비해 2008년 교육영역에 대한 차별 진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장애학생들이 여전히 교육에 있어서 차별적인 현실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 토론에서는 장애인 교육분야의 주요 현안을 제시한 후, '장차법'의 교육분야 규정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교육분야 주요 현안

1) 장애학생의 일제 고사 참여 배제

○ 사례 1

- 어느 초등학교 통합학급에서 있었던 일이다.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봤는데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아예 나눠주지도 않았다. 일반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장애학생은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해당 장애학생 학부모 A 씨는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두 번 다시 그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며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교실에 앉혀놓고 어떻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지 않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어느 중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의 1교시 국어시험이 끝나자, 교감이 다음 시간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 장애학생들이 학교 성적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이유였다. 뒤늦게 특수학급 교사의 반발로 시험이 다시 진행됐지만, 장애학생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또 10여개 학교에서는 일제 고사 참여 대신 일상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예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영화만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 최근 국가가 주도하는 각종 일제 고사에서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추세임.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일제 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학부모나 특수교육교원이 결정하는 대신 각급 학교의 장이 결정하고 있음.
 - 시각장애특수학교를 비롯하여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국가가 시험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2) 장애학생의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참여 배제

○ 사례 2

- 어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 양(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009년 5월경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동행해 줄 수 있는냐는 내용이였다. 특수학급 교사나 특수교육보조원이 수학여행에 동행할 수 없으니,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A 양을 수학여행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말이였다.
 - 어느 초등학교 B 양(자폐성장애 2급) 어머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에 동행해 달라는 담임교사의 말에 직장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담임교사는 B 양의 현장학습을 위해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그냥 특수학급에서 수업 받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B 양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 수밖에 없었다.
-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장차법 제13조 제4항).
-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참여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교육의 일부이므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특수교육교원, 담임교사, 학부모가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협의하여야 할 것임.

3) 학습교재 및 웹접근성 부족

○ 사례 3

- 교재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썼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안 알아본 데가 없을 정도예요. 교재 제작 시간이 너무 길어, 심지어는 제가 기말고사 보기 3일 전에 책 받은 적도 있거든요(어느 시각장애인, 시각장애 1급).

- 숙명여자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C 양(시각장애 1급)은 지난 학기 수강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최근 성적우수상을 받았다. 그녀는 수상을 취재한 기자들에게 '책' 문제가 그녀의 대학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였다. C 양은 "400 페이지가 넘는 교재를 점자로 만드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출판사에서 한글파일로 제공해 주면 빨리 변환시킬 수 있지만 저작권 문제로 쉽지 않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학생은 교과서 이외에 대부분의 학습자료를 접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에 다니는 시각장애학생은 교재 확보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함.
- 정보화 시대에 시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는 웹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4) 청각장애학생의 기초학력 부재

○ 사례 4

- 제가 대학에서 청각장애인을 가르치는 중인데 보통의 학생들과 비교해 봐서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시험 지원을 해주는데, 시험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없다고 보고 싶지만 기본적 학력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직종의 취업이 되기보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일산에서 하는 말이 학생들이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사칙연산과 가장 기본적인 단어 등도 이해하지 못해 기술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기본교육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 작년에 공단에서 S전자에 취업을 연계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 적성검사

에서 떨어졌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다 떨어지고 한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한명도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제로가 되 버렸죠.. 그 뒤로는 그 쪽에는 진출을 안 하죠... S전자 직원에게 필기시험 수준을 물어보니 중학교 검정고시 수준의 문제를 냈지만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기초학력의 부재는 직업선택의 제한 및 저임금 근로자로 남게 됨.
- 학교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닌 전인교육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진로, 가정문제, 이성문제 등 상담이 되지 않고 있음.

3. ‘장차법’의 교육분야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일제 교사 참여 여부 및 시험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이 조정자로서 역할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통해 학부모 및 일반교사 등이 실제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현재와 같이 학교 관리자가 결정할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은 장애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인력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을 위해 ‘장차법’ 제21조를 박은수 의원과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즉, 출판물사업자 또는 저작권자는 점자, 음성 또는 큰문자로 변환이 가능한 텍스트기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함. 다만 파일은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내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와 같은 국립기관에 제공하고,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원하는 접근 가능한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의사소통은 교사위주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의사소통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또한, 장차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수 또는 학습자료를 개발,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동권 언제나 현실화될런지

김 동 호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移動權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¹⁾

I. 왜 이동권인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5.1.27. 제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있어 삶의 희망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으로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지키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법이 없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관련법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었다.

오늘 언급해보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명이며²⁾이며 2005년 추정 장애 인구는 2,148,686명이다.³⁾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ICF 기준⁴⁾으로 정의된 장애 분류에 따르면 인구대비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명 정도가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중 장애인의 70.5%를 차지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들은 이동에 극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이동수단과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 인프라의 현실은 이러한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최중증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동시대에 살아가

2) 2008년 기준 48,606,787명. 통계청 자료.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6.

4) 세계보건위원회는 1997년 제안된 ICIDH-2를 근간으로 5년 동안의 현장검증과 국제회의를 거쳐서 2001년 5월에 ICF를 세계적인 장애분류기준으로 승인.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자 하는 틀.

면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온갖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 일부 장애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며 시작된 자립생활 운동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가 장애인 이동권인 이 유도 바로 이러한 절실한 필요 때문이다.

II. 장애인 이동권 관련 운동의 전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박소엽(71, 여, 지체3급), 고재영(71, 남)씨 부부가 장애인 용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박소엽씨가 사망하고 고재영씨가 다리가 부러진 사건이 발생한다. 편의시설을 이용하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1억7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⁵⁾ 이때부터 분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운동이 시작되었고 장애인 이동권

5)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일지

① 혜화역 이규식 씨 리프트 추락사고

1999년 6월 28일 이규식(31, 뇌성마비 1급) 씨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스쿠터(전동 휠체어)로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공간을 맞추다가 앞쪽 안전판을 넘어 앞쪽 계단 1/3 지점까지 스쿠터와 함께 굴러 떨어져목과 머리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

② 천호역 이흥호 씨 리프트 추락사고

1999년 10월 4일 노들장애인야학에 등교하던 이흥호(31, 뇌성마비 1급) 씨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리프트 레일이 휠체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용접 부위가 떨어져나가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추락.

③ 오이도역 박소엽 씨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로우프식)가 끊어지면서 7m 아래로 추락, 리프트에 타고 있던 박소엽(여, 71, 지체장애 3급) 씨가 사망하고 고재영(남, 71세) 씨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 발생.

④ 영등포구청역 이동석 씨 리프트 추락사고

2001년 7월 18일 이동석(34, 1급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씨가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귀가를 위해 이용하던 리프트가 작동 도중 멈추자 공익근무요원을 불렀으나 갑자기 리프트가 다시 작동하면서 추락하여 청력저하, 타박상 등 전치 7주의 부상.

⑤ 고속터미널역 노판석 씨 리프트 추락사고

2001년 9월 16일 노판석(76, 1급 중증지체장애인) 씨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전동휠체어로 공익근무요원이 동행하여 리프트를 이용하던 도중 추락해 늑골 3대가 부러지고 왼쪽 팔이 다치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음.

⑥ 충무로역 류나연 씨 에스컬레이터 실족사고

2002년 4월 12일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려던 류나연(32, 여, 뇌병변 1급) 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올라가던 도중 맨 윗부분에서 브레이크를 미처 풀지 못해 걸려

쟁취를위한연대회의 (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주축으로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와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라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에게 금기처럼 여겨졌던 대중 교통수단을 정말 ‘대중’이 되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하철이 연착되고 버스의 이동 시간이 늦어지면서 비장애인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뒤따랐으며 심지어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사다리과 쇠사슬로 휠체어와 몸을 묶어 도로를 점거하고, 관공서와 각종 행사 등을 점거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많은 장애인, 비장애인 활동가가 연행되고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4년간의 지속적인 운동을 벌인 결과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월 28일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정말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III.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19조 1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통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넘어짐.

⑦ 동대문운동장역 이규식 씨 리프트 고장사고

2003년 5월 10일 이규식(33, 남, 1급 중증장애인)씨는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4호선과 5호선을 갈아타는 환승장 리프트를 타기 위해 리프트를 작동시키려고 했으나 열쇠뭉치가 통째로 빠지는 고장상태임을 발견하고 역무실에 연락, 공익요원 3인과 행인 1인의 도움을 받아 전동스쿠터가 통째로 들러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쿠터와 함께 계단으로 떨어져 부상.

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⁶⁾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운행 대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었다.⁷⁾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을 세워 2011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하달하였고 광주광역시도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1항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리하여 2007년 용역업체를 선정해(동호E&C)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 설문지의 문항이 너무 난해하고 설문 대상자 즉 표본집단이 특정되는 것과 같은 전수조사상의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만들어진 광주광역시 5개년 계획은 당연히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⁸⁾을 검토해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 의무사항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광주광역시 저상버스 도입계획>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
| 저상버스 | 22? | 10 | 10 | 10 | 10 | 248 | 288 |
| 사업비 (억원) | - | 18.5 | 18.5 | 18.5 | 18.5 | 458.8 | 532.8 |

6) 2008. 2. 29. 본문개정

7)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80대
2.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 50대
3.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8) 2008.2.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 참고.

<광주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1년이후 | 계 | 비고 |
|-------------|-------|-------|-------|-------|---------|--------|------|
| 도입대수 | 10 | 10 | 10 | 10 | 40대 | 80대 | - |
| 사업비 (억원) | 10.00 | 16.24 | 22.36 | 28.48 | 64.96 | 142.04 | 운영비용 |

위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상버스는 2012년이 되어야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총 운영 대수의 50%를 채울 수 있다.⁹⁾

광주시내버스는 1년에 대략 90여대 정도씩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은 교체대수의 10% 정도만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마지막 5년째에 총 운행 차량의 40%에 육박하는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 2009년 대중교통과 예산이 74,796,483천원이고 3년 후 증가분을 예상하여 8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57%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상버스 도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43%의 예산으로 나머지 광주시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법으로 정해진 특별교통수단도 2012년경에 40여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동약자를 위한 정책, 그것도 차량 도입에만 자그만치 75%에 해당하는 예산이 소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2012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09년 광주광역시 예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예산이 12억원이 책정되었고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이 1억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저상버스는 2009년 계획된 예산보다 6억5천만원이 감축되었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10대에서 본예산 4대, 추경예산 3대 총 7대로

9)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4조 (저상버스 도입)

-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14조 2항의 규정은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축소되었다. 더욱이 특별교통수단은 2008년 미 도입분인 2대까지 포함하여 12대가 도입되어야 함에도 절반밖에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의 발이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에도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얼마나 더 소극적일지 익히 예상 가능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침해하다 못해 상해의 원인이 되는 인도위의 볼라드, 휠체어가 이동하는 최소 폭조차 고려되지 않은 1m 남짓의 인도, 저상버스 슬라이드가 내려오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높은 인도턱, 단속이 잘 되지 않아 인도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불법 광고물과 임의로 쌓아놓은 짐들, 그리고 예약 한 건을 하기 위해서는 40분 이상을 전화에만 매달려야 하는 불편한 특별교통수단 예약 체계, 평평하지 않은 보도블럭과 점자유도판 위의 전신주까지, 광주 시내의 곳곳에는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 4항이 실현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시 당국은 이제라도 시에 거주하는 약 20만명의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률과, 시행령과, 조례에 정해진 것만이라도 지켜주었으면 한다.

공공기관 분야 지정 토론문

김 상 훈 (법무법인 빛고를 변호사)

1. 지정 토론의 방법과 범위

가. 장차법은 거칠게 말해서, 장애 차별을 위법하다고 선언하고, 그 위법성을 교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율이다. 또 장차법이 차별시정기구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차별을 조사, 인식, 판단하고 그 차별 시정을 권고함을 책무로 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장차법 시행의 역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사안, 권고 사안에 관한 결정례(그 자체 및 결정례의 변화)에 집약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관한 평가 및 향후 계획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¹⁾의 인권정보 → 주요결정례 → 상세검색을 차례로 클릭하면, 침해사건, 차별사건, 기타사건, 정책권고 등 사건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차별사건을 클릭하면 기관유형, 행위, 영역, 회의종류, 회의년도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① 장애를 검색 기준으로 한 모든 차별사건 결정례는 37건이 조회되고, ② 위 37건의 결정례 중 법인(사법인), 사인, 기타, 개인회사, 교육기관, 단체, 주식회사 등(법인)의 기관유형을 제외하면 20건의 결정례가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는 사용언어로 영어 호환이 가능하고, 음성켜기(끄기) 기능, 글자 크기에 관한 확대, 기본, 축소 기능이 있어, 영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인,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를 배울 수 있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인증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한 것은 위와 같은 배려 때문일 것이다.

남게 되며, ③ 장차법 시행으로 설립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검색기준으로만 입력하여 조회하면 12건의 결정례가 조회된다.

라. 본 토론문은 이 중 ②의 방법을 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일별해 보기로 한다. 위 ②의 방법이 공공기관 분야에 한정된 본 토론 범위에 부합하고(토론의 범위상 사인, 사기업 등이 제외됨은 마땅하고, 교육 분야는 별도의 토론자가 지정되어 있다), 장차법 시행 전과 후의 결정례를 모두 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마. 이와 같이 검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2008. 4.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장차법 규정 중 제4절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체계의 규율을 함께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영역에 관한 차별사건 결정례

가. 2008년 이전 결정례

- (1) 01진차1 결정은,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를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인정하였다.
- (2) 02진차35 결정은, 새마을호를 철도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을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애인 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은 재정적 여건 등 제반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 (3) 01진차45, 02진차58·103, 03진차7·47(병합) 결정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이 정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 기준과 별표 13의5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 등 핸들조작의 합격기준은 장애인인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침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위 규정을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보조장

- 치 사용 등에 의한 운동능력 보완가능성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4) 04진차115결정은, 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TV토론, 후보자연설 등의 내용을 청각장애선거인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청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동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5) 04진차207·363·367·382, 05진차7·54·234·279(병합) 결정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임용시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6) 05진차264 결정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보행약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볼라드를 설치한 점, 진정인의 집에서 전철역까지 보도 및 횡단차로에 유도블럭을 설치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 (7) 06진차4 결정은, 지하철역 중 화장실이 있는 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8) 06진차157 결정은, 경기도가 2006년 지방직 9급 시험에서 특수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뇌병변 장애인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필기능력 장애로 답안작성이 어려운 이들에게 확대시험지,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컴퓨터 사용 등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9) 06진차533 결정도 위 (8)항과 같은 취지 사안이다.
- (10) 06진차508 결정은, 휠체어로 이동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인천광역시지하철 신원수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타려다 휠체어와 함께 계단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다

친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과 함께 휠체어리프트 교체,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11) 06진차418 결정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관련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관련 학교가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련 학교장에게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12) 07진차681 결정은, 부산교통공사가 장애등급 5급 및 6급 해당자에게는 필기시험 만점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해당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5급 및 6급 장애인들에게만 필기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장애등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응시자 가산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2008년 이후 결정례

(1) 장애인등록 신청에 있어 외국인 차별[07진차359·07진차546·07진차919(병합)]

-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그 시정을 원한 진정 사안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등록 허용여부는 정책적 판단 사안인 바, 외국인에게 전반적인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기보다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도와 같이 사안별, 선별적으로 차별을 개선하는 실정이라는 답변에 대해,
- 장애인등록제도를 기본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및 수급권 적격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는 우리 법제상 장애인등록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장차법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주민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07진차834),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07진차838)

-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시가 없어 중증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카드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그 개선을 진정한 각 사안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점자표시를 위한 각 등록증의 물리적 공간 부족, 점자표시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에 대해,
-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복지신용카드)이 다른 신분증과 구별되기 어려운 결과, 타인의 도움을 받는 기회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08진차281)

- 정신지체 3급의 진정인이 재해안심보험의 보험기간 만료로 갱신을 원했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갱신을 거절당한 것의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서,
- 우정사업본부장이 재해안심보험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고, 진정인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에도 약물 복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장애 3급은 상법 제732조가 정한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우울증 환자의 사고발생률이 다른 보험계약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
-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장은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 심사와 판단의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에 대한 예단과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보험 가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732조는 불확정개념에 의한 차별로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까지 심신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 차별(07진차958)

- 진정인은 승진후보자 명부 2순위, 다면평가 1순위로서 종합순위 1순위였음에도, △△시장이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 승진임용에서 탈락하자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는 진정 사안에서,
- △△시장이 인사위원회의 전원합의에 의하여 최종 승진자가 의결되었을 뿐,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킨 바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 관련법령 및 인사운영계획 등에 의하면, 5급 승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방식이 이미 도입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히 장애를 가진 진정인을 차별하기 위하여 승진 임용 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5) 시각장애인용 음성 및 촉각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교통수단 이용 차별(08진차392)

- 버스정류장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촉각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7. 7부터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를 운영하여 버스 도착 정보를 문자화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음성 안내 기능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 우선 ① 광주광역시의 계획에 의하면, BIS추가설치 및 음성안내를 2007년에 200개소, 2009년 ~ 2011년까지 각 50개소 합계 350개소 설치 계획이 잡혀 있고, ② 버스는 열차와 같이 순차적으로 정해진 위치에 정차하지 않고 여러 노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정차하는 특성상, BIS의 음성안내 및 점자표시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버스에 승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IS 음성안내 및 점자표기 외에 운

행 중인 각 버스에 별도의 음성 안내 장치를 장착하여 정류장에 정차하는 해당 버스의 행선지 및 정차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

- 버스이용에 시각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관련 규정 및 미흡한 점

가. 장차법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 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나. 장차법 시행령

-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시설에서 계구(계구)를 사용하거나 고층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

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다. 형사소송법

-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

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라. 형사소송규칙

□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

□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27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76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③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

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

마. 장애인인 형사피해자에 관한 규정의 미흡

- (1) 장차법은 장애인이 사법서비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있다(장차법 제26조 제1, 2항).
- (2) 장차법은 더욱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청권자 혹은 수혜자일 경우(장차법 제26조 제3항), 단순 민원일 경우(장차법 제26조 제4항, 제5항)를 위한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 (3) 더 나아가 장차법은 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로서 인신구속·구금 등을 당할 경우 절차보장 규정(장차법 제26조 제7항), 재판 또는 수사절차에서 절차보장 규정(장차법 제28조 제6항)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장차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도 제정되어 있다(장차법 시행령 제17조).
- (4) 또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은 장애인이 피의자로서 수사 받을 경우(형소법 제244조의5), 피고인으로 재판 받을 경우(형소법 제276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를 대비한 절차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 (5)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신뢰관계 있는 자의 필요적 동석을 규정하고(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위 규정을 받아 형사소송규칙이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그런데 위 규정들은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인 피해자만을 염두한 규정이 아니다. 피해자인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인정되는 피해자(증인, 제163조의2 제1항)’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를 장애인으로 의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6) 그런데 형사피해자의 증언 여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부에 좌우되게 된다. 피고인이 형

사피해자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형사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5)에 적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증언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은, 결국 피고인의 의사에 좌우되게 된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장애인인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고, 그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의 필요적 동석 규정은 무의미해진다.

(7) 다음의 경우를 가정해 본다. 가해자(A)로부터 피해를 당한 청각장애인(甲)이 있다. 甲이 시각장애인이어도 상관없다. 다행히 A는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이 되었다. 甲으로서 법정에서 A가 어떤 죄목으로 재판 받고 있는지, A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며 사죄하는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A는 어떤 증거를 신청하면서 죄값을 피해가려 하는지 알고 싶다. 甲은 그 당연한 의문을 풀기 위해 A의 공판기일을 알아 내 법정에 출석해 본다. 과연 법정에서는 甲을 위한 편의제공(예컨대 수화, 자막 등)이 이루어질까. 만약 편의제공이 무시되거나 거부되었을 때, 진정을 통해 그 위법성을 확인 받을 수 있을까.

(8) 장애피해자인 甲을 위한 명시적인 편의제공 의무 규정은 장차법²⁾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私刑을 금지하고 公刑을 제도화하여 피해자는 검사가 대변한다는 공준에 입각한 형사법 체제에서 기인하는 문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애인이 행정절차의 민원인, 신청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장애인이 사법절차의 피의자, 피고인이 된 경우까지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면서, 형사피해자가 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인하거나, 소홀히 하는 규정 체계는 찬성하기 어렵다. 끝.

2) 물론 장차법 제26조 제1항, 제2항의 원칙적 차별금지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26조 제6항, 제7항, 위 규정에서 위임받은 장차법 시행령 제17조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부 산>

제 1 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 1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및
추진방향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추진방향

남 찬 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

2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추진방향

남 찬 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

I. 서론

올해 4월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달이다¹⁾.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0년 말부터 시작된 장애계의 법 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얻어진 것이지만 법 제정이나 시행령 마련, 그리고 그에 이은 시행과정이 순조로왔던 것만은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당초 장애계가 주장했던 것에 비해서는 권리구제 수단이 약화된 부분이 많으며 모법의 본문규정에서도 장애정의나 각종 차별영역에서 여러 가지 수정이 가해지면서 당초 안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약간씩 상충하는 조항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그냥 심의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이후에도 이 법을 아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는 모법 규정을 축소하려는 정부 각 부처의 시도와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장애계의 입장이 맞서기도 하였다²⁾.

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추적인 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둘 장애차별시정기구의 확대 신설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었는데, 법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 국내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잇단 반대와 우려에 불구하고 기어이 조직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권의 발전에 비추어서도 이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동년 4월 10일 공포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남찬섭 (2007) 및 강민희 (2008) 참조.

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릇 제도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 이를 가꾸어 나가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법이다. 제도는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쟁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일단 만들어진 다음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제도를 만들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쟁점들을 무수히 쏟아내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형성된 제도이며 동시에 사회적 모델이 말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자체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내부적 결함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함을 어떻게 평가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시각은 장애인들의 시각이다. 물론 장애인의 시각 역시 장애유형과 장애인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것을 통일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모델이므로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추출하여 이를 제도개선과 발전에 반영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련하여 사회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전은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염두에 두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장애인 현황과 차별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II. 부산·울산·경남지역 장애인의 현황 및 차별실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14만 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59%에 이르며, 이 중 재가장애인은 210만 1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6). 또한, 등록장애인 수치를 보면 2007년 말 현재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210만 5천명(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으로 같은 해 주민등록인구 총수 4,926만 9천명(통계청 KOSIS)의

4.3%에 이른다. 2005년 이후 장애인구는 증가했을 것이며 또한 등록장애인은 추정장애인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5% 이상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와 2007년도 등록장애인 수치를 항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 장애인의 현황과 차별실태 등에 대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개관한다. 지역별 비교에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도이며, 충청강원은 대전·충북·충남·강원도,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광주전라는 광주·전북·전남·제주도, 부울경은 부산·울산·경남을 말한다.

1. 부산울산경남지역 장애인의 현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재가장애인은 210만 1천명이었는데, 이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장애인구가 가장 많아서 41.9%에 이르고 충청강원지역의 장애인이 16.0%, 부울경 지역의 장애인이 15.9%에 달한다.

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이 6 대 4의 비율을 보이며 수도권의 경우 장애남성의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부울경 지역의 경우 전국평균에 비해 장애남성이 조금 더 많으나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장애인은 32.5%이고 50~64세 장애인이 29.9%로 50세 이상 장애인이 62.4%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표 1> 장애인구의 지역별·성별·연령별 현황 (2005년 기준)

| | 장애인구 | | 성별 구성(%) | | 연령별 구성(%) | | | | |
|------------|------------|-------------|-------------|-------------|------------|-------------|-------------|-------------|-------------|
| | 천명 | 지역별 비중(%) | 남자 | 여자 | 19세이하 | 20-39세 | 40-49세 | 50-64세 | 65세이상 |
| 전국 | 2,101 | 100.0 | 59.9 | 40.1 | 4.5 | 14.8 | 18.2 | 29.9 | 32.5 |
| 수도권 | 880 | 41.9 | 61.3 | 38.7 | 5.3 | 16.8 | 19.0 | 30.0 | 28.9 |
| 충청강원 | 335 | 16.0 | 58.7 | 41.3 | 4.4 | 14.0 | 16.9 | 27.1 | 37.6 |
| 대구경북 | 253 | 12.0 | 60.4 | 39.6 | 4.0 | 12.9 | 18.8 | 30.1 | 34.2 |
| 광주전라 | 299 | 14.2 | 57.0 | 43.0 | 4.1 | 13.2 | 16.0 | 30.2 | 36.4 |
| 부울경 | 334 | 15.9 | 59.5 | 40.5 | 3.5 | 13.4 | 19.2 | 32.0 | 31.8 |

주 : 재가장애인 기준임.

자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표 2> 지역별 장애인의 평균연령(2005년 기준)

| | 전국 | 수도권 | 충청강원 | 대구경북 | 광주전라 | 부울경 |
|------|------|------|------|------|------|-------------|
| 평균연령 | 54.3 | 52.8 | 55.7 | 55.4 | 55.7 | 55.0 |
| 표준편차 | 18.0 | 18.1 | 18.3 | 17.7 | 17.8 | 17.2 |

자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그런데 연령별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충청강원과 대구경북, 광주전라 지역과 수도권 및 부울경 지역은 서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충청강원과 대구경북, 광주전라 지역은 65세 이상의 노령장애인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은 노령장애인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부울경 지역은 노령장애인의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반면 50~64세 장애인의 비중이 32.0%로 위에서 구분한 5대 권역 중 가장 높으며, 40대 장애인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부울경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19세 이하 장애인과 20대 및 30대 장애인의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부울경 지역은 40~50대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아동·청년층과 노령층 장애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평균연령을 보면 전국평균은 54.3세인데 수도권만 평균보다 낮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보다 높다. 부울경 지역도 장애인의 평균연령이 55.0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울경 지역 장애인이 노령장애인은 타 지역보다 많지 않지만 50~64세 장애인의 비중이 높고 30대 이하 장애인의 비중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구 현황을 등록장애인 수치로 보는 경우에도 추정장애인 수치로 보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5대 권역별 등록장애인의 비중은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지역별 비중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등록장애인의 현황을 제시한 <표 3>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의 비중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장애출현율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의 비중(이하 “법정장애인 비중”)은 4.3%이며, 부울경 지역 중 부산의 법정장애인 비중은 4.1%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7개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울산은 법정장애인 비중이 3.7%로 7개 대도시 중 서울(3.4%)을 제외하면 수치가 가장 낮다. 경남은 법정장애인 비중이 4.8%로 도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3.7%)와 제주도(4.7%)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그리하여 부울경 지역의 법정장애인 비중은 전체적으로 전국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지역별 등록장애인 현황 (1999년 말, 2003년 말, 2007년 말 기준)

| | 1999년 (천명) | 2003년 (천명) | 2007년 (천명) | 2007년 | | 연평균 증가율 (’99~’07년)(%) | |
|----------|---------------|---------------|---------------|---------------|-----------------|--------------------------|------|
| | | | | 지역별 비중 (%) | 법정장애인 비중 (%) | | |
| 전국 | 697 | 1,454 | 2,105 | 100.0 | 4.3 | 14.8 | |
| 수도권 | 소계 | 277 | 591 | 862 | 41.0 | 3.6 | 15.3 |
| | 서울 | 117 | 240 | 346 | 16.5 | 3.4 | 14.6 |
| | 인천 | 40 | 78 | 109 | 5.2 | 4.1 | 13.3 |
| | 경기 | 120 | 273 | 407 | 19.3 | 3.7 | 16.5 |
| 충청 강원 | 소계 | 117 | 232 | 333 | 15.8 | 5.1 | 14.0 |
| | 대전 | 20 | 41 | 60 | 2.8 | 4.1 | 14.9 |
| | 충북 | 26 | 54 | 80 | 3.8 | 5.3 | 15.0 |
| | 충남 | 38 | 75 | 108 | 5.1 | 5.4 | 13.8 |
| | 강원 | 32 | 61 | 86 | 4.1 | 5.7 | 12.9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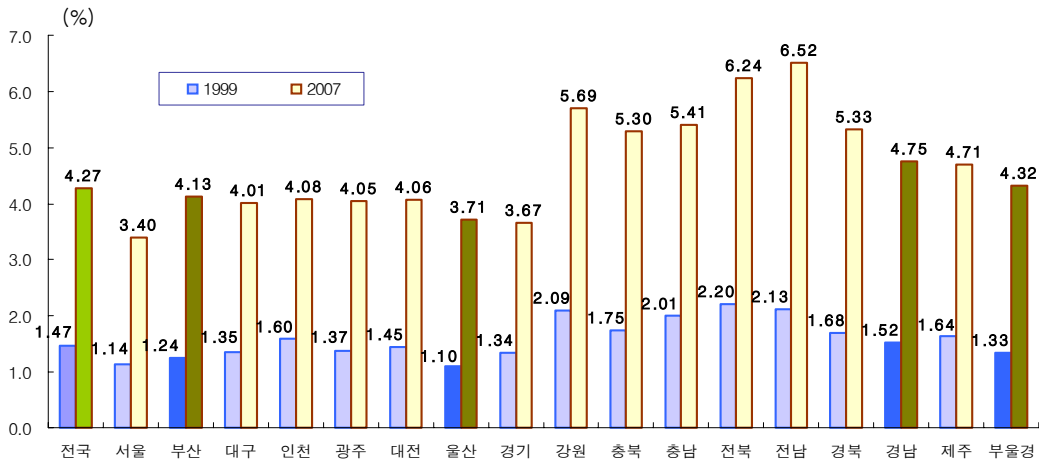
| | | 1999년 (천명) | 2003년 (천명) | (천명) | 2007년 | | 연평균 증가율 ('99~'07년)(%) |
|----------|----|---------------|---------------|------------|---------------|-----------------|--------------------------|
| | | | | | 지역별 비중 (%) | 법정장애인 비중 (%) | |
| 대구 경북 | 소계 | 81 | 169 | 243 | 11.5 | 4.7 | 14.7 |
| | 대구 | 34 | 71 | 100 | 4.8 | 4.0 | 14.5 |
| | 경북 | 47 | 98 | 143 | 6.8 | 5.3 | 14.8 |
| 광주 전라 | 소계 | 117 | 231 | 325 | 15.5 | 5.7 | 13.6 |
| | 광주 | 19 | 39 | 57 | 2.7 | 4.1 | 15.1 |
| | 전북 | 44 | 84 | 116 | 5.5 | 6.2 | 12.8 |
| | 전남 | 46 | 90 | 126 | 6.0 | 6.5 | 13.5 |
| | 제주 | 9 | 18 | 26 | 1.3 | 4.7 | 14.7 |
| 부울경 | 소계 | 105 | 231 | 341 | 16.2 | 4.3 | 15.8 |
| | 부산 | 47 | 102 | 148 | 7.0 | 4.1 | 15.4 |
| | 울산 | 11 | 27 | 41 | 1.9 | 3.7 | 17.5 |
| | 경남 | 47 | 103 | 151 | 7.2 | 4.8 | 15.9 |

주 : 법정장애인 비중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의 비중을 말하며, 통계청 KOSIS에 제시된 주민등록인구자료(외국인 제외)를 기준으로 필자가 계산한 값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하지만 부울경 지역의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대단히 높다. 부울경 지역 등록장애인은 1999년만 해도 10만 5천명이었으나 2003년에 23만 1천명으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34만 1천명으로 증가하여 1999~2007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5.8%에 달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14.8%보다 1%p나 더 높은 수치이며 5대 권역별 연평균 증가율로 최고수준이다. 특히 울산의 등록장애인 연평균 증가율은 17.5%로 7개 대도시 중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최고수준이다. 부산의 등록장애인 연평균 증가율 15.4% 역시 7개 대도시 중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빠른 속도이다. 경남의 등록장애인 증가속도도 경기도를 제외하면 도 지역 중에서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그리하여 부울경 지역의 법정장애인 비중은 1999년만 해도 1.3%였으나(같은 해 전국 1.5%) 2007년에는 4.3%(같은 해 전국 4.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 지역별 법정장애인 비중의 추이 (1999년과 2007년)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장애인 역시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인구노령화도 그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권리의식 증가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고 장애범주의 확대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지역의 등록장애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장애인 중 노령장애인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노령화가 부울경 지역 장애인구 증가의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컸으리라고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부울경 지역의 장애인구 증가에는 인구노령화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을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의 증가나 장애정책의 변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건대 부울경 지역의 경우 장애인구 증가원인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각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울산과 경남은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도 그 한 배경이며 또한 울산과 경남의 인구증가는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거나 공업지역이 제법 많다는 점도 그 한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부울경 지역의 장애인구 증가원인으로 인구노령화 외에 후천적 원인, 즉 산재 등의 사고에 의한 장애발생이 증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재 이외의 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건수나 그로 인한 장애인 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추론의 일단으로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보면 2007년의 경우 재해율이 전국 평균 0.72%이었던데 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0.89%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노동부, 2008). 부울경 지역 장애인구의 빠른 증가에는 이런 높은 산재발생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부산·울산·경남지역 장애인의 차별실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생활영역을 10가지로 구분했지만 이를 다시 구분하면 크게 ① 교육(입학·전학 및 학교생활), ② 고용(취업 및 직장생활),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지역사회생활, 보험계약, 운전면허, 정보통신이용), ④ 모·부성권(결혼), ⑤ 건강권(의료기관이용)의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주요 차별영역에서의 차별경험 (2005년 기준)

| | | | 전국 평균 (%) | 부울경 지역 (%) |
|------|----------------------|-----------------|-----------|-------------------|
| 교육차별 | ① 입학·전학 ² | 유치원 | 23.0 | 27.9 ¹ |
| | | 초등학교 | 33.8 | 28.3 |
| | | 중학교 | 27.0 | 22.9 |
| | | 고등학교 | 21.5 | 14.0 |
| | | 대학교 | 11.2 | 9.2 |
| | ② 학교생활 | 소계 ³ | 48.2 | 46.5 |
| | | 교사로부터의 차별 | 17.5 | 14.2 |
| | |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 | 46.2 | 46.5 |
| | |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 12.3 | 8.5 |

(계속)

| | | 전국 평균 (%) | 부울경 지역 (%) | |
|-----------------------|-----------------------------------|------------|------------|------|
| 고용차별 | 계 ³ | 42.9 | 48.2 | |
| | ③취업 | 39.1 | 41.4 | |
| | ④직장생활 | 임금차별 | 23.7 | 25.1 |
| | | 동료관계에서의 차별 | 18.9 | 16.9 |
| 승진차별 | | 16.5 | 17.4 | |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⑤지역사회생활(음식점·극장·공연장·체육 시설 등 이용) | 5.4 | 4.3 | |
| | ⑥보험계약 | 39.8 | 47.6 | |
| | ⑦운전면허취득 | 14.3 | 21.5 | |
| | ⑧정보통신이용 | 1.1 | 0.7 | |
| 모·부성권 | ⑨결혼 | 29.6 | 36.0 | |
| 건강권 | ⑩의료기관이용 | 4.2 | 3.9 | |

주 1. 음영표시된 부분은 부울경 지역의 수치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함.

2. 원문자 번호는 2005년 실태조사시 분류된 항목임.

3.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소계 또는 계라는 항목이 없음. 이에 해당하는 수치는 필자가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재계산한 값임.

자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2005년 실태조사에서 질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개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질문항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영역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대체로 다섯 가지 차별영역으로 질문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구분에 따른 차별경험의 응답결과를 <표 4>에 전국평균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수치 두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표 4>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장애차별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교육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가운데 지역사회생활(음식점·극장·공연장·체육시설 이용 등)과 정보통신이용에서도 차별경험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권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용에서도 비교적 차별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고용영역에서는 차별경험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로 나타나며 또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가운데 보험계약과 운전면허취득에서는 차별경험이 매우 높고 모·부성권과 관련하여 결혼시의 차별경험도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차별경험의 지역별 자세한 수치는 부록의 표 참조).

위에서 한 것과 같은 차별경험에 관한 지역별 비교에는 자료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³⁾.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장애차별경험이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낮고 고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히 고용과 보험계약, 운전면허취득, 결혼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차별현실에 대한 제3자적 인식은 위에서 본 차별경험의 응답과 약간 차이가 있다. 차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장애인들은 타 지역에 비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3자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차별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도 장애차별이 있다는 응답 자체는 85.8%로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전국평균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그 수치가 낮게 나온다(<표 5> 참조).

<표 5>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 (2005년 기준)

| | 장애로 인해 본인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차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 | | 우리나라에서 장애차별은 어느 정도인가 (제3자적 입장에서의 차별인식) | | | |
|------------|---------------------------------------------|-------------|-------------|-------------|-------------------------------------------|-------------|-------------|------------|
| | 항상 느낌 | 가끔 느낌 | 별로 안 느낌 | 전혀 안 느낌 | 매우 많음 | 많음 | 별로 없음 | 전혀 없음 |
| 전국 | 9.6 | 26.1 | 35.1 | 29.2 | 35.3 | 51.4 | 12.9 | 0.4 |
| 수도권 | 8.5 | 26.5 | 35.7 | 29.4 | 36.7 | 51.4 | 11.8 | 0.1 |
| 충청강원 | 7.7 | 29.2 | 36.0 | 27.1 | 32.9 | 48.5 | 17.1 | 1.5 |
| 대구경북 | 11.5 | 22.2 | 40.2 | 26.1 | 26.1 | 60.3 | 13.4 | 0.3 |
| 광주전라 | 13.3 | 25.8 | 31.4 | 29.5 | 41.8 | 48.2 | 9.6 | 0.4 |
| 부울경 | 9.5 | 25.3 | 32.4 | 32.8 | 35.2 | 50.6 | 14.1 | 0.1 |

자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3) 현재 본문에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차별실태를 지역별로 비교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차별과 같은 경우 실제로는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해당 응답자의 외출빈도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외출빈도를 고려할 경우 응답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별 비교가 어려워지는 것도 그 한 원인이다. 이것은 정보통신이용이나 의료기관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차별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2005년 실태조사 자료로는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장애차별이 위와 같이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별영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또 전반적으로 차별경험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적 차별인식이나 제3자적 입장에서의 차별진단에서는 전국평균보다 높지 않은 응답이 나오는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차별경험에 대한 응답수치를 중심으로 몇 가지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육차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수치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왔지만 유치원 입학·전학시의 차별이나 학교생활에서 또래학생에 의한 차별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공단이 많으므로 고용차별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일정하게 수궁이 갈 수 있는 대목이므로 입직 및 근로조건(임금, 승진 등)과 관련하여 차별실태에 대한 감독강화와 사업장 교육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과 운전면허취득에 있어서의 차별은 그간 많이 개선된 바도 있지만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차별경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으므로 이에 관련된 차별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운전면허취득시의 차별경험에 관련된 응답은 그것이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에 국한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운전면허 취득에 관련된 제반 과정에 모두 관련된 응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차별경험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항목이 바로 결혼과 관련된 차별경험으로 전국평균이 29.6%인데 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36.0%로 전국평균보다 6%p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결혼관련 차별경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대구경북지역의 33.6%나 광주전라지역의 34.6%에 비해서도(부록의 <표 4> 참조) 높은 수치이다. 현재로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키는 어렵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이 글에서 시도한 지역별 차별실태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지역 장애차별의 실태를 차별발생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차별가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또 어떤 경우에 차별이라고 주로 인식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Ⅲ.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방자치단체만을 특정하여 어떤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항상 함께 언급되어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괄되어 언급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도 포함되고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하에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1. 법 준수자로서의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를 말하는 데(법 제3조 제4호), 여기서 공공단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과 초·중·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시행령 제3조)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속하며 또한 초·중·고등학교 등 및 지방공기업이 공공기관에 속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교육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사항도 포괄한다고 하겠다.

<표 6>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 | | 부울경 지역 |
|----------|-----------------------|----------------------------------------------------------------------------------------------------------------------------------------------------------------------------------------------------------------------------------------------------------------------------------------------------------------------------------------------------------------------------------------------|
| 국가 | | |
| 지방자치단체 | | |
| 공공 단체 |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 | 관광공사, 전력공사, 도로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
| | 교육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 그 외 각급학교¹ |
|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5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임명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정부와 ①,②,③의 어느 한 기관이 합하여 5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임명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①,②,③,④의 어느 한 기관이 단독 또는 합하여 5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임명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①,②,③,④의 어느 한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
|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부산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경륜공단, 부산도시공사 |

주 1 : 그 외 각급학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다른 모든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차별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외에 직접차별의 연장

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과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차별,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법 제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차별행위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의 금지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법 제32조).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법 제8조 제1항).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8조 제2항). 그리고 이 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본문의 각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차별해소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표 7> 금지대상 차별행위의 종류

| 차별행위 | 내용 |
|----------------------|----------------------------------------------------------------------------------------------------------------------------------------------------------------------------------------|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
|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2호) |
| 정당한 편의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법 제4조 제2항) |
|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함) (법 제4조 제1항 제4호) |
|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차별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됨) (법 제4조 제1항 제5호) |
|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따라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① 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② 장애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 ③ 장애차별의 방지와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2. 차별영역별 공공기관 관련 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의무는 각 차별영역에 모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을 ① 고용, ② 교육,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 모·부성권 등, ⑥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이 외에 대상집단을 기준으로 ⑦ 장애여성, ⑧ 장애아동, ⑨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들 차별영역 중 ④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사법·행정·참정권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 외에 그 스스로가 고용주체이자 사업장이기도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이기도 하고, 시설물이기도 하며, 각종 정보의 생산·가공·보유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기관 중에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기관도 있고, 이동·교통수단의 제공에 관련된 기관도 있고, 문화·예술활동이나 체육활동에 관련된 기관도 있다.

<표 8> 차별영역별 공공기관 관련 내용

| 차별영역 | | 차별금지 관련 | 적극적 조치 등 관련 |
|-----------------|---------------|----------------------|---------------------------------------------------------------------------------------------------------------------------------------------------------------------------|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 행정절차·서비스, 참정권 | 직·간접차별 금지 행정관련 편의 | |
| | 모·부성권/성 | 직·간접차별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정보·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보조기기·도구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 모·부성권 관련 홍보·교육·지원 • 성적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및 홍보·교육·지원 |
| | 건강권 | 직·간접차별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련 교육시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한 교육내용 포함(교육기관 및 사업장) • 장애발생 예방·치료를 위한 시책 강구 및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 시책 강구 |

(계속)

| 차별영역 | | 차별금지 관련 | 적극적 조치 등 관련 |
|-----------------|------------------|----------------------------------------------------|-------------------------------------------------------------------------------------------------|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 괴롭힘 등 | 직·간접차별 금지 | • 괴롭힘 등의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과 필요한 시책 강구 |
| | 장애여성 | 직·간접차별 금지 (장애여성의 참여 기회 제한·배제 금지) | • 성폭력예방교육시 장애여성에 관한 교육내용 포함 • 장애여성 차별금지를 위한 인식개선·지원책 등 적극적 조치 강구,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서 장애여성 고려 |
| | 장애아동 | 직·간접차별 금지 | • 장애아동의 권리·자유를 위한 시책 강구 •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의 친권자·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 |
| | 지적장애인 | 직·간접차별 금지 | •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 고용 | | 직·간접차별 금지 고용관련 편의 | • 건강관련 교육시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한 교육내용 포함(사업장으로서의 공공기관) |
| 교육 (교육기관) | | 직·간접차별 금지 (학업시수위반 금지) 교육관련 편의 (장애학생지원 부서) | • 학업시수 위반 금지(국가·지방자치단체) • 장애학생지원부서 등 설치·운영(교육기관) • 건강관련 교육시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한 교육내용 포함(교육기관) |
| 토지·건물 | | 직·간접차별 금지 | |
| 시설물 | | 직·간접차별 금지 시설관련 편의 | |
| 이동·교통 | 이동·교통수단 (교통행정기관) | 직·간접차별 금지 이동편의 | • 교통사업자에 대한 홍보·교육·지원·감독(교통 행정기관) |
| | 운전면허시험 (국가·지자체) | 직·간접차별 금지 운전면허관련 편의 | |
| 정보 | 정보접근·이용 (공공기관) | 직·간접차별 금지 정보관련 편의 | •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지원 • 장애인의 수화·구화·점자·큰문자 습득 및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치 강구 |
| | 주최행사 (공공기관) | 행사관련 편의 | |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
| 문화·예술활동 | | 직·간접차별 금지 문화·예술관련 편의 | •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 강구 |
| 체육활동 | | 직·간접차별 금지 체육관련 편의 | •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 강구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행정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이나 장애아동,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모·부성권이나 성, 건강권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영역과 관련하여 각 차별영역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차별영역별로 공공기관에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은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차별영역에서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동시에 각 차별영역에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이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각 차별영역에서 법에 특별히 적극적 조치 또는 정책적 노력을 규정한 경우 그 내용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의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고 또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기도 하고 시설물이기도 하고 정보관련행위자이기도 하며, 이는 비단 공공기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민간기업체도 사업경영이라는 본연의 업무도 수행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사업장이자 시설물이며 정보관련행위자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자라도 그 행위자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제반 역할과 각기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다양한 역할과 관련하여 차별금지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그것들이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고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각 차별영역에 관련하여 부여된 차별금지의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둘째의 사항은 특히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해서 중요하므로 아래에서는 정당한 편의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본다.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글의 주요 관심대상인 공공기관을 예로 들면,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시설물이기도 한데 시설물로서 제

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면 이는 사업장으로서의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일부도 충족하게 된다. 이는 정보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예컨대 교육기관이 생산·가공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관련 정당한 편의의 제공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는 주로 시설물관련 정당한 편의와 다른 차별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가 어떻게 중복적인지 또는 상호보완적인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시설물관련 정당한 편의는 다른 대부분의 차별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와 상호보완관계에 있고 또 일부 차별영역에 대해서는 중복적이다. 이처럼 정당한 편의가 상호보완적이거나 중복적인 경우 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다른 여러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특히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비용소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위에서 본 것처럼 정당한 편의는 각 차별영역에 걸쳐 상호보완적이거나 중복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비용우려”보다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도 더 높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수립에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계획수립과 실행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표 9> 시설물 접근·이용에서 정당한 편의의 다른 영역과의 관련성

| | |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의 종류 | | | | | 관련 차별영역 |
|---------------|------------------|-----------------|-------|-------|-------|-------|-------------------------|
| | | 매개 시설 | 내부 시설 | 위생 시설 | 안내 시설 | 기타 시설 | |
| 근린생활 시설 | 소매점·미장원·목욕탕 등 | ○ | ○ | ○ | ○ | ○ | 재화·용역(제15조) |
| | 음식점·제과점 등 | ○ | ○ | ○ | ○ | ○ | |
| | 동사무소·파출소·공공도서관 등 | ○ | ○ | ○ | ○ | ○ | 행정절차·서비스 |
| | 의원·한의원 등 | ○ | ○ | ○ | ○ | ○ | 건강권 |
| 판매시설 | 도소매시장·상점 등 | ○ | ○ | ○ | ○ | ○ | 재화·용역(제15조) |
| 문화·집회시설 | 공연장·전시장 등 | ◎ | ◎ | ◎ | ◎ | ◎ | 문화·예술활동 |
| 종교시설 | 교회·성당·사찰 등 | ○ | ○ | ○ | ○ | ○ | |
| 의료시설 | 병원·장례식장 등 | ○ | ○ | ○ | ○ | ○ | 건강권 |
| 교육연구 시설 | 학교·직업훈련원·학원 등 | ◎ | ◎ | ◎ | ◎ | ◎ | 교육 |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 ○ | ○ | ○ | ○ | ○ | 복지시설 |
| 수련시설 | |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 | 체육활동 |
| 업무시설 | 정부청사 | ○ | ○ | ○ | ○ | ○ | 행정절차·서비스 |
| | 금융업소·신문사·사무소 등 | ○ | ○ | ○ | ○ | ○ | 재화·용역(제15조) 금융상품·서비스 |
| 숙박시설 | | ○ | ○ | ○ | ○ | ○ | 재화·용역(제15조) |
| 공장 | | ◎ | ◎ | ◎ | ◎ | ◎ | 고용 |
| 자동차관련 시설 | 주차장 | ○ | ○ | ○ | ○ | ○ | 이동·교통수단 |
| | 운전학원 | ○ | ○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 ○ | ○ | ○ | 정보접근 |
| 교정시설 | | ○ | ○ | ○ | ○ | ○ | 행정절차·서비스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 | 재화·용역(제15조) |
| 관광휴게 시설 | 야외음악당·어린이회관 등 | ◎ | ◎ | ◎ | ◎ | ◎ | 문화·예술활동 |
| | 휴게소 | ○ | ○ | ○ | ○ | ○ | 재화·용역(제15조)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 ○ | ○ | ○ | ○ | 토지·건물 |
| | 기숙사 | ○ | ○ | ○ | ○ | ○ | 교육, 고용 |

주 1. ◎ 중복, ○ 보완

- 매개시설: 주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내부시설: 건물내 출입구, 계단, 복도 등; 위생 시설: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등
- 위 시설물들은 고용의 장으로서 사실상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와 모두 중복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음.
- 대상시설과 이 대상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세부내용은 부록 3 참조.

또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단일 영역 내에서도 그 정당한 편의의 성격을 일정하게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이하 “정보관련편의”)는 그 정당한 편의가 의사소통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0>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구분

| | | 소통수단의 형식 | |
|------------------|---------------|------------------------------|---------------------------------------------------------------------|
| | | 대체전자정보 | 대체비전자정보 |
| 소통에 관련된 기능 | 대체 정보 매개수단 |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점자정보단말기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확대경, 개인형 보청기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
| | 대체자료 | 표준텍스트파일 | 점자자료, 큰 활자 확대문서, 녹음테이프, 자막, 수화통역 |

주 1.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는 대체정보매개수단이며 동시에 대체자료이기도 함.

정보관련편의는 그 편의가 의사소통에 기능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하는 점과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의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소통에 기능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정보관련편의를 구분하면 그것은,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사소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접할 수 있는 최종형태로 제공하는 것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화통역사나 음성통역사는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정보관련편의라 할 수 있으며, 점자자료는 시각장애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는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최종형태로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수단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정보관련편의를 구분하게 되면 그것은 전자정보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과 비전자정보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한 구분을 조합하면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정보관련편의에 대해 각 범주에 있어서 현재의 제공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예상소요비용 등을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범주의 정보관련편의 중 수화통역

사 등은 전달체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제공계획을 세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즉, 개별기관에 대해 수화통역사의 배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수화통역사를 공급할 수 있는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연락망을 구축하여 수화통역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점기관의 지정은 특히 교육에서 장애학생지원부서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교육 관련 정당한 편의의 제공 등 업무를 위해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는 장애아동담당자를, 초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평생교육시설이나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등에는 장애학생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

하지만 현재 규정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배치방법은 교육기관의 규모나 성격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지원법에도 장애학생지원부서와 유사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규정되어 있고,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장애학생지원부서는 교육관련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주 업무로 수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배치방법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장애학생지원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본다.

<표 11> 장애학생지원부서 등 설치방법(안)

| 구 분 | | 설치방법 |
|--------------------|-----------------------------------------------------------------------------------------------------------------------------------------------------------------------------------|----------------------|
| 대규모 및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특수교육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립특수교육기관 • 일정규모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복지학과 등이 설치된 곳 • 교원연수기관 및 공무원연수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 장애학생지원기관 (거점기관) |
| 중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규모의 초중등교육기관, • 중규모의 고등교육기관 • 중규모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 중규모의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영재학교·영재교육원, 한국학교 |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
| 소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 | 담당자 배치 또는 거점부서로부터 지원 |

거점부서를 둔다는 것은,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에는 장애학생지원거점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중규모의 교육기관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게 하며, 그 외의 교육기관은 장애학생담당자를 둘 수도 있고 장애학생지원거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교육책임자로 하여금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정책적 협의 여하에 따라서는 기존에 이미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지원거점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원연수기관이나 공무원연수기관은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장애학생지원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런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등에 거점기관의 설치를 위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2009년 4월이 되면서 공공기관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표 12>에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정당한 편의가 차별영역별로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정당한 편의(표의 용어로는 목적사업관련 편의)와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 정보관련 정당한 편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에서 수자로 표시된 것 중 094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공공기관은 모든 차별영역에서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공공기관이 2009년 4월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치 않을 경우 이는 차별로 진정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편 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각 차별영역별로 정당한 편 의의 성격을 기술적으로 구분한다든지 또는 개별 차별영역 내에서 정당한 편 의 제공의 구체적인 계획을 특히 전달체계와 연관지어 계획하는 등 연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정당한 편 의 제공자의 단계적 시행

| 목적사업 | 행위자 | 정당한 편 의 제공 의무의 적용 | | |
|---------------|---------------|--------------------------------------------|--------------------------------------------------|-------------------------------------------------------------------|
| | | 목적사업관련 정당한 편 의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 의(094) (시설물 소유·관리자 (대상시설)) | 정보 관련 정당한 편 의 (정보관련행위자) ¹ |
| 고용 직장보육 | 사업장 및 사용자 | ○(094, 114, 134) ² ○(094) | ○(공장)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사업장 및 사용자)(094, 114, 134) |
| 노조활동 | 노동조합 및 관계자 | - | | ○(노동조합 및 관계자)(094, 114, 134) |
| 교육 | 교육기관 및 책임자 | ○(094, 114, 134) | ○(교육연구시설) | ○(교육기관 및 책임자)(094, 114, 134) |
| 재화·용역 의 제공 | 재화·용역 제공자 | - | ○(공원) | ○(시설물 소유·관리자)(094) ³ ○(정보관련법인)(134) ⁴ |
| | | | ○(근린생활시설) | |
| | | | ○(문화·집회시설) | |
| | | | ○(종교시설) | |
| | | | ○(판매시설) | |
| | | | ○(일반업무시설)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숙박시설) | |
| 방송 | 방송사업자 | ○(084) | ○(수련시설) | |
| | | | ○(모지관련시설) | |
| 이동· 교통수단 | 교통사업자 | ○(084) | ○(공동주택) | ○(이동·교통수단 및 관계자)(094) ○(공공기관 및 관계자)(094) |
| | 교통행정기관 | | - | |

(계속)

| 목적사업 | 행위자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적용 | | |
|--------------|---------------|---------------------|-------------------------------------------------|---------------------------------------------|
| | | 목적사업관련 정당한 편의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094) (시설물 소유·관리자 (대상시설)) | 정보 관련 정당한 편의 (정보관련행위자) ¹ |
| 운전면허 | 운전면허학원 등 | - | | - |
| | 국가·지방자치 단체 | ○(084)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기관 및 관계자)(094) |
| 문화·예술 | 문화·예술사업 자 | ○(104, 124, 154) | ○(문화시설) | ○(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예술법인) (104, 124, 154) |
| | 국가·지방자치 단체 | ○(104) | | ○(공공기관 및 관계자)(094) |
| 체육 | 체육관련기관 | - | | ○(체육관련법인)(104, 124, 154) |
| | 국가·지방자치 단체 | ○(104, 124, 154) | ○(운동시설) | ○(체육관련행위자)(134) ○(공공기관 및 관계자)(094) |
| 행정절차· 서비스 | 국가·지방자치 단체 | ○(084) | ○(업무시설) | ○(공공기관 및 관계자)(094) |
| | 그 외 공공기관 | ○(084) | ○(근린생활시설 제1종의 일부) | |
| 사법 서비스 | 사법기관 | ○(084) | ○(교정시설) | |
| 참정권 | 국가·지방자치 단체 | ○(084) | ○(업무시설) | |
| 복지 서비스 | 복지시설 등 | - | ○(노유자시설의 일부) | ○(복지시설 및 관계자)(094) |
| 의료 서비스 | 의료기관 | - | ○(의료시설) | ○(의료기관)(094, 114, 134) |
| | 의료인 | - | | ○(의료인)(134) |

주 1. 정보관련행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자 등을 말함(자연인은 제외됨).

2. 084년 2008년 4월 적용, 094년 2009년 4월 적용, 104는 2010년 4월 적용, 114는 2011년 4월 적용, 124는 2012년 4월 적용, 134는 2013년 4월 적용, 154는 2015년 4월 적용을 의미함.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는 모두 2009년 4월부터 적용됨(단,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3. 정보관련 편의에서 시설물 소유·관리자는 정보관련 나머지 행위자를 제외하고 재화·용역에 관련된 행위자들만을 지칭함.
4. 정보관련법인은 정보관련행위자 중 교육·문화·예술·체육관련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함.

특히 전달체계의 구축과 연관지어 정당한 편의의 제공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적극적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조치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행위의 예외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차별의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장애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⁴⁾. 특히 앞에서 본 부울경 지역의 차별실태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차별의 정도가 전국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입학 및 전학에서의 차별과 또래학생에 의한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은 전국평균보다 높았고 또 결혼에서의 차별이 상당히 높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차별 예방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V.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울경 지역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6% 정도이며, 법정장애인 비중은 부산은 대도시 중 가장 높으나 울산과 경남은 낮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아동청년층 및 노령층 보다는 40~50대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2) 부울경 지역 장애인구 규모는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울산의 장애인구 증가속도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 (3) 부울경 지역의 장애차별은 교육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차별과 보험계약, 운전면허취득, 결혼 등에서는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영역에서도 유치원 입학·전학 및 또래학생에 의한 차별은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장애차별에 대한 주관적 입장에서의 인식이나 제3자적 입장에서의 인식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지 않았다.

4)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2008년 10월 목포시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료 중 특히 김광이 (2008) 참조.

- (4)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①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와 함께 ② 장애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 ③ 장애차별 예방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의무를 지며, 이 의무는 법에 규정된 차별영역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2009년 4월부터 정당한 편의 제공이 모든 차별영역에서 의무화하였다. 정당한 편의는 각 차별영역마다 별개로 해야 한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중복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감안한 합리적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또한, 개별 차별영역 내에서도 정당한 편의의 성격을 감안한 구분과 또 전달체계의 구축과 연동된 계획수립도 고려할 수 있다.

본문의 논의에서 대체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위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른 많은 논의에서도 제시된 바이지만 시민들에 대한 장애인식 교육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방송매체나 언론매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이나 보도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 또는 “너무나 측은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이미지를 너무나 자주 사용해 왔다. 이 두 가지 이미지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로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또한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은 그가 가진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의해 일정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 외에 사회적 차별이 그에게 더욱 커다란 어려움을 주었으며 “역경을 극복”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회적 차별로 인한 온갖 불리함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너무나 측은한 장애인” 역시 개인이 가진 어려움보다도 사회적 차별의 누적에 의해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장애인이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차별현실에는 눈을 감고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을 하릴없이 칭송하거나 “너무나 측은한 장애인”을 동정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수많은 역경을 혼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무

원들과 근무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은 또래학생에 의한 것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부울경 지역의 경우는 그 수치가 전국평균보다 약간 더 높으므로 학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학교에서의 장애인식 개선은 성인이 된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구조적인 차별을 감소시킨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부울경 지역의 경우 보험계약과 운전면허, 결혼 관련 차별이 전국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원인에 대한 파악과 함께 시민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부울경 지역의 경우 특히 고용차별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는 공업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견 수긍할 수 있는 점이라 생각되므로 고용차별을 해소하는데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차별에서는 동료관계에서의 차별은 낮은 반면, 취업차별과 임금차별, 승진차별이 높게 나왔으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부울경 지역의 장애차별실태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부울경 지역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있어 지역구분의 자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생활권으로 구분한다면 부울경을 하나의 지역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본문에서 시도한 것과 같은 예를 참조하여 타 지역과 비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최근 장애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차별실태의 분석은 이러한 점과도 연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차별영역에 관련된 정당한 편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성격을 구분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의 범주 구분은 행정적 지도감독을 위해서도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수립에는 정당한 편의가 여러 차별영역에 걸쳐 기능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당

한 편의에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 내용은 전달체계의 구축과 연관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희.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 시행령 제정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209-235.
- 김광이.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 설명회 및 지자체 정책변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pp. 23~29.
- 남찬섭.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 5-53.
- 노동부. 2008. 『200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노동부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통계청 KOSIS.

■ 부 록

<표 1> 학교 입학 및 전학에서의 차별경험 (2005년 기준)

| | 유치원(%) (n=136천명) | 초등학교(%) (n=415천명) | 중학교(%) (n=315천명) | 고등학교(%) (n=248천명) | 대학교(%) (n=105천명) |
|------------|---------------------|----------------------|---------------------|----------------------|---------------------|
| 전국 | 23.0 | 33.8 | 27.0 | 21.5 | 11.2 |
| 수도권 | 19.9 | 35.1 | 26.1 | 22.2 | 11.0 |
| 충청강원 | 28.7 | 29.6 | 29.7 | 22.4 | 12.1 |
| 대구경북 | 26.3 | 34.9 | 27.1 | 26.3 | 7.8 |
| 광주전라 | 24.8 | 38.3 | 32.7 | 23.6 | 15.1 |
| 부울경 | 27.9 | 28.3 | 22.9 | 14.0 | 9.2 |

<표 2> 학교생활에서의 차별경험 (2005년 기준)

| | 계 (%) | 교사로부터의 차별 (%) |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 (%) |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 |
|------------|-------------|------------------|---------------------|-------------------|
| 전국 | 48.2 | 17.5 | 46.2 | 12.3 |
| 수도권 | 48.7 | 18.8 | 45.4 | 12.3 |
| 충청강원 | 49.3 | 11.1 | 47.0 | 10.1 |
| 대구경북 | 46.2 | 18.6 | 45.8 | 12.9 |
| 광주전라 | 49.2 | 22.5 | 48.4 | 19.5 |
| 부울경 | 46.5 | 14.2 | 46.5 | 8.5 |

주 :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경험이 있는 46만 9천명 응답
자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표 3> 고용차별경험 (2005년 기준)

| | 계 (%) | 취업시 차별 (%) | 임금차별 (%) | 동료와 관계에서의 차별 (%) | 승진차별 (%) |
|------------|-------------|-------------|-------------|------------------|-------------|
| 전국 | 42.9 | 39.1 | 23.7 | 18.9 | 16.5 |
| 수도권 | 44.9 | 40.3 | 23.1 | 19.6 | 15.7 |
| 충청강원 | 35.6 | 33.2 | 19.4 | 15.1 | 12.2 |
| 대구경북 | 45.7 | 47.9 | 27.5 | 22.0 | 21.7 |
| 광주전라 | 33.8 | 28.5 | 26.9 | 21.0 | 21.0 |
| 부울경 | 48.2 | 41.4 | 25.1 | 16.9 | 17.4 |

주 : 취업자 또는 취업경험이 있는 56만명 응답
 자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표 4> 기타 생활에서의 차별경험 (2005년 기준)

|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 | | 모·부성권 | 건강권 |
|------------|---------------------------|-----------------------|-------------------------|---------------------------|---------------------|---------------------------|
| | 지역사회생활 (%) (n=2,005천명) | 보험계약 (%) (n=663천명) | 운전면허취득 (%) (n=380천명) | 정보통신이용 (%) (n=1,936천명) | 결혼 (%) (n=511천명) | 의료기관이용 (%) (n=2,069천명) |
| 전국 | 5.4 | 39.8 | 14.3 | 1.1 | 29.6 | 4.2 |
| 수도권 | 6.4 | 39.5 | 14.1 | 1.5 | 28.0 | 5.2 |
| 충청강원 | 4.0 | 39.1 | 15.5 | 0.9 | 21.2 | 2.4 |
| 대구경북 | 6.2 | 42.1 | 12.5 | 0.6 | 33.6 | 4.6 |
| 광주전라 | 4.9 | 29.6 | 5.8 | 0.7 | 34.6 | 3.2 |
| 부울경 | 4.3 | 47.6 | 21.5 | 0.7 | 36.0 | 3.9 |

주 : 지역사회생활은 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서의 차별경험을 의미함.
 자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부 산>

제 2 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지정토론

- 고용 분야
홍정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리) / 185
- 교육 분야
박용민 (부산장애인부모회 팀장) / 189
- 시설물, 이동·교통수단 분야
변경택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 207
- 공공기관 분야(사법 행정절차 포함)
노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 / 21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고용분야)

홍 정 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

2년 전(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통과되었을 당시 이법이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찾았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작년 시행원년의 해를 지나 그간의 장애인차별 현황을 진정사건 및 처리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법 시행 일 년만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업체들과 장애인들이 이 법의 존재와 구제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알고 있는 사업체들은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며 꺼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차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부지불식간에 차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법의 정착 및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무조건적인 회피를 제거해나가야 하는 풀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한 의미 전달 및 인지도를 높여 많

은 사업체에서 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용상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는 고용상 차별금지의 주요 내용, 정당한 편의제공, 그리고 이러한 편의제공에 많은 비용적 부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는 최소한의 의무이다. 즉,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고용부문을 넘어 더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해소될 것이다. 법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적 도의상 차별이 해소되어 사회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기업은 정당한 편의제공은 물론 고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각 기관 간 공유 및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법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영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가 각종 설명회나 교육을 통해 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각종 리플렛 및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식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차별 특히 고용 부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이 기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만으로는 장애차별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상 장애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단체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고용상 차별문제 해소를 위한 역할을 세분화하여 좀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법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90년 시행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이 그 목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정책상 장애인고용의무제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고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목표고용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평등한 경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양자가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지만, 기업에서의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많은 사업체가 편의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비용 부담이 커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고용에 대한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기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어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취업지원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존 직장동료들의 의식 개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다면 기업주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이 직장동료들은 실제 취업했을 때 근속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중 특히 시설·장비 설치나 개조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이 제도들을 확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착이 이루어지는 일정시점까지 편의제공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 보다는 지금과 같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기나 규모 등 어느 정도 한계를 두어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

이고 장애인의 차별을 근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제시해보았다. 법 자체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법 시행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일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제안이다. 그간의 기업과 사회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앞서 말한 세가지 제안을 좀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한다면 장애인 고용부분에서 차별을 근절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대등한 경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부산지역 장애인 교육권 현황과 과제

박 용 민 (부산장애인부모회 정책팀장)

1.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관련 조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중 교육 관련 규정¹⁾

| 부 분 조 | 법 | 시행령 |
|---------------|------------------------------------------------------------------------------------------------------------------------------------------------------------------------------------------------------------------------------------------------------------|----------------------------------------------------------------------------------------------------------------------------------------------------------------------------------------------------------------------------------------------------------------------------------------------------------------------------|
| 제 3조 정의 | <p>6."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6."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p> | <p>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
| 제 13조 차별금지 | <p>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1) 편의상 장, 절은 제외하였으며, 본문에서 다른 내용 이외에도 교육 관련 규정은 제28조 모부성권 차별금지,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3조 장애여성 차별금지, 제35조 장애아동차별금지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권 문제에 주된 초점을 두었는지라 차치하였다.

| | | |
|--------------------------------------|--------------------------------------------------------------------------------------------------------------------------------------------------------------------------------------------------------------------------------------------------------------------------------------------------------------------------------------------------------------------------------------------------------------------------------------------------------------------------------------------------------------------------------------------------------------------------------------------------------------------------------------------------------|--------------------------------------------------------------------------------------------------------------------------------------------------------------------------------------------------------------------------------------------------------------------------------|
| | <p>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 <p>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p>제 14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p> | <p>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p>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계속)

| | | |
|--|---------------------------------------------------------------------------------------------------------------------------------------------------------------------------------------------------------------------------------------------------------------------------------------------------------------------------------------------------------------------------------------------------------------------------------------------------------|---------------------------------------------------------------------------------------------------------------------------------------------------------------------------------------------------------------------------------------------------------------------------------------------------------------------------------------------------------------------------------------------------------------------------------------------------------------------------------------------------|
| | <p>4.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5.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p> <p>6.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p> <p>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
|--|---------------------------------------------------------------------------------------------------------------------------------------------------------------------------------------------------------------------------------------------------------------------------------------------------------------------------------------------------------------------------------------------------------------------------------------------------------|---------------------------------------------------------------------------------------------------------------------------------------------------------------------------------------------------------------------------------------------------------------------------------------------------------------------------------------------------------------------------------------------------------------------------------------------------------------------------------------------------|

별표2 :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 |
|-----------------------------------------------------------------------------------------------------------------------------------------------------------------------------------------------------------------------------------------------------------------------------------------------------------------------------------------------------------------------------------------------------------------------------------------------------------------------------------------|
| <p>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p> <p>가. 국·공·사립 특수학교</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p> <p>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p> <p>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p> <p>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p> <p>가. 제1호 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p> <p>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학교(제1호 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학교</p> <p>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p>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p> |
|-----------------------------------------------------------------------------------------------------------------------------------------------------------------------------------------------------------------------------------------------------------------------------------------------------------------------------------------------------------------------------------------------------------------------------------------------------------------------------------------|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장애인 교육차별 관련하여, '학습권 보장'(제13조 제2항~8항)과 '정당한 편의제공'(제14조 제1항)이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장 기구 및 담당자 배치(제14조 제2항)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학습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초점을 두고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²⁾

2.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관련 규정, 부산지역 현황.

(1) '학습권 보장'(제13조) 현황과 과제

- 1항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울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4항 :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항 :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2)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 역할 관련한 부산지역 현황 및 과제는 조사 미비로 인해 다루지 못했다.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6항 :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현황(학급/학생)³⁾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008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특수학교 | 일 반 학 교 | | 계 |
|------|-------|---------|---------|-------|
| | | 특 수 학 급 | 일 반 학 급 | |
| 유치원 | 157 | 38 | 258 | 453 |
| 초등학교 | 517 | 1,782 | 168 | 2,467 |
| 중학교 | 443 | 499 | 105 | 1,047 |
| 고등학교 | 519 | 423 | 151 | 1,093 |
| 전공과 | 96 | - | - | 96 |
| 계 | 1,732 | 2,742 | 682 | 5,156 |

- 인구대비 추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교육기관 배치 현황

| 과정별 | 유치부 | 초등부 | 중학부 | 고등부 | 전공부 | 전체 | |
|------------------|---------|---------|---------|---------|--------|---------|-------|
| 과정별 전체 인구수 | 80,802 | 219,956 | 140,351 | 151,188 | 50,396 | 642,693 | |
| 추정특수교육학생수(0.99%) | 800 | 2,178 | 1,389 | 1,497 | 499 | 6,363 | |
| 특수교육 대상 선정전체학생 | 학생수 | 453 | 2,467 | 1,047 | 1,093 | 96 | 5,156 |
| | 선정비율(%) | 56.6 | 113.3 | 75.4 | 73.0 | 19.2 | 81.0 |
| 특수교육 기관 배치 학생 | 학생수 | 195 | 2299 | 942 | 942 | 96 | 4,474 |
| | 배치비율(%) | 24.4 | 105.6 | 67.8 | 62.9 | 19.2 | 70.3 |

3)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특수교육발전계획(09-12)'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공부(19.2%)>유치원(24.4%)>고등부(62.9%)>중학부(67.8%)순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율과 특수교육기관 배치 비율이 낮음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정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현재 아닌 숫자가 약 1,207명으로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은 거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추정되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더불어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이나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지 않고,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인원도 682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약간의 순회교육을 제외하고는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2008년)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자로 간주되는, 장애인등록 3세미만 장애영아는 215명(부산광역시, '07.12)이고, 이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올해부터 ‘영아학급’ 4곳을 개설 운영하기로 되어 있음.

※ 2009년 부산시 교육청 장애영아교육계획 (2009년 특수교육운영계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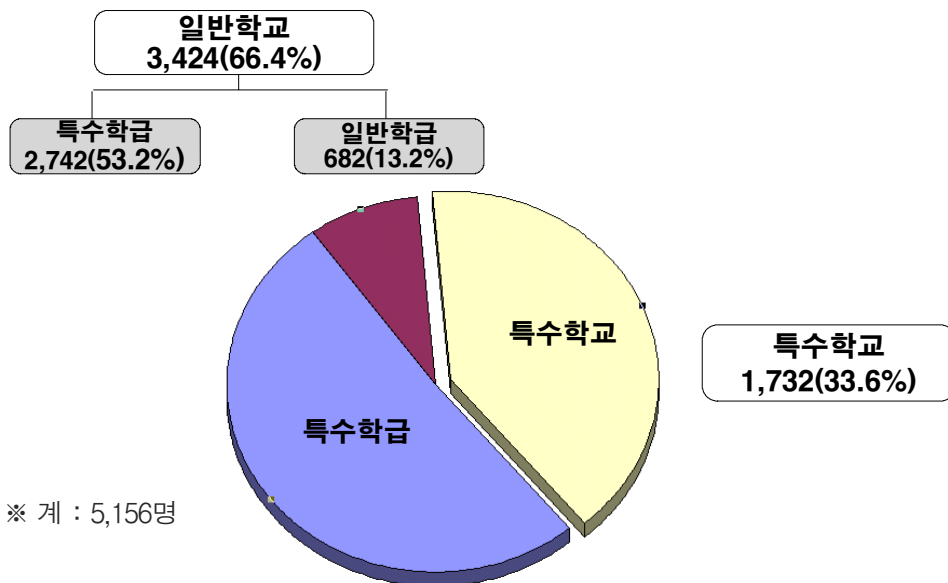
- 장애영아 교육 홍보 및 기초조사 실시
- 장애영아 교육기관 설치·운영
 - 운영 기관 및 학급유형
 - 운영기관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 학급유형 : 기관 내 영아학급과 순회교육 병행
 - 운영 기관 및 학급유형
 - 운영기관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 학급유형 : 기관 내 영아학급과 순회교육 병행
 - 시범 운영을 비롯한 연차적 설치·운영
 - 영아교육 거점학교 및 영아학급 시범 운영
 - 거점학교 : 1교, 영아교육과정 개발, 영아교육 지원
 - 시범학급 : 기존 비인가 학급 운영 2교에 4학급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학급 연차적 운영 : 2009년 1학급 설치·운영

- ‘무상교육’ 대상으로 간주되는 장애영아 숫자(215명)에 비해 부산시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영아교육 대상자는 전체 20여명 정도로서 약 10%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영아교육 대상자가 특수교육 체제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 (특수학급 구성 및 순회 교육 등)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부산시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부 특수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장애영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함.

② 통합교육 현황 및 과제

○ 통합교육 학생 배치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5,156명 중 66.4%(전국 67.3%)인 3,424명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 통합교육을 받는 3,424명 중 2,742명(80%)은 457개 특수학급, 682명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612개 일반학급에 배치됨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설치 및 배치 현황

| 구 분 | 특수학급 | | 일반학급 | | 계 | |
|------|------|-------|------|-----|-------|-------|
| | 학급수 | 학생수 | 학급수 | 학생수 | 학급수 | 학생수 |
| 유치원 | 10 | 38 | 182 | 258 | 192 | 296 |
| 초등학교 | 337 | 1,782 | 139 | 168 | 476 | 1,950 |
| 중학교 | 67 | 499 | 78 | 105 | 145 | 604 |
| 고등학교 | 43 | 423 | 213 | 151 | 256 | 574 |
| 계 | 457 | 2,742 | 612 | 682 | 1,069 | 3,424 |

-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 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음. (08년 특수학급 설치교 비율 : 유치원 2.7%, 초등학교 91.8%, 중학교 39.4%, 고등학교 22.7%) 그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 수치상으로 두고 본다면 약 392명(초등 1,782명의 절반은 891명임. 그러나 중학교 인원은 499명으로서 이들 숫자를 제외한다면 392명이 도출됨)이 특수학급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반학급으로 진학하거나 혹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일반학급으로 들어가서 특수학급 수업을 듣는 것으로 추정됨.
-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약 76명이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진학하거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으로 진학 이후, 특수학급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②-1 학교급별·지역별 특수교육 지원의 불균형

○ 학급당 학생정원을 법정 정원인 유 4, 초 6, 중 6, 고 7명으로 하향 조정 필요성

| 구분 | 학급수 | | | | | 학생수 | | | | |
|------|-----|-----|-----|-----|----|-----|-------|-----|-----|------|
| | 유치 | 초등 | 중학 | 고교 | 전공 | 유치 | 초등 | 중학 | 고교 | 전공 |
| 특수학교 | 34 | 95 | 58 | 61 | 7 | 157 | 517 | 443 | 519 | 96 |
| 특수학급 | 10 | 337 | 67 | 43 | | 38 | 1,782 | 499 | 423 | |
| 전 체 | 44 | 432 | 125 | 104 | 7 | 195 | 2,299 | 942 | 942 | 96 |
| 급당인원 | | | | | | 4.4 | 5.3 | 7.5 | 9.1 | 13.7 |

- 앞서 언급했듯이 중학교 및 고교 특수학급이 부족하고, 일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인원은 학급 당 13명에 이르는 등 학생 과다로 인해 학습권 침해 사례가 빈번함. (08년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중, 고등학교 전체 학급 중, 약 20% 이상이 학급 당 인원이 10명 이상임)
- 학습권 보장 및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설 필요성 제기됨. 실제 고등부의 강서구와 중구에는 고등부 특수학급이 하나도 없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임. 또한 중등부의 경우에도 고등부와 마찬가지로 동부산지역(해운대, 남구, 금정구, 동래구 등)에 상대적으로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서부산지역(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등)의 경우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례(학급 과밀화, 진학 어려움 등)가 우려되는 상황임.
- 따라서 서부산지역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설치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함.

<2009년 1월, 부산지역 구군별 중, 고등부 특수학급 설치 현황>

| 지역구 | 기장군 | 금정구 | 동래구 | 연제구 | 진구 | 해운대 | 수영구 | 남구 | 동구 | 서구 | 사하구 | 영도구 | 북구 | 사상구 |
|--------|-----|------------------------------------------|----------------------------------|--------------------------|--------------------------------------------------|--------------------------------------------------------------|-------------|--------------------------------------------------------|-----------------------------|------------------------------------------------|----------------------------------------|---------------------------|----------------------------------------------------------------------|--------------------------------------------------------------|
| 고등 학교명 | 기장고 | 금정고 금정여고 남산고 사대부고 | 중앙여고 원예고 전자고 총렬고 사직고 | 연제고 | 개금고 개성고 경남공고 | 반여고 해강고 신도고 선텔고 양운고 | 동여고 남일고 | 문현여고 부산공고 | 디자인고 경남여고 | 부경고 | 다대고 | 부산남고 영도여고 영상 예술고 | 금곡고 백양고 금명여고 에너지 과학고 | 백양고 서부산 공고 사상고 |
| 학교-37 | 1 | 4 | 5 | 1 | 3 | 5 | 2 | 2 | 2 | 2 | 1 | 2 | 4 | 3 |
| 학급-50 | 1 | 4 | 10 | 1 | 4 | 5 | 2 | 5 | 5 | 2 | 1 | 2 | 5 | 3 |
| | 기장중 | 구서여중 금사중 금양중 동현중 부곡중 부곡여중 | 동래중 동신중 총렬중 사직여중 사직중 | 연산중 연천중 연일중 연제중 | 동평중 동평여중 동양중 부산진여 개성중 양동여중 개림중 | 반송여중 신도중 재송중 상당중 해강중 장산중 운송중 동백중 재송중 | 한바다중 망미중 | 동향중 감만중 문현중 문현여중 성동중 용문중 석포여중 용호중 | 부산중 경남여중 부산서중 (중구) | 부산대신 중 부산여중 중양여중 경남중 초장중 하단중 | 감천중 장평중 다신중 당리중 사하중 두송중 | 부산남중 동삼중 영도중 영선중 | 덕천중 가람중 구남중 금명중 용수중 만덕중 구포중 명진중 강서중 (강서구) | 삼락중 사상중 엄공중 주례중 주례여중 모라중 낙동중 학장중 모동중 |
| 학교-79 | 1 | 6 | 5 | 4 | 7 | 9 | 2 | 8 | 3 | 6 | 6 | 4 | 9 | 9 |
| 학급-79 | 1 | 6 | 5 | 4 | 7 | 9 | 2 | 8 | 3 | 6 | 6 | 4 | 9 | 9 |

②-2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원내용 확보

-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인력, 교수법, 보조공학, 관련서비스 지원 등 개별학생 차원의 지원 보완 필요 (정당한 편의 제공에서 다시 거론 예정)함.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학생의 미진학·미취업률(전국)은 11.9%, 전문계는 8%인데 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진학·미취업률은 39.3%에 달해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필요. 특히,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별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졸업 후 진로현황

- 2007학년도 고교 과정 졸업자 221명 중 진학 116명, 취업 52명, 미진학·미취학 53명임
- 진학률은 52.5%, 취업률은 23.5%, 미진학·미취업률은 24% 임.
- 전공과의 취업률은 34%임

| 과 정 | 고등부 | | | | | | | | 전공과 | | | |
|-------|------|----|------|------|------|------|------|------|------|----|------|-----|
| | 특수학교 | | | | 특수학급 | | | | 특수학교 | | | |
| 학교별 | 전체 | 진학 | 취업 | 미취업 | 전체 | 진학 | 취업 | 미취업 | 전체 | 진학 | 취업 | 미취업 |
| 인 원 | 135 | 81 | 24 | 30 | 86 | 35 | 28 | 23 | 47 | | 16 | 31 |
| 비율(%) | 100 | 60 | 17.8 | 22.2 | 100 | 40.7 | 32.6 | 26.7 | 100 | | 34.0 | 66 |

- 고등부 진학자 116명 중 86명(특수학교 72, 특수학급 14)(74%)은 전공과 진학자로서 실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인원은 30여명으로 추정.
- 취업 및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고등부의 경우, 취업 학생과 미취업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고, 취업 및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한 전공과의 경우에도 미취업이 취업보다 2배임.

②-3 법적 기준에 근거한 교실 공간 확보 필요

* 2007년 시도교육청별 면적기준 및 면적기준 미준수 특수학급 현황

| 지역 교육청 | 학교(급) 별구분 | 특수학 급수 | 미준수 학급수 | 미준수 비율(%) | 미준수 특수학급 설치 학교명 | 미준수 특수학급 면적기준 확보계획 | 비고 |
|------------|--------------|-----------|------------|--------------|---------------------------------------------------------------|----------------------------|---------------------|
| 서부 교육청 | 초 | 64 | 5 | 7.81 | 낙동, 다송, 송학, 청동(2) | 대상자 감소로 인한 특수학급 감축 후 확보 | |
| | 중 | 13 | 1 | 7.69 | 다선 | 계획없음 | |
| | 계 | 77 | 6 | 7.79 | | | |
| 남부 교육청 | 초 | 81 | 3 | 3.70 | 용산(2), 우암 | | 년차 일반학급 감축시 확보계획 |
| | 중 | 14 | 0 | 0.00 | | | |
| | 계 | 95 | 3 | 3.16 | | | |
| 북부 교육청 | 초 | 66 | 2 | 3.03 | 신덕초, 세산초 | 2010년계획 | |
| | 중 | 11 | 1 | 9.09 | 가람중 | 2010년계획 | |
| | 계 | 77 | 3 | 3.90 | | | |
| 동래 교육청 | 초 | 72 | 2 | 2.78 | 장전초, 금양초 | 계획없음 | |
| | 중 | 14 | 2 | 14.29 | 금양중, 동신중 | 계획없음 | |
| | 계 | 86 | 4 | 4.65 | | | |
| 해운대 교육청 | 초 | 52 | 12 | 23.08 | 광안초(2), 송정초, 신재초, 운봉초(2), 운송초, 죽성초, 철마초, 칠암초, 교리 초, 셸텀초 | | 년차 일반학급 감축시 확보계획 |
| | 중 | 11 | 1 | 9.09 | 반송여중 | | |
| | 계 | 63 | 13 | 20.63 | | | |
| 시교육청 | 고 | 38 | 5 | 13.16 | 사직고(2), 디자인고(2), 에너지과학고 | | 08년, 09년계획 |
| | 계 | 38 | 6 | | | | |
| 합계 | 초 | 335 | 24 | 7.16 | | | |
| | 중 | 63 | 5 | 7.94 | | | |
| | 고 | 38 | 5 | 13.16 | | | |
| | 계 | 436 | 34 | 7.80 | | | |

- 07년(이후 신설되는 학급의 경우, 한 학급 크기로 만들어짐)의 경우, 부산시 전체 특수학급 숫자 436개 중에서 34개 학급이 반쪽 짜리 학급을 이용했으며, 이는 확인해본 결과 09년 현재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
- 학급 크기가 작음으로 말미암아 교육 활동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특수학급 교사들은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 및 학교 차원의 조정이 필요함.

②-4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재가장애학생 등 교육 소외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구 분 | 순회 치료교육 | 순회 직업교육 | 특수학급미설치교 재가장애방문교육 | 병원학교 | 파견학급 |
|--------|------------|------------|----------------------|------|------|
| 교사/학급수 | 22 | 4 | 6 | 3 | 31 |

- 특수교육대상자이나 특수교육의 직접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629명에 대한 순회 교육 강화 필요하고, 순회 교육 담당 전문인력을 통해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필요
- 다른 시도에 비해 유독 부산시가 가장 많은 비율(부산시보다 더 많은 시설이 있는 서울시의 경우, 5개 학급)을 차지하는 시설 내 파견학급의 점진적인 축소를 통해 시설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필요.
- 특히 성인장애인교육의 경우, 부산지역 평생교육시설 112개에서 장애인 대상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진행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2) ‘정당한 편의 제공’, 현황과 과제

- * 1항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 2항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 * 3항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4항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5항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장애인 교육 편의 제공 유형과 수단⁴⁾

| 유형 | 수단 | 제공 체계 |
|---------------------|---------------------------------------------|-------------------------------------------------------|
| 통학관련 교통편의 | - 특장차 | - 직접 구입 운영 - 장애인 콜택시 이용 |
| | - 교통비 지원 | - 통학 도우미 |
| | - 보조인력 | - 학교버스 보조인력 지원 |
| 학교 내 이동·접근 편의 시설·설비 | - 자동문, 경사로, 승강기, 지지대 등 | - 편의증진법 제2조 제2호 의무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우선 적용 |
| 학습용 보상기자재 | - 확대 독서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텍스트 음성 변환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 - 직접 구입 대여 - 지역사회 보조공학 센터 협력 |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 - 의사소통판, 알파토커 등 | - 직접 제작 또는 구입 대여 - 지역사회 보조공학 센터 협력 |
| 대체 의사소통 | - 수화통역, 문자통역, 점자자료 등 | - 전문 인력 임용 - 지역사회 수화통역센터 등 협력 - 지역사회 보조공학 센터 협력 |
| 보장구 | - 휠체어, 클러치, 워커 등 | - 직접 구입 대여 - 지역사회 보조공학 센터 협력 |
| 보조인력 서비스 | -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지원 인력 | - 교육청, 자활후견기관협회, 병무청 등과 협력 |

4) 김주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교육,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① 장애인 편의시설 -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

| 구 분 | 출입구높이차이 | 승강기 | 손잡이 | 화장실 | 평균설치율 |
|-------|---------|------|------|------|-------|
| 2002년 | 10.3 | 9.9 | 13.3 | 52.7 | 21.6 |
| 2008년 | 100 | 40.9 | 92.4 | 100 | 83.3 |

- 단차(출입구 높이 차이) 및 화장실은 전부 갖추어졌으나, 여전히 지체장애학생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승강기는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
- 승강기 설치에 우선 예산 우선 적용이 가능한 사안임으로 먼저 실시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 및 부산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화장실의 경우, 법적 크기에 맞추지 않고 일반 화장실을 그대로 개조하여 편의시설만 갖춰 실제적으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해결도 요구됨.

②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현황 및 수요(과제)

| 구분 기관명 | 2008 특수교육보조원 수 | | | | 2009 특수교육보조원 수요현황 | | | |
|-----------|----------------|----------|----------|-----|-------------------|----------|----------|-----|
| | 교육청 지원 | 자활 센터 | 공익 요원 | 계 | 교육청 지원 | 자활 센터 | 공익 요원 | 계 |
| 서부교육청 | 31 | 24 | 3 | 58 | 48 | 24 | 2 | 74 |
| 남부교육청 | 38 | 14 | 6 | 58 | 57 | 8 | 5 | 70 |
| 북부교육청 | 38 | 21 | 0 | 59 | 48 | 19 | 1 | 68 |
| 동래교육청 | 39 | 19 | 10 | 68 | 57 | 15 | 12 | 84 |
| 해운대교육청 | 46 | 11 | 0 | 57 | 60 | 12 | 1 | 73 |
| 고등학교 | 32 | 4 | 3 | 39 | 37 | 2 | 4 | 43 |
| 특수학교 | 164 | 19 | 7 | 190 | 205 | 32 | 32 | 269 |
| 특수지원센터 | 6 | 0 | 0 | 6 | 7 | 0 | 0 | 7 |
| 합계 | 394 | 112 | 29 | 535 | 519 | 112 | 57 | 688 |

-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조 인력으로는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과 제5항에 ‘보조인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은 구분 없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학생 보호, 교내활동 통제, 통학보조 등 낮은 수준의 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충분치 못함. 따라서 법 제14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외에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역, 음성전환문서편집(시각장애인들이 목자를 음성으로 전환하여 들을 수 있도록 기존의 문서를 편집), 보조공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다양한 보조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함.⁵⁾
- 하지만 이에 앞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차원에서 볼 때 학부모 요구 및 대응 편차가 150여명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현재 부산시 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한 학급 당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바, 학급 당 1인이라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학생의 장애 정도를 우선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됨.

③ 특수교육 지원 장애인용 교구·설비 현황

- 교구기자재들을 모든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구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특수학교나 장애인이 다수인 특정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센터(보조공학)가 요구됨.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점자 프린터기, 확대경, 대체 의사소통기기(카즈보) 등을 배치하여 장애인 교육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해주고 있음.
-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높낮이 책상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부모가 참여한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학생들의 실태 수요 조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5) 김주영, 앞의 글

④ 통학비 지원

※ 2009년 부산시 교육청 특수교육운영계획 중

* 통학비 지원대상자

가.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거나(특수학교), 원거리(1,000m 이상)를 통학하여(일반학교) 통학버스 외의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나. 통학버스 이용하지만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승차 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 학생
다. 근거리 거주자일지라도 이동의 곤란, 행동특성 등으로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인정된 자

| |
|--------------------------------------------------------------------------------------------------------------------------------------------------------------------------------------------------------------------------------------------------------------------------|
| <p>※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버스 이용 및 도보, 기숙사 거주 등으로 별도의 통학지원을 요하지 않는 학생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원해서 자가 통학하는 학생 -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자 - 차량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행사, 일기관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
|--------------------------------------------------------------------------------------------------------------------------------------------------------------------------------------------------------------------------------------------------------------------------|

* 1인당 연간 통학비 지원 내역

| 구 분 | 1회 지원단가 | 1일 이용횟수 | 연간최대 지원일수 | 연간최대 지원액 | 해당 연령 | 비고 |
|------|---------|---------|-----------|----------|----------|--------------|
| 초등학생 | 250원 | 2회 기준 | 220일 | 110,000원 | 만 6세~11세 | 교통카드 이용금액 기준 |
| 중,고생 | 650원 | 2회 기준 | 220일 | 286,000원 | 만12세~18세 | |

- 운영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학생과 함께 다니는 보호자인 부모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 그러나 장애학생들의 통학에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동행해야 할 존재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3. 나가면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교육기관에서 예·체능 과목 등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는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을 하여야 함. 또한, 교육책임자를 비롯하여 교직원들은 재학 중인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등 특수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요구하는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순회교육 시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면 안 됨.

- 지금의 현실에서는 장애인 차별 관련하여 지난날과 같이 노골적인 사례들, 예컨대 입학 거부 등은 상당히 줄어들긴 했으나, 작년 00예술중학교의 장애학생 입학 거부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음.. 또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서쓰기나 정당한 편의 제공 미비로 인한 장애인 차별 사례가 곧잘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부모회나 교육권연대 측에 곧잘 제기됨. 한편 아직까지도 특수학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교육보조 활동을 자의반 타의 반으로 함으로서 생계활동에 곤란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반복적이고도 지속적 교육을 통해 장애인 교육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요망됨.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장애인차별 관련 민원에 대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지침을 개발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보급해야 하며, 교사교육이나 학교 관리자교육 시 반드시 교육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는 기구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⁶⁾

6) 김주영, 앞의 글

- 또한 교육책임자의 경우에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교육 집행 당사자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과 맞닿아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역 장애인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더욱 필요함.

실효성 있는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차별금지를 위한 활동 방향

변 경 택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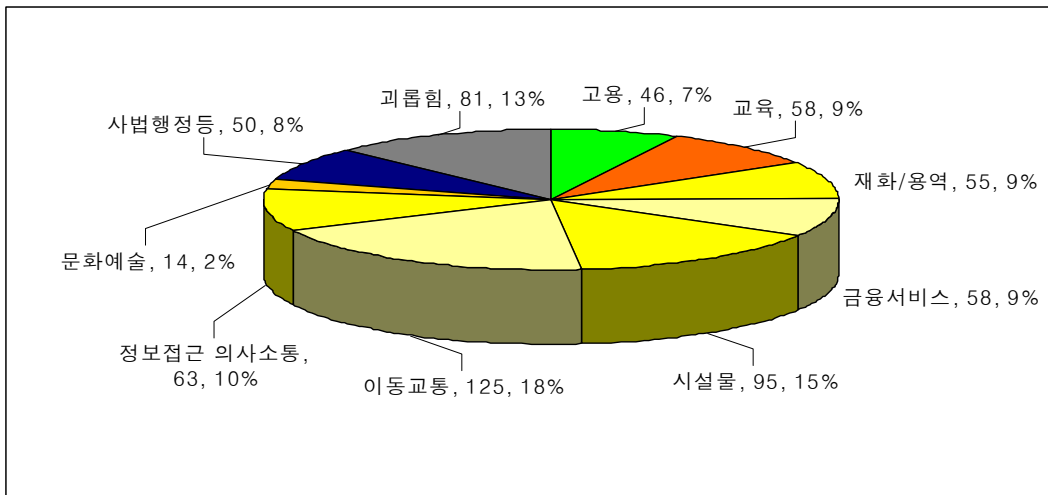
□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원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정리한 것을 보면 차별영역 중에서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의 진정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관련 진정사건은 2008년 1년 동안 484건이 접수되어 전체 696건 중 69.5%였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인 지난 6년간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총 580건 중 308건(53.1%) 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재화와 용역의 이용에서 차별을 느끼던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재화·용역의 제공과 이용 과정 중에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중에서도 시설물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진정이 각각 15%,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2008년도 장애인차별의 영역별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시설물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차별금

지를 제18조와 제19조에 명시하고 있다. 진정의 빈도가 높은 것에서 확인한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차별금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은 실제로 쉽게 접하고 많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하여 제재를 함으로써 생활에 밀접하고 적극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시설물 접근과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있는 조항은 제18조로 아래와 같다.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

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차별의 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선거 참여를 위하여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은행에서 운영 중인 현금인출기가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터치스크린 방식이라서 주위에서 도움 줄 사람이 없으면 사용할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공공기관 또는 건축물, 공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한 제1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각장애인이 버스 승강장과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음성 및 촉각정보가 제공되지 않

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가 없는 것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에 해당된다. 또한 횡단보도 및 보도 상에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바닥색과 같은 색상으로 제작되어 있어 변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시설물 접근 및 이동에 대한 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의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의 차별금지의 적용 대상, 정당한 편의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법 조항이 실제로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선언적인 의미로 남느냐가 정해지게 된 것이다. 시행령의 내용으로 법의 실효성이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 (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위의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8조와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

는 대상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단계적 범위를 새로 정하지 않고, 기존의 편의증진법의 대상 시설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며, 정당한 편의의 내용 역시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로 대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편의시설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 역시 기존의 편의증진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제13조 또한 법 제19조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준용토록 하고,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한 일부의 편의 제공만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해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매우 축소한 것이다.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②항에서는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정당한 편의의 범위와 내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준용토록 규정한 시행령은 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해석을 배제한 것이고, 법 제18조와 제19조를 선언적인 수준의 법조문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의 경우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시설물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출입 및 접근의 보장, 통로 및 복도의 높이차이 제거와 유효폭 확보, 2층 이상의 시설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수직 이동의 보장,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 등 위생시설의 설치, 수화통역·음성통역·문자통역·중복장애인을 위한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음성·문자·큰문자 등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 제공, 활동보조인력 제공 및 인적서비스의 제공 등 시설물을 동등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배용호,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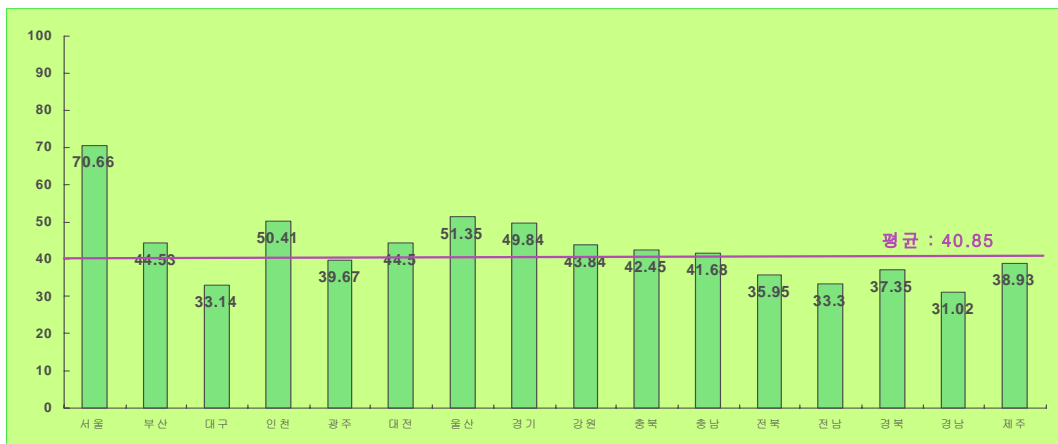
□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의 활동 방향

한국장총의 2007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부산, 경남, 울산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물의 접근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다.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이 망라되어 있는 연구 중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설물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의 영역과 연계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수준은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 이용비율 및 특별교통수단 확보율, 요금감면 공영주차장 비율,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설치시민축진단 운영비 지원 금액 비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시정명령 부과건수, 주차위반 범칙금 부과 비율, 교통사고심각성 및 산업재해 발생대비 장해급여수급자 수 등 10개 지표로 평가하였는데 서울특별시가 100점 만점에 70.66점으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51.35점), 인천광역시(50.41점), 경기도(49.84점), 부산광역시(44.53점), 대전광역시(44.50점), 강원도(43.84점), 충청북도(42.45점), 충청남도(41.68점) 등 9개 지역이 전국 평균 40.8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광역시(39.67점), 제주도(38.93점), 경상북도(37.35점), 전라북도(35.95점), 전라남도(33.30점), 대구광역시 (33.14점), 경상남도(31.02점)는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남만이 아니라 서울에 비하여 다른 모든 지역의 장애인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시설물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더불어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하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및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 연구에서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었던 특별교통수단 확보, 요금감면 공영주차장 확대,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 이동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위 연구에서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된 보편적인 대중교통 체계 속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 및 선박 터미널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시내·외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명문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장애인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의견 수렴 창구를 제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기관, 인권단체, 학계가 함께 인권 조례 제정과 지역 인권선언을 실시할 수 있다. 인권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지역 사회 공감대를 끌어 올리고 인권 선언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차별의 상황에 놓이기 쉬운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조례가 제정된다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정토론

노 성 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

Memo



< 대 구 >

제 1 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 1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및
추진방향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1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장애인계의 평가와 요구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

2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장애인계의 평가와 요구

노 금 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

들어가며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계의 7여년의 피땀어린 투쟁을 통해 마침내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공포 후 1년 뒤인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 직후 2007년 7월에 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로 향한 장애인차별금지를 염원하는 진정은 개소년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1] 2007년~2009년 장애인차별진정 접수현황

| 연도 | 2007년 | 2008년 | 비교증감 | 증감율(%) |
|---------------|-------|-------|------|--------|
| 전체 진정건수 | 239 | 696 | 457 | 191.2 |
| 대구사무소 진정건수 | 5 | 51 | 46 | 920.0 |
| 대구사무소 차지비중(%) | 2.1 | 7.3 | 5.2 | 247.6 |

[표 1]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가 개소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의 장애인차별진정 접수현황이며 2007년의 경우, 장애인차별진정 전체 건수 239건 중 대구사무소로 접수된 진정이 5건으로 전체 진정의 2.1%를 차지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원년인 2008년 전체 진정 696건 중 대구사무소로 접수된 진정이 51건으로 전체 진정의 7.3%를 차지하였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개소연도인 2007년 비해 무려 920%(46건)나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의 의미는 대구 및 인근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겪어 온 일상 전반의 차별에 대해 시정을 원하는 욕구가 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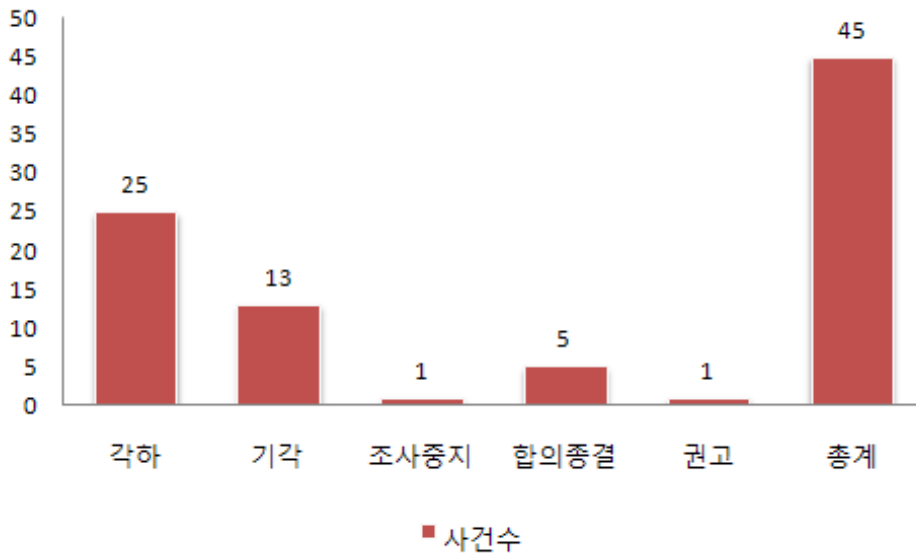
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전체 진정건수 중 대구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07년도 대비 247.6%라는 놀라운 수치가 1년 사이에 증가되었다.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2008년 한해 동안 진정된 장애인차별에 대한 진정이 얼마나 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구 및 인근지역의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느냐를 판단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제언을 전반적 장애계 요구의 소개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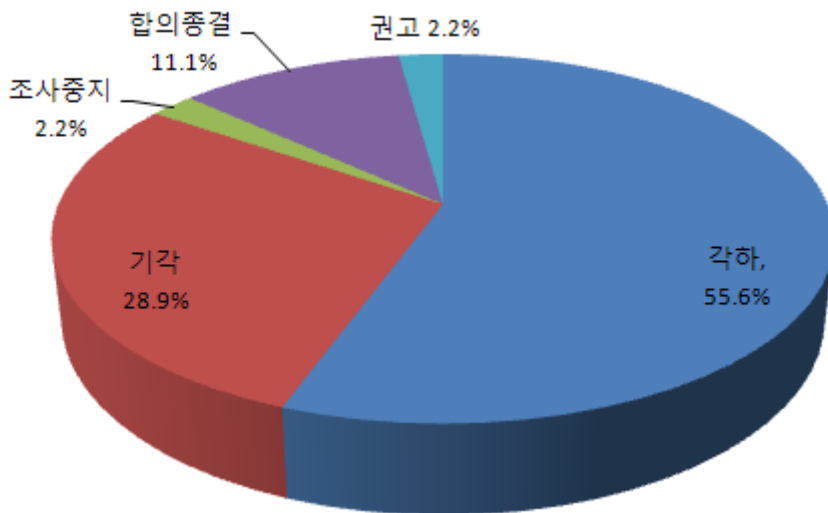
1. 대구지역 접수진정 중 종결된 사건에 대한 분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원년인 2008년부터 2009년 3월 23일까지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접수된 장애차별로 인한 진정 54건 가운데 종결된 사건은 모두 45건이다. 이 45건을 심의결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구지역 장애차별 종결사건의 심의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종결된 진정사건 45건 가운데 진정 요건이 안 되어 기각된 사건은 종결사건의 28.9%인 13건이었다. 진정 요건이 되어 심의를 받은 32건 가운데 차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사 중 해결 등으로 종결된 각하는 55.6%인 25건이었으며, 조사중지는 1건이었고 합의종결된 사건은 5건 및 권고는 1건으로 대구지역에 심의한 32건 중 18.7%정도에 불과했다. 이를 분석하면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진정된 장애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가운데 1/4이상은 기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 종결 및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로 해결된 사건은 13.3%정도였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로 접수된 진정의 84%이상은 각하되었거나 기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 각하 중 조사 중 해결에 대한 결과에 대해 별도의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심도 깊은 분석이 되지 못하겠지만 표면상으로 합의종결 내지 권고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이 45건 중 13.3%에 불과하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1년이 된 시점에서 대구지역 장애인에게 아직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치만큼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장애차별팀의 인력이 현재 장애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대구사무소의 경우 장애차별관련 담당자는 1명임)과 이명박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훼손 및 인력축소 시도 등이 이뤄지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따라서 위 사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인 2008년 4월 11일 이후 진정처리결과 중 합의종결 내지 조사 중 해결된 사건 5건(조사결과자료는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의 변화된 상황을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4월 11일 이후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로 진정처리된 5건 중 합의종결된 사건은 2건이었으며 조사 중 해결된 건은 총 3건이며 진정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4월 11일 이후 진정처리 중 조사해결 내지 합의종결 된 사건요약

| 연번 | 사건명 | 조사결과 | 진정요지 | 진행결과 |
|----|----------------------------|---------|-------------------------------|---------------------------------------|
| 1 | 시의회 편의시설미비 | 조사 중 해결 | 시의회 2층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 | 추경예산을 통한 편의시설설치예산 편성 |
| 2 | 인도 편의제공 미비 | 조사 중 해결 | 00지역 인도부근 주차로 인한 보행어려움 | 동구청의 실태조사 후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조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 |
| 3 | 장애인 이동권 제한 | 조사 중 해결 | 저상버스가 장애인을 지나침 | 피진정인의 진정취지수용 : 개선 및 인식교육 실시 |
| 4 | 00대학교 교육권제한 (필기곤란 등) | 합의종결 | 장애로 인한 필기곤란 및 특성을 고려치 않는 시험방식 | 피진정인이 향후 개선을 약속 |
| 5 | 00대학 평생교육원 교육권제한 (수화통역미제공) | 합의종결 | 평생교육원 수업에 수화통역요청에 응하지 않음 | 피진정인이 향후 개선을 약속 |

표 3을 참조하면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이 2건, 이동권이 1건, 교육권이 2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시의회 편의시설예산이 2억2천2백만원이 투입되어 설치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결과보다 국가인권위의 개입으로 인해 서비스의 태도개선이나 관공서의 시정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합의종결 건에 있어서는 2건이 모두 00대학교의 교육권제한에

대한 진정이었는데 이의 진행결과가 피진정인이 향후 개선을 약속하였다고 나타나있으나 본 진정을 조직한 입장에서 이후 진행결과에 대해 문의한 결과 법제 내에서 대학지원의 최소치의 노력을 약속했을 뿐 교육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태도의 변화나 현재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관련 장애인대학생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진정서제출에 대한 학교 측의 진정서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는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을 경우, 본인이 소속된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공간에 장애인당사자가 계속 지낼 경우 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조사결과가 장애인당사자의 진정취지와 다른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민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표3에서 언급한 사건 외에 현재 조사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대구역과 대구00백화점 사이 지하도를 제외한 횡단보도 미설치 건으로 경우 관계당국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재하며 사건조사과정에 대해 진정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의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었다는 것을 덧붙이는 바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장애인계의 평가

앞서 언급한 결과가 모든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진정에 대한 합의종결과 권고결과는 안타깝게도 아직 까지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지수는 낮은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 및 지역사무소에 바라는 점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팀 인력의 확충

: 국가인권위 축소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의 고심 또한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인력확충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조사기간이 길다 라거나 진정인과의 소통이

부채한다라는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종료 후 이행정도 확인에 대한 강화

: 앞서 언급하였지만 사건처리에 있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후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민간영역은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고 있으며 처리 속도 역시 느리거나 오히려 진정인에 대한 압력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종료 이후에도 이행정도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차별시정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지역사무소의 권한 강화

: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가 개소되며 진정서를 서울을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의 장애인의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진정에 대한 조사권한 등이 지역사무소에 없다면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조사권한 등 지역사무소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지역장애인들의 차별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반적 장애계의 요구¹⁾

1)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

(1) 규제일몰제 적용 제외 발표와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

다행히 규제일몰제 적용제외 발표 이후인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2012년 디지털 전환시까지 총 435억원을 투입해 방송 소외계층의 대폭적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고, 저소득층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난청노인용수신기를 50 %수준까지 확대 보급, 시·청각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EBS 수능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 방송으로 재제작하여 DVD와 웹방식으로 확대 보급하면서 장애인용 미디어교육 교재도 개발할 것이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향후 전망 및 과제」, 김광이, 2009 참고

라고 한다.

또한, 방송제작자에 대하여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2년까지 자막방송 100%, 수화방송 5%, 화면해설방송 10% 편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함은 물론, 디지털TV 생산시 자막방송 수신기능 내장 의무화를 추진해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케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IPTV)들도 자막, 수화, 화면해설이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정보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일몰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에 적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적용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비 지원은 기술개발과 더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대가능 하도록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2) 시정 조직들의 자기준비와 역할 기대

(1)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철회 및 인원확충과 역할 기대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하는 일과 조직이 만들어진 배경부터가 아주 다르다. 전자는 공직자의 청렴과 행정 절차에서의 국민구제라면, 후자는 보다 광범위한 생활영역에서의 인권침해구제와 차별시정에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진정이나 상담이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므로 제정 전인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60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2007년 10월 31일 당시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장애차별시정1팀의 신설과 인력 20명 증원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작년 1월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증원계획을 없었던 일로 해버리더니, 급기야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게 되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차별진정건수에 비해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는 53.3%에 이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만 제출한 진정서가 작년 한 해 동안 530여건이나 처리율은 48%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에 접수되는 진정 및 상담 건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고, 지역 사무소는 인권취약계층을 위하여 그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인원감축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급증되는 것이 ‘실용적’이다.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정보입수와 이동이 보다 수월하지 않고, 지방은 대도시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욱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과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지역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과 감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가 활성화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인 명분을 만들어가는 장애인차별금지 시정기구가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판단에 대한 지난한 노력과 연구의 필요성, 자주적인 운영과 인권 수호의 독립성을 위해 개개인의 의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법무부 시정명령 심의위원회의 제 역할을 찾아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하는 시정명령 심의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구성되었다. 2008년 5월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있던 이 후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즉, 상임기구가 아니더라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항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후 불이행된 사안이 통보되었어도 법무부 내에서 시정명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25조 제3항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고 하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시행령 자체가 법무부 차관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차 회의 시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세칙을 만들었다. 비록 운영세칙이라 하여도 심의위원들과의 신뢰를 만들어나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기도 하다.

3)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개정

(1) 편의증진법의 조속한 개정과 정당한 편의제공 수용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된 후에 시행령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 때,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증진법에 없는 인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를 온전히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보건복지가족부는 두 법률의 내용이 대동소이 한 것이므로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대상시설과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두는 것으로 하고,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약속한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편의증진법 상에 담고, 대상시설의 편의제공 시행시기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상충 법률 검토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련 법률들은 조속하게 개정하여 장애인들이 개별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 일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등의 관련 개별 법률들이 빨리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보장적 성격의 법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보수성, 소극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충법률 조사에 의하면 상충규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는 정치·행정분야에 해당하는 ‘헌법/국회/선거·정당/행정일반/국가 공무원 분야’로서 전체 상충법령 건수의 27.9%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10.9%), ‘교육·학술/문화·공보/과학·기술 분야’(10.1%), ‘법원/법무 분야’(8.5%) 순으로 나타났다. 상충규정은 20개의 주무부처에 두루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에 관한 개별법률, 선거에 관한 개별 법률, 정보와 관련한 개별법률, 각 공공기관 및 민간조직의 임원 자격 등의 조직에 관한 법률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하고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4)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모니터링 규정이 없다. 제대로 된 이행관리 및 현실화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로 인해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규정이 있어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모니터링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은 조속히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역사회 장애계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강화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되어야 할 점은 여전히 산적해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법의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할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 1주년 만에 (비록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방송권관련)을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시도하였던 과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중증장애인 2배수적용을 포함한 개정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 시대에 있어서 실효적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본 토론회에 지정토론으로 나오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자체, 교육청에 대한 장애인계의 요구를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1) 노동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앞서 의무고용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

: 2005년에 발표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추정 '장애인고용률'을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1.38%에 머물고 있다. 이미 장애인출현율 조차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 2% 조차 현재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원활하고

실효적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에 대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장애인출현율에 근간한 장애인고용의 6%이행에 대한 선행과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행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이내로 상시 300인이상 사업장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용에 따라 시행 1년이내 상시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져야한다. 소위 장애인을 배제하는 노동환경을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게 시설장비를 설치·개조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근무시간 편성이 되어야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역사회에서 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홍보나 실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체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의 계획과 추진의지를 반문할 수 밖에 없다.

2) 교육

○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웹접근성 구축 적용계획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가?

: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등은 각 홈페이지의 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 구축은 당장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현장의 이행준비는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며 시행1년만에 관련법 위반은 너무 불보듯이 빠른 상황이다.

(이는 교육분야 다음으로 언급할 지자체 역시 의무 사항이다.)

○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문제

: 뿐만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 예를 들어 장애인의 통학 문제, 장애인이 필요로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각 종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의 마련 등 이 4월 11일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준비계획은 무엇인가? 반문하고 싶다.

3) 지자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계획조차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관공서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2008년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 부서별 계획 수립 및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된 요구를 끝내 수용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한 웹접근성에 대한 구축이라던지, 수화통역사, 문자통역 등이 7일 전에 지원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던지에 대해 장애인관련과만 인지할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의지에 대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 시설확충계획 추진 등 장애인의 인권적 요구와 시대흐름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

: 대구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만 하더라도 미인가시설 등을 제외하면 12개시설이 존재한다. 이미 200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아동의 약물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지적으로 시설의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보장대책은 딱히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설확충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며 2007년 1개소 2008년 2개소에 이어 2009년 2개소 선정을 계획하며 계속 확충하는 것은 지자체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대책 마련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시대흐름에 반하는 정책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현의지는 심히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나가며

본 발제문을 통해 지역장애인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와 요구를 담아보았다.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현재 여전히 장애인이 사회속에서 차별받는 현실은 변화가 더딘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항에 따라 이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

는 사회시스템으로 변화하는데 있어 합의하는 과정에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본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매우 잘 이행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에 요구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한다. 끝.



< 대 구 >

제 2 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지정토론

■ 고용분야

정혜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구지사 고용촉진팀 차장) / 237

■ 교육분야

정병화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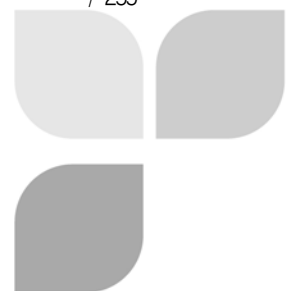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1년 기년 토론회

백선기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과장) / 247

■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255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정혜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고용촉진팀 차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고용 전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초기부터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법 시행 이후 인권위 대구사무소의 진정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종결된 건수 중 각하되거나 기각된 건수가 84% 이상이고 조사해결 되거나 합의 종결된 5건의 경우에도 고용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1건도 없다. 이는 아직도 장애인 본인조차도 어떤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부분의 경우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기에는 많은 벽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자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또한 제안자가 제시한 우리 공단의 추진사항과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1. 2007년도 대구·경북지역 장애인고용현황

《표 1》 전국대비 대구·경북지역(포항·경주제외) 장애인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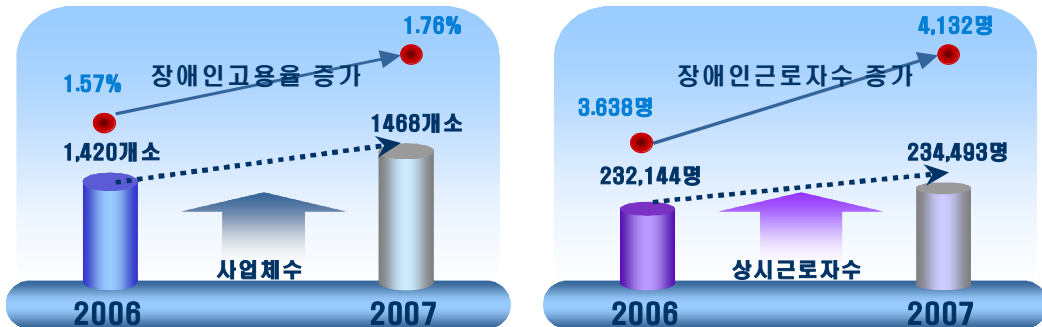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 의무고용사업체수 | 상시근로자수 | 장애인근로자수 | 장애인고용율 |
|-------|----------|-----------|---------|--------|
| 대구·경북 | 1,468 | 234,493 | 4,132 | 1.76 |
| 전국 | 20,375 | 4,985,075 | 76,404 | 1.53 |

자료 : 2008년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 지사 관할 대구·경북지역의 2007년 고용의무사업체는 1,468개소, 2007년 12월 현재 장애인근로자는 4,132명, 장애인고용율은 1.76%로 전국평균 장애인고용율인 1.53%보다 소폭 앞서고 있다.

《표 2》 2006년 대비 대구·경북지역 고용율 및 장애인근로자수 변동 현황



자료 : 2008년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전년대비 수치도 소폭 상승하였는데 대구·경북지역 2007년 고용의무사업체는 1,468개소로 2006년 대비 48개소가 증가하였고, 상시근로자수는 2,349명, 장애인근로자수는 494명이 증가하여 장애인고용율은 전년 대비 0.19%p 증가하였다.

《표 3》 2007년 대구·경북지역 사업체 규모별 고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체수 | 상시근로자수 | 장애인근로자수 | 장애인고용율 |
|----------|-------|---------|---------|--------|
| 계 | 1,468 | 234,493 | 4,132 | 1.76 |
| 50~99인 | 818 | 57,245 | 1,132 | 1.97 |
| 100~199인 | 410 | 56,712 | 1,106 | 1.95 |
| 200~299인 | 114 | 27,715 | 530 | 1.91 |
| 300인이상 | 126 | 92,821 | 1,364 | 1.46 |

자료 : 2008년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업체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99인 이하 업체와 300인 이상 업체를 비교하면 0.51%p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확립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영역에서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2009.4.11.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는 고용영역에 있어서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장비의 개조 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구의 이용 및 보조인의 배치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과도

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과도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함으로써 장애인 본인의 차별에 대한 이해 도모와 동시에 사업주의 심적 부담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차별예방 및 해소활동 활성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진정건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 방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용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장애인 고용차별 예방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산하 지사에 소속기관별 상담직원을 선임하여 사업체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및 직원대상 전파교육으로 고용차별 예방 및 해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업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12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에는 70개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고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별 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차별예방 및 해소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주에 대하여 명확한 상담활동, 사례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과 같이 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

서 편의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전체 부담하는 것은 편의제공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장애인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2008년 사업주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 지원종류 | 2007년 | 2008년 | 비고 |
|--------------|-------|-------|---------------------------------|
| 무상지원(편의시설 등) | 119 | 126 | 장애인1인당 1천만원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498 | 512 | 무상임대-1인당 1천만원 무상지원-1인당 300만원 |
| 시설자금 융자 | 736 | 929 | 장애인1인당 3천만원 |
| 장애인고용장려금 | 8,955 | 9,425 | 장애인1인당 30만~60만원 |

위 표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의 2008년도 사업주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무상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경우 2007년보다 소폭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사업주의 요구에는 상당한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편의시설 등의 지원 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사업체의 요구 및 편의시설 무상지원 등의 수요파악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등이 요구되는 바이다.

5. 마치며

2007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관할 대구·경북지역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율은 1.76%로 전국 장애인고용율인 1.53%를 앞서고 있으며 전년의 1.57%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승되는 고용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게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안자의 의견과 같이 인권위의 인력을 확대하는 부분이 물론 선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무상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 현황과 제언

정 병 화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시행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귀한 자리를 주관하시는 관계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인차별팀장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 영역에서 58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고 영역별로 시험에서 편의제공 34.5%, 시설물 접근 및 이용 27.5%, 수업 등 교내활동의 배제 18.9%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발표 내용을 보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의 법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제14조 교육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육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가. 특수학급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 대상학 교수 | 매개시설 | | | | | | 내부시설 | | | | | | 위생시설 | | 평균설치 비율 |
|-----------|-------------|-----|---------------|-----|----------------|-----|------------|-----|------------|----|------------|----|------------|----|------------|
| | 주출입구 접근로 | | 장 애 인 주차구역 | | 주출입구높이차 이제거 | | 출입구 출입문 | | 복 도 손잡이 | | 승강기 경사로 | | 화장실 대변기 | | |
| | 설치교 | 비율 | 설치교 | 비율 | 설치교 | 비율 | 설치교 | 비율 | 설치교 | 비율 | 설치교 | 비율 | 설치교 | 비율 | |
| 200 | 200 | 100 | 200 | 100 | 200 | 100 | 200 | 100 | 178 | 89 | 126 | 63 | 192 | 96 | 92.6 |

2009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17,767,386,000원을 확보하여 100% 완료할 계획임

나.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현황

| 구분 | 유급보조원 | 공익요원 | 대구광역시활성센터 파견 보조원 | 계 |
|--------|-------|------|---------------------|-----|
| 인원수(명) | 235 | 72 | 61 | 368 |

유급보조원 매년 30명 증원 예정(유급보조원 1인당 지원예산 : 초·중·고등학교 1인당 14,500,000원, 유치원 13,030,000원)이며, 100% 확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증원할 계획임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 1) 역할 : 각종 편의시설 구입 대여, 특수교육관련 상담, 교육자료 구입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원에 노력하고 있음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장소
 동부교육청 : 대구초등학교, 서부교육청 : 대구신암초등학교,
 남부교육청 : 대구죽전초등학교, 달성교육청 : 대구화원초등학교

2.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09년 3월 27일 11:00~16:00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전국특수학교 홈페이지 업무 담당 교사들의 회의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 각 학교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3월 24일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방안 강구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서를 통하여 개선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2009년 3월 31일까지 보고 하도

록 안내하였음.

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지도

행정기관(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은 행정관리과의 주관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함.(각급 학교의 홈페이지 관리는 과학산업정보과 소관임)

나. 현재 상황

홈페이지 및 각종 웹 사이트 담당자와 유지보수업체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중이며 웹 접근성을 상당부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토록 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홈페이지로 개편하도록 지도 중

다. 향후 계획

- 1) 홈페이지와 외부 사용자가 많은 웹 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보완하되,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예정
- 2) 현재 개발 진행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웹 사이트는 웹 접근성을 준수토록 개발 예정
- 3) 우리교육청 대표홈페이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09.03.17.”을 기준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 전면 개편 : 추경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7~8월경 예정)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완료 후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목표
 - 소요 예산 : 약 3천만원

3. 제언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홍보 및 각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완벽한 준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에 따라 시설 보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종 회의 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 정책과 교육복지의 이원적 운영으로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음
- 백화점식 사업 확장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장애이해 사업의 발굴 및 각종 행사 참여 활성화
-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지속적 노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1년 기념 토론회

백 선 기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과장)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고 당사자 단체를 비롯한 11개 회원단체가 있다. 얼마 전 협의회 이사회를 마치고 좌담을 하던 중 상당기간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활동해온 모 단체장의 추억의 말씀이 생각난다.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을 라 치면 소금부터 날아온 그 시절의 케케묵은 옛날이야기로 모두가 공감하고 한 마디씩 거 들었던 일이 그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1년 이 지난 요즘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장 진정하여 시정 되어야 할 옛 이야기가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어 왔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한 실정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보여주었던 현실에 대한 법적 제도의 확립과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주창되어 법제화된 것에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으로 무엇보다 장애 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전술한 바와 같이 큰 의미가 있겠고, 또한 기존의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으로 그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 외에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입법에 있어 모범이 될 것이며

넷째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장애인계가 장애여성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 데 직접 기여한 바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의 각종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주지하는 바이다.

한국보건사회복지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는 2000년 145만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증가하였다.(장애인계는 우리 국민의 10% 수준인 480만명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1980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결의하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잡은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제를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2006년 12월에 장애인 권리협약이 통과 된 바 있어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운영하는 나라로는 미국(1990년 ADA),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독일(2002년 장애인기회 균등에관한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도 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조항에서 예외

일 수 없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하고,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취업 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어 왔고, 뿐만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했고,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인권현실인 것을 크고 작은 보도를 통해 접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 속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억압적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고,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 패러다임의 기반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들 현실 앞에 당당히 놓여있다.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는 당당해진 법률을 뒷받침하는 경북과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활력충전소가 될 것이고 나아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의 인권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발제를 맡으신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팀장의 자료를 통해서도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완결 처리하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적 노력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용이나 교육 영역 및 사법행정 등 참정권 분야에서는 처리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과 괴롭힘 영역에서의 사건 처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요 진정사례를 들어 법률적 해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고 있고 특히 이동 교통수단·시설물 접근 및 정보접근의사소통 이용차별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 금융, 재화용역,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간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발제자는 총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환경의 한계로 말미암아 미결사건의 증가와 사건처리 기간의 장기간 소요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대적 홍보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별 수혜자의 복지욕구가 전방위적이고 시대적 경제난국을 맞고 있는 작금의 경북도 사회복지행정 현실을 감안해 보면 그 어려움이 남의 일이 아님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은 유형화·체계화 되어 시스템화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은 별도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침 경북과 대구지역 관련 통계가 한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아, 이런 기회에 지침서 형태의 자료집 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는 바이다. 사례별 유권해석이 용이하지 못한 행정일선은 물론이고 인식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008년 전국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를 보면 경상북도는 5개 영역에서 평균 53.11점으로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에서 전국 7위를 기록하였다. 영역별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과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이 각각 4위로 상위권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7위로 중위권인 반면,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14위로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지표별 우선순위나 가중치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민간분야의 현장감 넘치는 지표를 통해 관련분야 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한 잣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도청 내 예산부서를 상대로 예산확보의 논리적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제고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자료는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지시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북도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각종 행사와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 등에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에 주력해 왔으나 실증적 사례를 접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타 시·도에 비해 음성변환출력기를 우선 도입하였고 점자자료 및 화상전화기 등을 비치하고 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장애인편의지원을 해 온 것을 한편의 위안으로 여기고 있다. '08년 기준으로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08 경북도 일자별 추진현황

- '08. 4.11 법 시행
- '08. 4.21 법 시행 이후 후속조치계획 수립
- '08. 5.13 법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
- '08. 6.12 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알림(시장·군수)
- '08. 9. 5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 보강사업 시행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도입)
- '08. 9.11 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사항 홍보
- '08.10.13 홍보물 제작 배포(포스터, 리플릿, 소책자 15,523매)
- '08.11.12 화상전화기 구입

□ 장애인 공무원임용 응시자 편의지원(2007년부터 시행)

| 장 애 유 형 | | 편의지원범위 |
|-----------------|--------------------------------|---------------------------|
| 시각장애 | 약시자(양안교정시력0.04이상 0.3미만) | • 확대 문제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 |
| | 기타 시각장애인(망막손상, 녹내장등) | • 확대 문제지·답안지 |
|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 중증뇌병변(1~3급) 및 중증상지지체(1~3급) 장애인 | • 확대 문제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 |
| | 경증뇌병변장애인(4~6급) | • 확대 문제지·답안지 |
| | 경증상지지체(4~6급)장애인 | • 확대 문제지·답안지 |
| 기타장애인 | 응시자 안내도우미, 별도 시험실 및 1층 배치 등 | |

□ 2008년 경북도 장애인차별 금지법 관련 주요 실천과제

| | 실천 과제 | 조치 계획 | 담당기관 |
|------|-------------------------------------------|------------------|--------------------|
| ‘08년 |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시 정당한 편의 제공 | 예산확보 장비확충 | 부 서 공 통 |
| | ▪ 사업장의 채용·모집, 정년·퇴직 등에 있어 차별금지 | 유관기관홍보 | 투자통상본부 |
| | ▪ 재화·용역 제공시 차별금지 | 대국민인식개선 | 부 서 공 통 |
| | ▪ 토지·건물의 임대등에 있어 차별금지 | 대국민인식개선 | 건설도시방재국 |
| | ▪ 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접근의 차별금지 | 유관기관홍보 | 보건복지여성국 건설도시방재국 |
| | ▪ 방송 제작물과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유관기관홍보 법령개정준비 | 문 화 체 육 국 |
| | ▪ 가족, 가정, 복지시설의 차별금지 | 유관기관홍보 관계법령정비 | 보건복지여성국 |

제2발제를 해주신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의 논거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종료 이후에도 차별시정 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위한 전반적인 특히 중앙 공공기관의 선도적 지원을 위한 법률의 상충성 개선과 지방 행정일선의 부족한 인지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없이도 차별 없는 사회가 되도록 염원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년 3월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개선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08.11 ~ '09.3)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개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지표(안)에 대하여 의견 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행실태 모니터링 지표(안)의 소분류 및 지표명을 보면 장애인관련 공무원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장애인 관련 정부예산 비율, GDP 대비 장애인 관련 정부예산 비율을 예산 소

분류에서, 광고에 의한 차별, 고용에 있어 차별금지, 주관적 차별 경험율과, 교육 분야에서
 의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취원율, 장애아동 취학률, 특수교육 수혜율, 취학장애아동 중 통합
 교육 비율, 장애인 진학 거부율, 장애인전담부서 인력수 등 주관적 차별 경험율,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분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든 영역을 상세히 그리고 눈높이를 수혜자 수
 준에 맞춘 것들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이후 최근 타 법과 관련된 상충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법리검토 중인 것을 다시
 금 알려 드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발제자의 남다른 깊은 고심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 적용(09.4.11)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며 앞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의무적용대상기관 관계자
 를 대상으로 한 특별설명회 개최(09.3.23~4.2, 5,000개 기관)에 이어 웹 접근성 기술 동향
 세미나 개최(500명), 시·도단위 지역설명회, 기술자문단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개발자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우수 사례 및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각 기관으로 하여
 금 웹 접근성 준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개선 촉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번 편성될
 추경예산(120억원)을 활용하여 각 기관의 중요 대민 사이트 중 미흡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환영할 일이다.

차제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웹 접근성 분야뿐만 아니라 각각
 의 중앙부처에서도 의미 있는 실효적 이행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일련
 의 행정 계통적 조치들을 통해 행정 분야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가족들 모두가
 인정하는 차별 없는 세상의 날들이 와주길 바라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법정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인식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 교육원에서 민과 관을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 사례집 발간, 지역별 순회 설명
 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계획이 그것이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세상에 장애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환경만이 존재한다는데 크게 공감하며, 뿐만 아니라 법률·생활환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 이외에도, 사회문화 인식에 대한 합의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장애 없는 환경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마지않으며 이 자리에 함께한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그 선봉에 함께 해 줄 것을 믿어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권 순 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1. 들어가며

장애인계의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의한 정당한 권리발현의 의지를 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최초의 인권법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시혜와 동정의 관점이 아닌 헌법이 천명하는 천부적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의 구현의 결과물이며 기존 법률의 경험을 통해 선언적 한계¹⁾를 극복하며 보호법적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의 마련과 권리구제 기구를 장치하여 차별의 시정과 피해구제를 도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한 규범력 확보의 과제는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주체발제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평가와 요구 및 지역사회 장애계의 요구 등에 관한 인식과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언급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에 관한

1) 장애와 관련한 현행법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상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 내에 의료, 재활, 교육, 고용, 접근권, 선거권 등의 영역에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에 일부 규정된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처벌 규정이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 UN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 제33조 내지 제34조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의가 미비한 여성장애인의 문제, 실효성 담보에 중핵적 기능을 가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차별에 관한 기준제시와 규범적 가치의 변화라는 목표의 실현에 한층 더 근접하였지만 실질적 권리보장의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일반의 편견의 제거와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1) 장애차별의 기제 제거

장애차별의 원인은 주로 비과학적인 선입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과 편견, 양질의 노동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적 가치에 치중하여 장애인의 생산력을 낮게 평가하고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배제하고 제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장애인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차별기제들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환을 위한 교육 및 정책개선 등의 수단을 통해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 된다 할 것이다.

2)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이라는 입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인 장치의 마련이라는 과제에는 장애와 장애인의 인식전환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떠한 법제도적 장치라 하더라도 수범자의 준법의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입법목적의 달성 및 효율성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무수히 많은 인권 및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장식적, 전시적 조항으로 전락해버린 경험을 거치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실현되고 입법자의 입법의지가 반영되는 실효적인 법규범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는 개인이 개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주지하며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가 우리 사회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할 때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²⁾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장기간에 걸친’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적 합의수준³⁾ 및 2009년 1월 10일 발효된 UN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개념⁴⁾과도 큰 차이를 보이며 법제정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에 의해 제안된 ‘장애’의 개념 규정안⁵⁾ 역시도 채택되지 못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장추련에 의해 제안된 장애개념이나 국제적 합의수준 및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개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장애의 문제를 인권적 관점이 아닌 복지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향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 2)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3) 2001년 WHO에서 제기한 장애개념은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이다. ICF에 의하면, 장애는 신체적 기능(Body Functions), 신체적 구조(Body Structures), 활동과 참여(Activities and Participation),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에 의해 정의함으로써 장애에 있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모두를 통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개념에서는 장애의 사회적, 상황적 측면(건축물의 환경, 장애에 대한 인식 등)과 함께 개인적 측면(성, 연령, 대처방식 등)의 양측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능은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조건이 장애가 아니라 개인적 불리를 심화시키는 환경요소가 장애가 된다.
- 4)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 이라는 의료적 모델과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의 저해라는 사회적 모델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ICF의 장애분류법 권고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장애의 원인, 장애로 인한 문제, 문제의 해결책 등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속성에서 찾는 개별적 모델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모델’ 중심이로의 인식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5)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는 장애의 개념 규정에 ① 장애의 기간(장기간, 단기간, 일시적 모두 포함), ② 장애 판단의 기준(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으로부터 출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조화), ③ 장애 발생의 이유(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아니라,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이 그 이유임), ④ 장애의 궁극적인 내용(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즉 기회불균등 등 평등권을 침해하는 상태) 등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3. 여성장애인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지위는 전통적 가부장제의 권력관계에 기인한 여성으로서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것이 여성장애인의 현실이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복합적 구조가 가족관계에서는 사회적 관계형성의 차단과 폭력의 대상으로 성역할이 규정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와 선택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교육의 진입⁶⁾에서 차단당하고, 이는 노동시장 진입⁷⁾의 자격도 갖추기 힘들게 되어 빈곤⁸⁾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별적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를 간과한다면 장애인의 권리문제는 여성장애인이 배제된 남성장애인의 권리에 국한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장애의 범주 내에서도 여성장애인이 가지는 특수한 경험과 욕구의 차이, 장애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에 기해 법안내용에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을 담아내기 위해 장애인단체는 법정정 과정에 참여하여 노력을 경주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33조 내지 제34조에서 직접 여성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33조에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여성에 대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의무, ②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 차별 금지, ③ 직장 보육 서비스의 정당한 편의 제공, ④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

6)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여성 장애인 62.5%·남성 장애인 34.5%로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졸은 여성 장애인 13.7%·남성 장애인 18.6%, 고졸은 여성 장애인 17.9%·남성 장애인 31.4%, 대졸 이상은 여성 장애인 5.0%·남성 장애인 14.5%로 남성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 취업률은 여성 장애인은 19.7%에 그친 반면 남성 장애인은 44.0%으로 2배 이상 높았다.

8) 여성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25만1천원으로 남성 장애인의 78만9천원보다 53만8천원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대별로는 45~64세가 여성 장애인 26만1천원·남성 장애인 91만1천원으로 월급차가 65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19~44세가 여성 장애인은 31만7천원·남성 장애인은 93만1천원으로 61만4천원, 65세 이상은 여성 장애인 21만1천원·남성 장애인 45만5천원으로 24만4천원이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3월 30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 ‘5본부 22팀’인 조직을 ‘1관 2국 11과’로 바꾸고, 인원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상의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기구이다. 2008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 사건은 696건으로 2007년도 진정접수 건수 239건 보다는 약 3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그동안 6년간 접수된 진정사건 580건 보다는 116건이 더 많고, 연평균 진정 접수사건 96건 보다는 약 7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 한해에만 처리한 진정사건 처리건수는 502건으로 2001년~2007년까지 6년간 처리하였던 530건에 맞먹는 502건을 처리하였으나 2008년도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696건으로 2007년도 접수건수 239건 보다 약 3배가 증가하였으며, 진정처리 건수는 502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배가 증가하였으나, 이월 사건은 244건으로 전년도 이월건수 50건 보다 약 5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차별로 인한 권리침해의 심각성을 직시하는 결과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의 확대 및 활동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직제령 개정은 법리를 부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역사무소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인권접근성을 높이는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의 도모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교육, 홍보의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제령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문제는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존립 뿐만 아니라 어렵게 정착해가는 우리사회의 인권의 정립이라는 대명제와 연결지어져야 할 상황이다. 어떤 물적 이익보다 우선해야 할 인권의 가치가 경제논리나 공권력 앞에 무너지서는 안될 것이다. 논란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2항의 “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는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기능과 역할에 비

추어 합목적적인 해석의 원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유연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헌법위임입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직제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모순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헌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헌법기관으로의 지위변화를 모색하여야만 할 것이다.

5.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법제도가 입법목적에 입법자의 의지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규범 자체적 한계의 극복을 위한 법령 정비와 실질적인 법익의 구현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축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21조 제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 등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금언의 지혜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때인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 인 쇄 | 2009년 4월

| 발 행 | 2009년 4월

| 발행인 | 안 경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52 | F A X | (02) 2125-984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비매품〉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